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 FTA 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발간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현재 9개 협정 46개국과의 FTA발효로 세계경제의 약 58%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발효될경우 향후 우리나라 교역량의 90%까지 FTA체결국 교역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제 FTA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잡다난한 FTA원산지규정, 전문인력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은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FTA 활용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FTA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 가이드북,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중소기업에게 배포하여 왔으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어려운 내용이 수록되어 중소기업 실무자가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을 주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에 발간하였던『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을 대폭 보완, 개선하여 이번에 새로이 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집필진과 정부, 유관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출중소기업, 국내 완제품 및 부품·원재료 공급 기업, 수입중소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FTA 기초이론 등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축소하고, 중소기업 현장 실무 담당자가 활용하기 적합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관리·검증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심사 대응시 실수나 오류 발생 부분, 중소기업 FTA 담당자의 서류작성을 위한 각 양식별 작성요령 등에 대해 상세한 실무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FTA활용을 위한 각종 정보 또한 꼼꼼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이 FTA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 FTA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기획 및 원고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집필진, 자문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장 **한 정 화**

■ 발간사 · 4
■ 일러두기 · 10

chapter I. FTA 기본편

제1장≫ FTA 개요 14
1. 자유무역협정이란? 14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6
3.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20
4. 거대 FTA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TPP, TTIP, RCEP) 20

제2장≫ 품목분류의 이해 23
1. 품목분류의 개요 23
2. FTA 무역에서 품목분류(HS)의 중요성 27
3. HS코드의 분류기준 29
4. 중소기업의 HS코드 관리와 유의사항 30

chapter 2. FTA 활용편

제1장≫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 증명 업무 매뉴얼 38
1. FTA 협정발효국 확인 41
2. 수출입 HS코드 확인 42
3. FTA 관세혜택 확인(실익분석) 44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적용 · 판정 48
5.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과 발급 51
6. 서류 보관 54

제2장≫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업무 매뉴얼 73
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개요 73
2.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대상 제품(원재료) 확정 74
3. 적용 FTA 협정국 확인 75
4. 공급물품의 HS코드 확인 76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적용·판정 77
6.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79
7.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활용 83
8. 서류 보관 87

제3장≫ 완제품·원재료(부품) 수입업체의 FTA 특혜적용 업무 매뉴얼 88
1. 협정발효국 확인 90
2. 수출입 HS코드 확인 90
3. FTA 관세혜택 확인 90
4. 원산지증명서 준비와 형식요건 체크 94
5. 협정관세적용 신청 98
6. 서류 보관 99

제4장≫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101
1.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요 101
2.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협정별 혜택 101
3.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신청) 103
4.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자율점검) 109
5.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갱신(연장신청) 111
6. 인증수출자 신청할 때 많이 하는 오류 119
7.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의 전환 121

제5장≫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122
1. FTA BOM의 작성 122
2. 원산지소명서의 작성 125
3.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128
4. 생산입증 서류(제조공정도)의 작성과 입증 129
5. 서명카드와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 130
6. 인증수출자 신청 구비서류의 작성 132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136
1. FTA 비즈니스 모델 136
2. FTA 활용 성공기업 사례 146

chapter 3. FTA 원산지 판정실무편

제1장≫ FTA와 원산지의 중요성 154
1. FTA와 원산지 154
2. FTA와 원산지의 중요성 155

제2장≫ FTA 원산지 판정 실무 157
1.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요 157
2.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157
3.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158
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162
5. 분야별 특례 170

제3장≫ 산업별 원산지 판정 사례 178
1. 식품의 FTA 원산지 판정 178
2. 섬유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80
3. 기계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83
4. 자동차부품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84
5. 화학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86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

제1장≫ FTA 원산지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189
1.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의 개요 191

2.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과 절차 194
3. 수입품에 대한 각 협정별 사후검증(조사) 방법 215
4. FTA 사후검증(원산지조사) 대비 주요 체크사항 223
5. FTA 원산지 검증(조사) 이후의 조치 225

제2장≫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228
1. 개 요 228
2. 수출자(생산자)의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229
3. 수입자의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235
4. 검증 대비 주요 체크사항과 유의사항 236
5. 주요 원산지 검증 사례 244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246
7. 벌칙규정과 수정통보

chapter 5. FTA 원산지 정보편

제1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정보 256
1. FTA를 활용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 258
2.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262
3. 중소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264

제2장≫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용어 정리 266
1. 용어 목록 266
2. 용어 설명 270

■ 참고문헌·사이트—295

일러두기

1. 가이드북의 목적

본 가이드북은 FTA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FTA 담당자들이 FTA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업무의 기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책자들이 원산지 증명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검증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특정 분야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면, 이 책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에 특정 분야에 대한 너무 자세한 기술, 특이사례 및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분량상 가이드북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바, 필요한 경우 관세·FT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러두고자 합니다.

2. 가이드북의 체계 및 활용 방법

본 가이드북의 목적에 맞도록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chapter 1. FTA 기본편'을 통해 FTA의 기본 개념과 FTA 활용의 기초가 되는 HS에 대한 개념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각 담당 업무별로 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읽을 것을 권합니다. 즉, 수출담당자는 'chapter 2. FTA 활용편'의 제1장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증명시 업

무 매뉴얼, 제4장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5장 FTA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과 'chapter 3. FTA 원산지 판정실무편',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을 묶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공급 담당자는 'chapter 2. FTA 활용편' 제2장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업무 매뉴얼, 제4장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5장 FTA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과 'chapter 3. FTA 원산지 판정실무편',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을 묶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수입업무 담당자는 'chapter 2. FTA 활용편'의 제3장 완제품·원재료(부품) 수입업체의 FTA 특혜 적용 업무 매뉴얼과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을 묶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chapter 5. FTA 원산지 정보편'에서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중소 수출입 기업 담당자 모두 한 번씩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FTA 관련 서식(양식) 옆의 날짜(예 : 2013. 2. 22)는 해당하는 날에 서식이 신규로 작성되거나 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FTA 관련 규정과 서식은 자주 개정되므로 수시로 관련 규정과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저자 관세사 김현철

CHAPTER

FTA 기본편

제1장≫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

FTA란 둘 이상의 국가가 10년 내에 거의 모든 상품무역·서비스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와 기타 무역의 제한적인 규제를 풀 것을 합의하는 국제조약을 말한다.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시장과 경제를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다.

2)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형태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협상하여 관세·비관세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하기 위한 협정이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별관세를 부과한다(예 : 한-미 FTA).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관세영역을 하나로 만드는 지역무역협정을 말한다. 회원국이 공동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예 : MERCOS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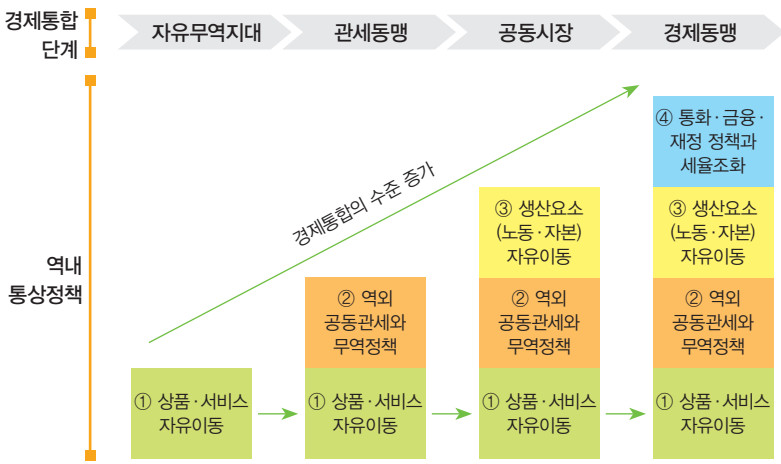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이란 관세동맹을 맺은 회원국 간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예 : EEC).

(4) 단일시장(Single Market)

단일시장이란 완벽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와 공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을 말한다(예 : EU).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별 유형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발효협정

우리나라는 현재 9개 협정으로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9개 협정 47개국 발효 — 칠레(04. 4. 1), 싱가포르(06. 3. 1), EFTA(06. 9. 1), 아세안(07. 6. 1. 나라별로 발효일 다름), 인도(10. 1. 1), EU(11. 7. 1), 페루(11. 8. 1), 미국(12. 3. 15), 터키(13. 5. 1)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10개국)
- EU(유럽연합)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8개국)

서명·타결 — 콜롬비아(13. 2. 11. 서명)

2) 발효 외 협정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서명·타결했거나 협상 중인 나라는 다음과 같다.

서명·타결한 FTA


한–콜롬비아 FTA

협상 중인 FTA


한–GCC FTA


한–뉴질랜드 FTA


한–멕시코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한–일 FTA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중일 FTA

협상 준비·검토 중인 FTA



한–MECRCOSUR FTA



한–SACU FTA


한–러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몽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중미 FTA

출처 :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 http://fta.kita.net

3) 주요 품목별 한-EU FTA와 한-미 FTA의 양허 비교

품 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자동차	중대형 (1500cc 초과)	8%	3년	10%	3년	8%	①발효일 4%로 인하 ②4년차까지 4% 유지 ③5년차부터 무관세	①가솔린 중소형 2.5%, ②가솔린 대형 2.5%, ③디젤/대중소형 2.5%	①4년차까지 기준 관세율 유지 ②5년차부터 무관세
	소형 (1500cc 이하)	8%	5년	10%	5년	8%			
	기타(하이브리드)	8%	5년	10%	5년	8%	①발효일 4%로 인하 ②2년차부터균등철폐 ③5년차부터 무관세	2.5%	5년
화물자동차	승합차	10%	즉시	10~16%	즉시	10%	즉시	2%	3년
	디젤 5톤 이하 화물차	10%	즉시	22%	5년	10%	즉시	25%(10)	①7년차까지 기준 관세율 유지 ②8년차부터균등 철폐 ③10년차부터 무관세
	디젤 20톤 초과 화물차	10%	5년	22%	3년	10%	즉시	25%(10)	
	도로주행 트랙터	8%	5년	16%	3년	8%	즉시	4%	3년
자동차부품	디젤 엔진부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25%	즉시
	기어박스	8%	즉시	4.5%	즉시	8%	즉시	25%	즉시
	타이어	8%	즉시	2.5~4.5%	3년	8%	즉시	0~4.2%	즉시, 5년
선박	선박 완성품	0~8%	즉시	0~2.7%	즉시	0~8%	즉시	0~2.7%	즉시
	부품	0~8%	즉시, 3,5년	0~2.7%	즉시	0~8%	즉시, 3·5·10년	0~6.7%	즉시
컬러TV	컬러TV 완성품	8%	즉시	14%	5년	8%	즉시	0~5%	즉시, 3년
	천연색음극선관	8%	즉시	14%	즉시	8%	즉시	3%	즉시
	수상기	8%	즉시	14%	5년	8%	즉시	3.9~5%	즉시
냉장고	냉장고 완성품	8%	즉시	1.5~2.2%	즉시	8%	즉시	1.90%	즉시
	부품	8%	즉시	2.20%	즉시	8%	즉시	0%	즉시
에어컨	에어컨 완성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0~2.2%	즉시
섬유및의류	순모직물	13%	5,7년	8%	즉시, 5년	13%	즉시	7~25%	즉시
	편직제 의류(61류)	8~13%	즉시	2~12%	즉시	8~13%	즉시	0~32%	즉시, 10년
	편직제 의류(62류)	8~13%	즉시	6.5~12%	즉시	8~13%	즉시	0~28.6%	즉시, 10년
	합성섬유(54/55류)	8~10%	즉시	8%	즉시	8~13%	즉시	0~25%	즉시, 10년

품 목		한-EU FTA				한-미 FTA			
		한국		EU		한국		미국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의료용 기기	X방사선 기기	8%	즉시, 3,5,7년	2.1%	즉시	8%	즉시, 3·10년	0~1.4%	즉시
	초음파 영상진단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콘텍트렌즈	8%	3년	2.9%	즉시	8%	3년	2%	3년
	심전계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의약품	완제 의약품	8%	즉시, 3년	0%	즉시	8%	즉시, 3년	0%	즉시
	비타민제	6.5%	즉시, 3년	0%	즉시	6.5%	즉시	0%	즉시
	호르몬제	0~6.5%	즉시	0%	즉시	0~6.5%	즉시	0%	즉시
	항생제	6.5%	즉시	0%	즉시	6.5%	즉시	0%	즉시
화장품	기초화장품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페이스파우더	8%	5년	0%	즉시	8%	즉시	0%	즉시
	향수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립스틱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헤어린스	8%	5년	0%	즉	8%	5년	0%	즉시
비철금속	동·동제품	8%	즉시, 3·5·7년	0~5.2%	즉시, 3년	8%	즉시, 3년	0~3%	즉시, 3년
	알루미늄과 제품	8%	즉시, 3·5년	0~10%	즉시	8%	즉시, 3·5년	0~6.5%	즉시, 3·5·10년
석유화학	합성수지	6.5%	즉시, 3·5년	6.5%	즉시, 3년	6.5%	즉시, 3·5·10년	6.5%	즉시, 3·5·10년
	합성고무	6.5%	즉시, 3·5·7년	0%	즉시	6.5%	즉시, 5·10년	0%	즉시
합판류	합판	8~12%	5·7년	6~10%	3년	8~12%	10년	3~8%	10년
	섬유판	8%	5·7년	7%	3년	8%	10년	3.9~6%	10년
	파티클보드	8%	5·7년	7%	3년	8%	10년	0%	즉시
기타	구두(드레스화)	13%	즉시	17%	즉시	13%	즉시	0~55.3%	즉시, 12(비)
	가죽제 가방	8%	즉시, 3년	2.7 ~9.7%	즉시, 3년	8%	즉시	8~10%	즉시
	복사기	8%	즉시	3% 6%	즉시 3년	8%	즉시	0~3.7%	즉시
	서류 절단기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2.6%	즉시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3.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활발하게 FTA를 추진 중이다.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른 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알고 싶으면 유관기관의 주요국 FTA 추진현황표를 참고하면 된다.



출처 :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 http://fta.kita.net

4. 거대 FTA의 등장과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1] (TPP, TTIP, RCEP)

1) 개요

최근에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경제권이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

1) 출처 : 권혁재 외,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13.5.15. 제895 / 요약 수정

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일본 등 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고, EU와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맞서고 있다.

TTIP는 GDP기준 세계경제 비중이 45%, TPP는 38.4%, RCEP은 29.4%다. 이렇게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세계 통상질서가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3대 FTA에 대한 수출비중이 73%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대블록의 등장은 큰 도전이 되고 있다.

2) 거대블록의 경쟁심화

협상체결은 가장 먼저 시작한 TPP(2013~2014) → 양자 FTA인 TTIP(2014~2015) → RCEP(2015~) 순으로 타결될 것으로 본다.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의 수준은 미국-EU FTA인 TTIP〉미국 주도 다자 FTA인 TPP〉중국 등 신흥국 주도 RCEP 순이 될 것으로 본다.

3) 거대 FTA의 등장 영향

①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는 더 성장하여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② TTIP가 체결되면 미국과 EU는 세계의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제정자(Rule-Setter)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③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회원국 확대 경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회원국이 3대 FTA에 중층적으로 가입하고 있

어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등으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본다.

④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이나 EU 등과 FTA를 체결하면 한-미와 한-EU FTA의 선점효과는 감소하고, 미국과 EU시장에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



TPP, TTIP, RCEP

-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참여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 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약자(참여국 : 미국, EU)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참여국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제2장≫
품목분류의 이해

1. 품목분류의 개요

품목분류 코드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가 주관하여 정하는 국제 상품분류 기준이며, WCO 국제협약에 따라 각 나라들은 상품별로 HS 6단위 이하의 세분화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HS는 부(Section),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되는데, 호와 소호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끼리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나 6단위의 숫자(코드)를 부여한다.

6단위까지는 HS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6단위를 넘는 세부분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일본은 9단위, 미국은 10단위, EU와 중국은 8단위까지 세분해서 사용한다. 결국 품목분류란 각 수출입품에 대한 적정한 HS코드 부여를 의미하며, 이렇게 부여한 코드가 HS코드다.

1) HS 품목분류 속견표

아래의 표에서 맨 위칸은 류의 첫째 숫자를 나타내고, 왼쪽의 숫자는 류의 둘째 숫자를 나타낸다.

	0	1	2	3	4
0		산 동물	육과 식용 설육	어패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10	곡물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엑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20	채소·과실의 조제품	기타 조제 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조제 사료	담배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40	고무, 고무제품	원피,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목탄
50	견, 견직물	양모, 수모	면 면사, 면직물	마류의 실과 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60	편물	의류(편물제)	의류(편물제 이외)	기타 섬유제품, 넝마	신발류
70	유리	귀석, 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 동제품
80	주석, 주석제품	기타 비금속	비금속제 공구·스푼·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5	6	7	8	9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 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
동식물성 유지	육·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 과자	코코아, 초코렛	곡물, 곡분 주제품, 빵류
토석류, 소금	광, 슬랙, 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카세인, 알부민, 변성 전분, 효소	화약류, 성냥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코르크, 짚	조물재료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 신문, 인쇄물
인조 스테이플 섬유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침투·도포한 직물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우모, 인조제품	석, 시멘트, 석면제품	도자제품
니켈, 니켈제품	알루미늄, 알루미늄제품	(유보)	연, 연제품	아연, 아연제품
전기 기기, TV, 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완구,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골동품	–	–

HS 품목분류 체계(10단위)의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	–
8501	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	8
8501	2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8
8501	3	그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
8501	3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별표–HSK

품목번호				품 명
8501	–	–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
8501	10	–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
8501	10	10	00	직류전동기
8501	10	20	00	교류전동기
8501	10	30	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항목	류(2단위)	호(4단위)	소호(6단위)	HSK(10단위)
직류전동기	85	01	10	100

HS코드의 구조

8501.10–1000(10단위 HSK)

- 85 : 류(Chapter) →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류로, 앞 두 자리를 말한다.
- 8501 : 호(Heading) → 전동기를 분류하는 호로, 앞 네 자리를 말한다.
- 8501.10 : 소호(Subheading) → 출력 37.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분류하는 소호로, 앞 다섯 자리나 여섯 자리를 말한다.
- 8501.10–1000 :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를 분류하는 열 자리 코드를 말한다.

2. FTA무역에서 품목분류(HS)의 중요성

1)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국으로 수입하는 물품 관세는 법률에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마다 적용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HS코드가 정해져야 정확한 관세액이 결정된다.

2) HS코드의 중요성

HS코드는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기본사항이다.

3) FTA무역에서 HS코드가 더 중요해진 이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등 FTA무역 업무를 하려면 먼저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HS코드를 알아야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협정문에 HS코드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는데 이를 PSR(Product specific Rule)이라고 한다.

HS코드명			품명(대한민국, 2013)	
			한 글	영 문
1902	30	–	그밖의 파스타	other pasta
1902	30	10	인스턴트 면류	Instant noodles
1902	30	1010	라 면	Ramen㉮
1902	30	1090	기 타	other
1902	30	9000	기 타	other

출처 :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이에 따라 HS 1902.30호에 해당하는 각 FTA 협정별로 품목별 결정기준(PSR)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품목번호	분류	품목명	원산지기준
싱가포르	190230	1	기타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다만 역내 부가가치가 45% 이상 발생한 것으로 한정.
			Other pasta	A change to heading 19.02 through 19.05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ha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
미국	190230	1	기타 파스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Other pasta	A change to heading 19.02 through subheading 1904.30 from any other chapter
페루	190230	1	기타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이나 역내부가가치가 2.40% 이상 발생한 것.
			Other pasta	Change to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o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1	기타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변경한 것.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은 세번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Other pasta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No change in taniff classification to be required,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50percent
칠레	190230	1	기타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다만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는 45%이거나 집적법으로는 30% 이상 발생한 것에 한정.
			Other pasta	A change to heading 19.01 through 19.05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ere a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 when the build-down method is used, or of not less than 30% when the build-up method is used
EU	190230	1	기타 파스타	모든 호(해당 제품의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Other pasta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3. HS코드의 분류기준

1) 품목분류의 일반원칙—통칙(GRI)

HS코드를 분류하려면 가장 먼저 통칙을 검토해야 한다.

①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친 HS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②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HS협약 내에서 국내 통칙을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

순서대로 적용

통칙 제1호 (최우선 분류규정)	호의 용어, 관련 부와 류의 주에 의한 분류
통칙 제2호 (종속적 분류규정)	제2호 가 : 완전·완성한 물품에는 불완전·미완성·미조립 분해물품도 포함 제2호 나 :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결합한 것도 포함
통칙 제3호 (종속적 분류규정)	제3호 가 : 가장협의로 표현한 호에 우선 분류 제3호 나 :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 제3호 다 : 최종 호로 분류
통칙 제4호 (종속적 분류규정)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
통칙 제5호 (보충적 분류규정)	제5호 가 : 케이스와 포장용기도 내용물과 함께 분류 제5호 나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도 내용물과 함께 분류
통칙 제6호 (보충적 분류규정)	소호의 분류—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분류

2)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규정

통칙 제1호의 규정과 각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각 주규정에서는 해당하는 부·류·호에서 제외할 물품들을 규정하는데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예≫ 가정용 전기기기 분류를 검토할 때 체크 순서

통칙 제1호(최우선 분류규정)

·이 표의 부·류·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칙 제2호부터 7호까지 적용한다.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

제8509호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

·제8509호에서 제외되는 물품들에 유의한다(주 규정, 해설서 참조).

4. 중소기업의 HS코드 관리와 유의사항

1) 관세율 적용 체크

HS코드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달라진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품목별로 HS코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HS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추가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수출할 때 간이정액환급액 문제도 체크해야 한다.

품목번호	품 명	세 율(%)		
		2013년	2014년	2015년
840510	발생로가스·수성가스 발생기·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 구비여부는 관계없음)	–	–	–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0	0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2.6	0	0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0	0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2.6	0	0
8405109000	기 타	0	0	0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별표 6의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중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중

2)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시의 HS코드 문제

최근에는 협정 상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수출국의 HS코드를 수입국에서는 다르게 분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원산지 검증에서 서로 다른 품목분류 기준 때문에 대립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HS코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개 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가 스스로 HS코드(품목번호)를 확정하기 어려울 때,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효력이 있는 HS코드를 확정해서 알려주는 제도다.

(2) 신청요건

· 신청권자 : 수출입하려는 자나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 법인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

㉮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등

㉰ 용도설명서와 다음의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

㉠ 농산물·조제품·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 기계류와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 인터넷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접속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 신청서작성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양식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양식수정)

처리기한
15일/30일

신청인 구분		□ 수출입자 □ 관세사 □ 수출제조자		수출입 구분	□ 수출 □ 수입
신청인	회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관세사 부호	
	주 소	우)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번호	
	전자메일			처리과정 수신방법	□ 이메일과 SMS □ 통보안함
수출입자 등	수출입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 소				
	해외거래처	상 호		홈페이지	
신청물품	품 명				
	모 델				
	규 격				
	원산지		거래가격		
	물품설명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수출입사항	검토품목 번호		통관(예정)지 세관	
기타	신청사유	□ 세율·세액 확인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원산지 확인 □ 기타( )			
	신속심사요청사유	□ FTA 원산지 확인 □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견본제출여부	□ 제 출		견본반환	□ 반환불요 □ 반환요
		□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한함)	사유	□ 신규·계획단계물품 □ 성분·제조비법 물품 □ 그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비공개 선택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발급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			
	수수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시 사유서와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을지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회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물품설명서 양식

물품설명서

1. 품명(모델·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다이어그램(흐름도)

☞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 작동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주요 용도, 일반적인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 구성 성분이나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 성분의 역할

☞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 해외공급자 등이 제공한 HS 품목번호

☞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 의견이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물품설명서는 검토자가 신청물품을 파악하는 자료이니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된다. 다음의 예는 물품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다(출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물품설명서 작성 예–자동차 부품류

1. 품명(모델·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 Cargo Screen assembly
  품명은 full-name으로 기재하십시요.
- 모델명 : 8****_******
  장착할 차종을 기재하십시요.

2. 구조 및 형태

- 물품 형태 및 장착위치



신청물품



장착위치

자동차 부품은 반드시 장착위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내부구조도와 블록다이어그램(흐름도)이 필요합니다.

- 물품의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과 재질
  – 주요 구성요소 : 하우징, 스크린, 하우징 커버, 행거 외

– 각 요소별 재질 : 하우징(AL), 스크린(PVC), 하우징 커버(PPF), 행거 외(PA)

– 물품 크기 : 가로 210mm×세로 150mm×높이 130mm

3. 기능 및 용도

● 용도

– Wagon 차량의 리어시트 뒤 화물칸에 장착하여 화물칸에 화물을 적재했을 때 화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스크린을 펼쳐 가려준다.

신청물품의 설계와 제작 목적에 맞춰 설명하십시요.

● 작동원리

– 하우징 내의 회전롤에 PVC 스크린을 권취하여 필요에 따라 접고 펼 수 있다.

품목분류는 작동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변기기와 연관지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요.

4.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조립 → 검사 → 포장

제조공정은 물품에 따라 품목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요.

5. 첨부

① 견본 1점 : 견본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앞·뒤·좌·우의 컬러사진 4매

② 해외공급자 등이 제공한 HS 품목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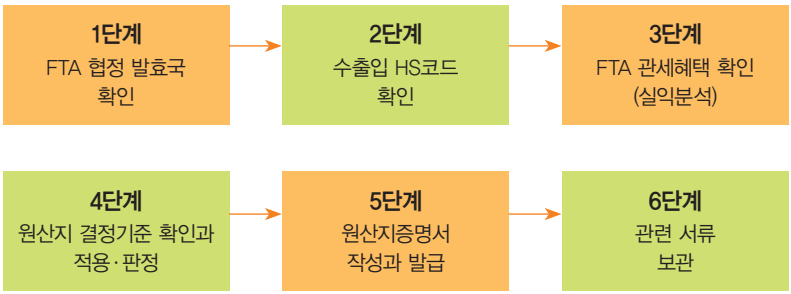
③ 제조자 카달로그와 설계도면 등

CHAPTER 2

FTA 활용편

제1장≫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 증명 업무 매뉴얼

FTA를 활용하려는 수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6단계의 업무로 FTA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는 수출 통관절차와 맞물려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이 심사·수리한 후 선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 **일반 수출 통관절차**

수출신고 →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 신고수리 → 선적

그러나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때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행하여 송부해야 하므로 업무절차가 달라진다.

≫ **FTA 수출 통관절차**

① 수출신고 →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 신고수리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선적

② 수출신고 →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 신고수리 → 선적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대개 선적 전에 발급받지만 불가피한 경우 선적 후라도 소급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서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발급도 가능하며, 분실 등의 경우 재발급도 가능하다.

FTA 원산지 결정을 위한 절차별 정보 획득 방법

프로세스	목 적	절 차	확인 방법과 정보원
수출품 HS코드 확인	수출품의 규격·용도·기능을 확인하고, 관세율표에서 HS코드 확인	수출품의 HS코드는 관세청 품목분류 DB에서 물품의 품명·규격·기능을 검토한 후 확인	·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 http://fta.customs.go.kr (FTA포털)
원산지 기준 확인, 상대국 관세율 확인	수출품에 적용할 FTA 협정 원산지 기준과 상대국의 관세율·관세철폐 스케줄 확인	수출품의 HS별 원산지 기준과 관세철폐 스케줄은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에서 확인	·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 http://fta.customs.go.kr (FTA포털) · http://www.fta.go.kr (산업통상자원부, 협정문)
원재료·부품 HS코드	수출품과 HS코드의 비교분석을 위해 투입한 재료·부품의 HS 확인	사용한 부품·원재료의 HS코드는 관세청 품목분류 DB에서 물품의 품명·규격·기능을 검토한 후 확인	·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
원재료·부품 원산지 기준 확인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와 부품의 구매경로별 HS코드별 원산지 기준 확인	사용한 원재료·부품의 구매경로별 HS별 원산지 기준은 관세청 품목분류 DB에서 품명·규격·기능을 검토한 후 확인	·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 http://fta.kita.net/
원재료·부품 원산지 판정	제품의 가공공정 분석과정을 거쳐 부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 역내산·역외산 여부 확인	수출품 생산에 사용한 부품원가·원재료원가는 HS정보를 통해 각 원산지를 판정	· 업체에서 직접 판정 ·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 · 정부지원제도 활용(컨설팅 등)
원재료·부품 원산지확인서 등 확보	수출품에 사용한 원재료와 부품에 대해 업체별로 확인하여 원산지 확보	사용한 원재료·부품에 대해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확보	· 중소기업의 직접 협력업체에 요청
수출품 원산지 결정	수출품이 수출지역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원산지 결정	수출품의 HS·재료비·수출가격 정보와 부품원가·원재료원가, HS정보를 통해 각 원산지를 판정	· 업체에서 직접 판정 ·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 · 정부지원제도 활용(컨설팅 등) · FTA Pass 등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 작성·보관, 기관발급이면 세관·상공회의소에 신청, 자율발급이면 직접 작성	원산지가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관에 신청	·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Uni-pass 활용) · http://cert.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1. FTA 협정발효국 확인

FTA를 타결·서명했어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말 현재 총 9개 협정, 47개국과 발효되어 있다.

9개 협정 47개국 발효

칠레(04. 4. 1), 싱가포르(06. 3. 1), EFTA(06. 9. 1), 아세안(07. 6. 1. 나라별로 발효일 다름), 인도(10. 1. 1), EU(11. 7. 1), 페루(11. 8. 1), 미국(12. 3. 15), 터키(13. 5. 1)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10개국)
- EU(유럽연합)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8개국)

서명·타결

콜롬비아(13. 2. 11. 서명)

크로아티아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적용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크로아티아는 상기 일부터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일부터 크로아티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탁송화물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수출자가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 한다(※현재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추가인증 필요없음).

그러나 동 협정에 따라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수입품은 향후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은 FTA 특례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된다.

※ 크로아티아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국가부호(두 자리, HR), 세관부호(두 자리), 인증수출자번호(두 자리), 연도(두 자리)
(예시) HR/10/001/13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

2. 수출입 HS코드 확인

1) 수출품의 HS코드 확인

수출하면서 FTA 원산지 증명을 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한다. 이 때는 반드시 수출품의 수출국(한국) 내에서의 HS코드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코드를 함께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이는 수출입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만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문에 HS코드별로 구분해 나열해 놓았는데 이를 PSR(Product specific Rule)이라고 한다. 수출입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채 FTA 원산지 증명 등을 진행하면 원산지 지위가 달라져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HS코드(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1) 개 요

물품의 HS코드(품목분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보통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2)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관련 법규집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방법이다.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인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류정보」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3)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자가 스스로 HS코드(품목번호)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HS코드(품목번호)를 확정해 회신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32쪽 참조).



양국의 HS코드가 다를 때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회신받은 HS코드가 미국 HS코드와 다름.
- 수출자 요구사항 : 동일품에 대하여 양국이 HS코드가 다를 때는 양국의 품목분류 결정기관에 문의하여 HS코드를 확인(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수입자가 요구하는 HS코드는 인정 불가).
- 조치 : 양국의 품목분류 결정기관에서 동일품의 HS코드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 FTA 관세혜택은 수입자가 받게 되므로 수입국 HS코드를 적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입국 검증에 맞게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출처 : 서울세관 FTA 통관애로해소센터 이용안내

3. FTA 관세혜택 확인(실익분석)

1) FTA 관세혜택 확인

FTA 협정세율과 상대수입국에서 적용받는 실행세율상의 차이가 없으면 FTA 원산지 증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FTA 가 발효된 국가와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FTA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FTA 원산지 증명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방대하며, 추후 증명에 따른 검증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혜택 즉, 실익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실익이 있는 경우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FTA 관세혜택 계산하는 방법

(상대수입국 실행세율−FTA 협정세율) × 상대수입국의 물품 수입(과세)가격

예) 독일로 남자 면셔츠를 수출할 때 관세혜택은?

독일 실행세율 12%, FTA 협정세율 0%, 독일 수입가격 100억 원으로 가정.

■ (12%−0%)×100억 원 = 12억 원



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양허세율)의 차이

- 실행세율 : 수입국에서 실제 적용받는 최혜국대우(MFN) 세율로, 기본세율과 양허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이 실행세율이다.
- FTA 협정세율(양허세율) : FTA 협정상의 관세인하(철폐)는 현재의 실행세율이 아닌 특정 연도의 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비율로 관세를 인하(철폐)하며, 현재 연도의 관세양허표상의 FTA 세율을 말한다.

3) FTA 협정관세율 조회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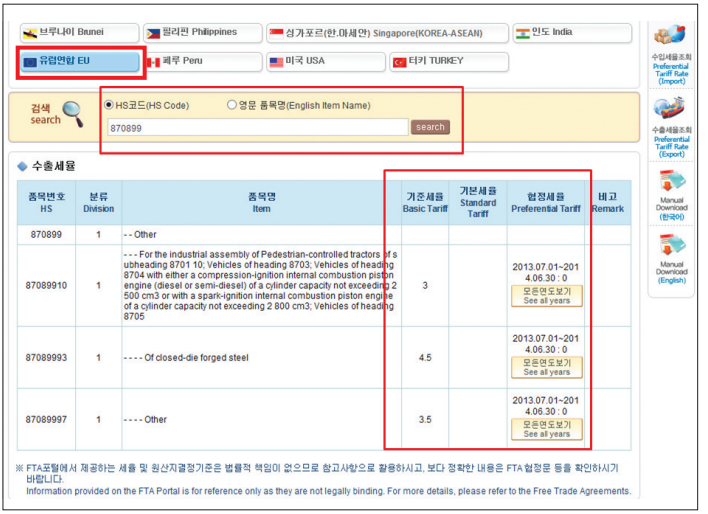
FTA 협정관세율은 각 협정마다 품목별로 즉시 철폐와 단계적 철폐로 나뉘므로 반드시 해당 FTA 협정문을 찾아보거나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한다.

'FTA 수출시 세율'을 선택한다.



거래 국가명을 선택한 후 수출 HS코드 6단위를 입력·조회한다.



(2)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http://fta.kita.net)에 접속한다.

'수출(상대국 관세율)'을 선택한다.



거래 국가명을 선택한 후 수출 HS코드 6단위를 입력·조회한다.



4) 상대수입국의 일반 세율(실행세율) 조회하기

상대방 수입국에서 적용받는 수입 일반세율(실행세율)은 바이어에게 물어 체크하거나, 유관기관(관세청·무역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대수입국의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한다.

- 무역협회 '세계의 관세율 정보'
  http://www.kita.net/trade_business/trade_navi.jsp
- 관세청 '세계 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적용·판정

1)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이유

FTA는 체결 국가 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각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기준(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마다 품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구축해놓은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해보거나, 직접 FTA 협정문을 찾아보아야 한다.

(1)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한다.

'원산지기준(PSR)'을 선택한다.



조회할 'FTA 협정국가'를 선택한 후 수출입품의 'HS코드'를 입력·검색한다.



(2)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http://fta.kita.net)에 접속한다.

'원산지기준(PSR)'을 선택한다.



조회할 'FTA 협정국가'를 선택한 후 수출입품의 'HS코드'를 입력·검색한다.



3)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해당 국가에서역 완전히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과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157쪽 참조).

5.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1) 원산지증명서의 개요

물품을 수출입할 때 동 물품이 양국 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원산지증명서라고 한다.

- Certificate of Origin(C/O) : 한-미, 한-아세안, 한-인도 협정 등
- Origin Declaration(원산지신고서) : 한-EU, 한-EFTA 협정 등

※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기관발급제(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발급제(self-certification), 절충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했다. 한·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발급을, 한·인도 CEPA에서는 기관발급만을 허용한다. 단,

한국과 인도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협정 이행 5년 이후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비교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서식	유효기간	사용회수
한–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양국 통일 증명서식	2년	*1회사용 원칙(분할 가능), *한–미, 한–페루 예외 있음 (포괄증명)
한–싱가포르	기관증명	싱가폴 (세관) 한국 (세관·상공회의소·자유무역관리원)	양국 별도 증명서식	1년	
한–EU 한–EFTA 한–터키	자율증명	수출자 (예외 : 참조1)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1년	
한–아세안 한–인도	기관증명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상공회의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양국 통일 증명서식	6개월 (아세안), 1년 (인도)	
한–미국	자율증명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서식 없음	4년	
한–페루	기관발급 자율발급	페루 (통상본부) 한국 (세관·상공회의소·인증수출자)	양국 통일 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1년	

참조1. 스위스 치즈–기관발급(스위스연방농업국)

먼저 자율발급제는 수출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우리나라가 칠레, EFTA,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비해 기관발급제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제3의 기관이 수출자에게 신청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이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 체결한 FTA에서 채택된 방식이다.

절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중 성실업자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EU가 체결한 FTA에서 많이 도입하는 방식이다.

3) 발급방식별 발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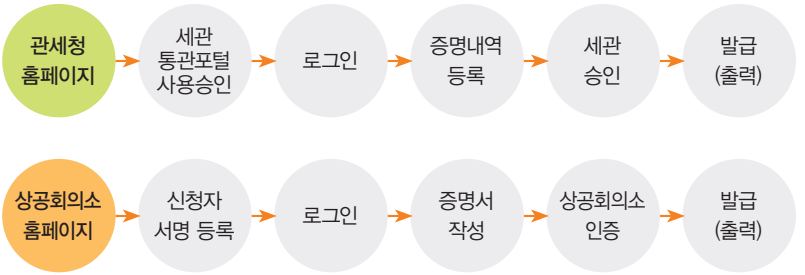
(1) 자율발급

서명카드 비치	서명권자 지정	증명서 발급·서명	증명서 작성대장 기재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사유기재 →	①적용 협정 명칭 ②원산지와 결정기준 ③수출자 성명 ④수출자 전화 ⑤수출자 FAX ⑥수출자 서명 ⑦수출자 서명일 →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①작성번호·작성일 ②수출신고번호·수리일 ③품명·규격·HS·수량 ④원산지·생산자·공급자 ⑤적용 협정 명칭 ⑥원산지 결정기준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2) 기관발급

기관발급은 우리나라에서 발급권한이 있는 관세청(세관)에 신청하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6. 서류보관

1) 개 요(서류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부인되어 수입자가 추징을 받을 수 있다.

2) 보관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보관기간

다음의 서류들은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③ 수출신고필증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⑤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⑥ 해당 물품과 원재료의 생산·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⑦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⑧ 해당 물품과 원재료 출납·재고 관리대장
⑨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① 수출자나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해당 물품과 원재료 생산·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⑥ 해당 물품과 원재료 출납·재고 관리대장
⑦ 재료 생산자가 생산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참 고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수출당사국을 출발해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만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제3국을 거칠 때는 해당국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다면 일정 조건하에서 관세특혜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송서류를 반드시 적정하게 지참해주어야 한다.

●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2008. 7. 15)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포장형태·품명·수량·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했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물품)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2009. 12. 31)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table>
<tr><td colspan="3">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td><td colspan="3">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td></tr>
<tr><td colspan="3">2. Producer(name, address, country)(optional)</td><td colspan="3">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Country) _____</td></tr>
<tr><td colspan="3">3. Importer(name, address, country)(optional)</td><td colspan="3">5. For Official Use</td></tr>
<tr><td colspan="3">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td><td colspan="3">6. Remarks</td></tr>
<tr><td>7. HS코드
(6 digit)</td><td>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td><td>9. Gross weight and value(FOB)</td><td>10. Origin criterion</td><td colspan="2">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td><td colspan="3">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td></tr>
<tr><td colspan="6">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td></tr>
</table>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인도와 협정한 제3.4 제1항 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 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CC, CTH, CTSH 또는 RVC% CC, CTH, CTSH + RVC%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한-EU FTA 원산지증명 양식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 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1. ~ 21. (생략) 22.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2)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 원산지신고서 작성 요령

원산지신고서 형태로 원산지 증명을 하는 협정(예 : 한–EU/ 한–EFTA/ 한– 터키 FTA 등)의 경우, 하기 샘플처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한–EU FTA 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샘플을 작성하였다.

COMMERCIAL INVOICE (샘플)

<table>
<tr><td colspan="2">① Shipper/Seller
Hansol Inc.</td><td colspan="3">⑧ No. & date of invoice
HS-130912 Sep. 12, 2013</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3">⑨ No. & date of L/C</td></tr>
<tr><td colspan="2">②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Wilson Company, Limited</td><td colspan="3">⑩ Payment Terms
T/T</td></tr>
<tr><td colspan="2">③ Notify party
Same as above</td><td colspan="3">⑪ Price Term
FOB</td></tr>
<tr><td>④ Port of loading
Busan, Korea</td><td>⑤ Finaldestination
Paris, FRANCE</td><td colspan="3" rowspan="2">⑫Remarks</td></tr>
<tr><td>⑥Carrier
Brown 709E</td><td>⑦ Sailing on or about</td></tr>
<tr><td>⑬ Marks & numbers of Pkg</td><td>⑭ Description of Goods</td><td>⑮ Quantity</td><td>16. Unit-price</td><td>17. Amount</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HS”
C/NO : 1-25
SIZE :
Q'TY :</td><td>AUTO TUBE</td><td>500 PCS</td><td>USD 30</td><td>USD 15,000</td></tr>
<tr><td colspan="5">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010-12-345678(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2) preferential origin.</td></tr>
<tr><td colspan="2">P.O.Box :
E-mail :
Telefax No. :
Telephone No. :</td><td colspan="3">18. Signed by _____
Manager</td></tr>
</table>

●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2011. 12. 2)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YYYY (년) MM (월) DD (일) YYYY (년) MM (월) DD (일) From:..... (부터) To:..... (까지)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				
	Fax(팩스)				
	E-mail(전자주소)				
3. Producer (생산자)	Name(성명)		4. Importer (수입자)	Name(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			Telephone(전화)	
	Fax(팩스)			Fax(팩스)	
	E-mail(전자주소)			E-mail(전자주소)	

5.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규격)	Quantity & Unit (수량이나 단위)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 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회사명)
Name(작성자 성명)	Title(직위)
YYYY(년) MM(월) DD(일)	Telephone(전화번호) Fax(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PE
※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방 법
1	수출자	'생산자'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기재 항목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3	생산자	수출품 생산업체를 아는 경우 기재
4	수입자	물품의 수입업체를 아는 경우 기재
5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	'HS품목번호', '품명', '원산지 국가'는 필수 기재항목 '품명·규격', '수량·단위'는 수출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6	특이사항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7	서명 등	'작성자 성명', '증명일'은 필수 기재항목

● 싱가포르와의 협정한 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2008. 7. 15)

<table>
<tr><td colspan="3">1. Exporter

2. Importer</td><td colspan="3">Reference No.: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td></tr>
<tr><td colspan="3">3. Departure Date:</td><td colspan="3">4. Vessel's Name/Flight No:</td></tr>
<tr><td colspan="6">5. Port of Discharge and Route:</td></tr>
<tr><td colspan="3">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td><td colspan="3">7. Country of Origin:</td></tr>
<tr><td>8. Item Number</td><td>9. Description of Goods</td><td>10. HS No.</td><td>11. Marks & Numbers</td><td>12. Quantity & Unit</td><td>13. Origin Criterion</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3">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td><td colspan="3">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td></tr>
</table>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는 'REPUBLIC OF SINGAPORE'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적습니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이나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 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s'
    ※ 8항목부터 13항목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에 적습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2011. 12. 2)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Name and Address) Tax ID No.	3. Importer(Name and Address)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Fax/E–mail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Issuing Number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Exporter (수출자)	■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2	Producer (생산자)	■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Importer (수입자)	■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 송품장번호 기재 ■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품목번호)	■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A :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비고)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서식(2011. 7. 29)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table>
<tr><td colspan="3">1. Exporter's name and address:</td><td colspan="3" rowspan="2">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td></tr>
<tr><td colspan="3">2. Producer's name and address:</td></tr>
<tr><td colspan="3">3. Consignee's name and address:</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td><td colspan="3">5. Remarks:</td></tr>
<tr><td>6. Item number (Max 20)</td><td>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td><td>8. HS code(Six digit code)</td><td>9. Origin criterion</td><td>10. Gross weight, uantity(Quantity Unit) or other (liters, ㎥, etc.)</td><td>11. Number and date of invoice</td></tr>
<tr><td colspan="3">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td><td colspan="3">13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임기관의 서명 및 소인)</td></tr>
</table>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라고 적을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페루와의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으며, 일련번호는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제7란에는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BULK"(포장되지 않음)라고 적습니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별 3개) 또는 "＼"(사선) 을 더합니다.
8. 제8란에는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WP
다) 별표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	PSR(1)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 제11란에는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3. 제13란에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의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2011. 7. 29)

<table>
<tr><th>항목</th><th>기재요령</th></tr>
<tr><td>신고문안</td><td>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3]”
※한글번역문 : ‘이 문서(인증번호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 .....[2]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기준 .....[3]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세부기재 요령】
1) 인증수출자는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의 국명을 적습니다.
① Korea ② Peru ※ 한글번역문 : ① 대한민국 ② 페루
3)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table>
<tr><th>원산지 결정기준</th><th>기재 문구</th></tr>
<tr><td>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한 물품</td><td>WO</td></tr>
<tr><td>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td><td>WP</td></tr>
<tr><td>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td><td>PSR(1)</td></tr>
<tr><td>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를 적용받는 물품</td><td>OP</td></tr>
</table>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적용받으면 그 비율과 함께 ‘BD’(공제법인 경우) 또는 ‘BU’(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td></tr>
<tr><td>장소 및 날짜 (Place and date)</td><td>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적습니다.</td></tr>
<tr><td>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Signature of the exporter)</td><td>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td></tr>
<tr><td>비고(Remarks)</td><td>특별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이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Article3.15 has been applied.”
※ 한글번역문: 제3.15조가 적용되었음.</td></tr>
</table>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2013.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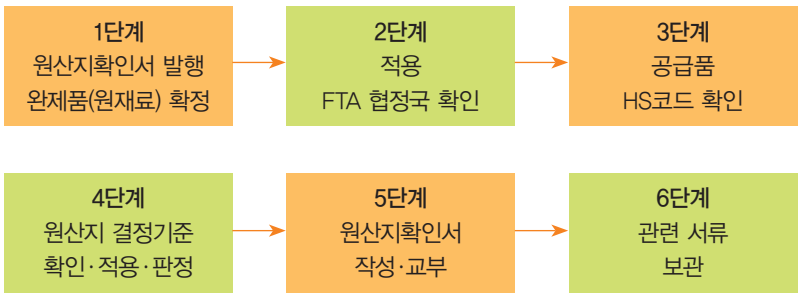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5] (Remarks)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이나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적습니다. ① 대한민국: KR ② 아이슬란드: 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2013. 2. 23)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원산지 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12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Derogation-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제2장≫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업무 매뉴얼

FTA를 활용하려는 국내 원재료 공급업체나 완제품 공급업체는 아래의 6단계에 따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개요

1) 의의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재료(수출용 원재료) 또는 국내에서 공급받아 수출하려는 완제품'에 대해 수출제품의 생

산자나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및 완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다.

동일한 제품(원재료)을 동일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반복적으로 거래할 때는 물품(완제품 또는 원재료) 공급일부터 최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하여 한 번 발행으로 증명할 수 있다.

2) 필요성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를 FTA 목적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해당 공급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한국산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BOM(부품명세서), 원가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이 필요하나 협력업체에서 이를 수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완제품이나 수출용 원재료 공급협력사는 해당 공급 물품에 대해 FTA 목적상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서류를 교부해 FTA 원산지 확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것이 바로 원산지(포괄)확인서제도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대상 제품(원재료) 확정

1) 개 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협력사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현재 발효된 FTA 협정 전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내역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유통된다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편의성 측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이

다. 그러나 현재의 FTA 원산지 관리 체계가 성숙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상위업체가 하위 협력사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는 제품 또는 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발행대상 제품(원재료) 확정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협력사들은 자사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원재료)에 대해 원사지(포괄) 확인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고객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받은 제품(원재료)에 대해서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1차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대상 제품(원재료)을 확정해야 한다.

3. 적용 FTA 협정국 확인

공급하는 완제품(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적용해야 하는 FTA 협정을 고객사와 확인해야 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할 적용 협정을 확인하는 것은 어느 협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급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원산지 지위 자체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고객사가 많은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이어서 현재 발효된 모든 FTA 협정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한다면 모든 FTA 협정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화장품 수출업체

와 같이 고객사가 현재 FTA 협정발효국 중에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만을 하고 있어 타 FTA 협정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하기 위한 적용 FTA 협정국을 고객사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말 현재 총 9개 협정,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다. FTA가 타결·정식서명했더라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41쪽 참조).

4. 공급품의 HS코드 확인

1) 공급품의 HS코드 확인

국내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 또는 수출 완제품의 HS코드를 확인한다. 특히 수출 완제품은 고객사와 상호 체크하여 수출품의 수출국(한국)내에서의 HS코드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코드를 함께 확인하여 추후 수정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를 추가로 체크하면 좋다.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에는 자사가 별도로 수출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해당 HS코드와 고객사가 발급 요청한 원산지(포괄)확인서상의 HS코드가 같은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이는 공급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만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을 하기 위한 기

준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문에 HS코드별로 구분되어 나열되어 있으며, 이를 PSR(Product specific Rule)이라고 한다. 수출입품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채 FTA 원산지 증명 등을 진행하면 수출입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어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HS코드(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물품의 HS코드(품목분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보통 직접적 확인 방법을 통해 확인을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으로 구분한다(자세한 사항은 43쪽 참조).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적용·판정

1)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이유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단이 선행되어야만 최종적인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 FTA는 체결 국가 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완제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공급하는 물품이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각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기준(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주의사항

원재료 공급 협력사가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최종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기재하므로 오류가 많다. 이에 공급 원재료에 해당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종류와 확인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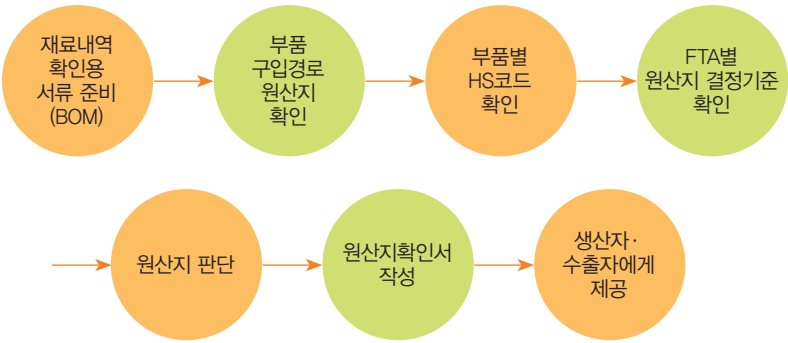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며 각 협정마다 품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구축해놓은 FTA포털 사이트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해 보거나, 직접 FTA 협정문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48쪽 참조).

3)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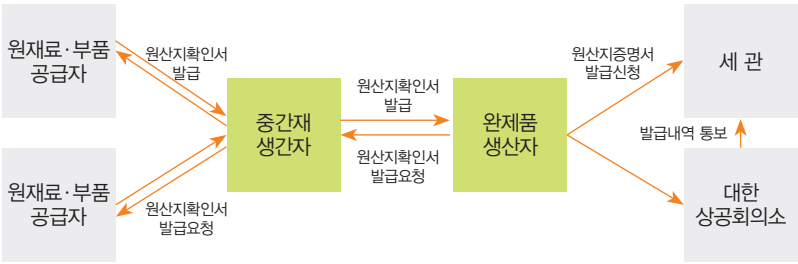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역내산 해당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과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적용되는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157쪽 참조).

6.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1) 작성절차



2) 유통경로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2013. 2. 22)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1. 공급하는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 공급받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

3. 연번	4. 적용대상 협정	5. 품목번호 (HS 6단위)	6. 품명·규격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호 및 주소 :
작성일 :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table>
<tr><th colspan="2">기 재 항 목</th><th>기 재 내 용</th></tr>
<tr><td colspan="2">발급번호</td><td>□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td></tr>
<tr><td>1</td><td>공급하는 자</td><td>□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td></tr>
<tr><td>2</td><td>공급받는 자</td><td>□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td></tr>
<tr><td>3</td><td>연 번</td><td>□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td></tr>
<tr><td>4</td><td>적용대상 협정</td><td>□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td></tr>
<tr><td>5</td><td>품목번호
(HS 6단위)</td><td>□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td></tr>
<tr><td>6</td><td>품명·규격</td><td>□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td></tr>
<tr><td>7</td><td>원산지 결정기준</td><td>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table>
<tr><th>원산지 결정기준</th><th>기재 문구</th></tr>
<tr><td>가. 완전생산 물품</td><td>WO</td></tr>
<tr><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td>
– CC
– CTH
– CTSH</td></tr>
<tr><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td>
– BD
– BU
– MC
– NC</td></tr>
<tr><td>라. 선택기준-실제 선택한 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td>
– CTSH
– BD</td></tr>
<tr><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tr>
<tr><td>바. 주요공정기준</td><td>– SP</td></tr>
<tr><td>사. 역외 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품)</td><td>– OP</td></tr>
<tr><td>아. 기타 기준</td><td>– Other</td></tr>
</table></td></tr>
<tr><td>8</td><td>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td><td>□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 충족”에 표시합니다.</td></tr>
<tr><td>9</td><td>원산지</td><td>□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한국”으로 적습니다.</td></tr>
<tr><td>10</td><td>원산지 포괄 확인기간</td><td>□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할 경우 그 반복 사용기간을 적습니다.(예) 2012. 12. 01 – 2013. 11. 30
※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을 적지 않았을 때는 단수 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td></tr>
</table>

● 원산지(포괄)확인서 샘플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SOL-13-01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1. 공급하는 자	상 호 솔화장품	사업자등록번호 120-12-12345
	대표자(성명) 김한국	전화/팩스 031- /031-
	주소/E-mail 경기도 파주시***/abc @yahoo.co.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010-12-12345
2. 공급받는 자	상 호 하나트레이딩	사업자등록번호 123-12-12335
	대표자(성명) 김민국	전화/팩스 02- /02-
	주소/E-mail 서울시 강남구***/abc @yahoo.co.kr	

공급물품 명세서

3. 연번	4. 적용 대상 협정	5. 품목번호 (HS 6단위)	6. 품명·규격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1	한아세안	3304.99	수딩 토너	CTH	[√]	[ ]	KR	2013. 7. 1~2014. 6. 30
2	한아세안	3304.99	수딩 에멀전	CTH	[√]	[ ]	KR	2013. 7. 1~2014. 6. 30
3	한아세안	3304.99	화이트 미스트	CTH	[√]	[ ]	KR	2013. 7. 1~2014. 6.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김한국 (서명 또는 인)
직 위 : 대표
상 호 및 주 소 : 솔화장품/ 경기도 파주시***
작 성 일 : 2013. 7. 1

회사 명판 / 직인

7.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활용

1) 개 요

수출품 생산에 사용하는 재료를 생산·공급하는 자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요청하면 해당 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동일한 생산자나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해야 할 때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증명을 할 수 있다.

2) 발급 필요성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공정의 누적에 대한 입증을 쉽게 하여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원활하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A사가 역외산 원면으로 면사를 제조한 후 한국 B사가 면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A가 발급한 국내제조(포괄) 확인서가 있으면 B사는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규정을 통해 자사의 공정과 통합하여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누적규정이란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가 생산한 경우 이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FTA 협정상의 기준이다.

	브라질산 원면 (HS 520)	→	한국에서 A사가 면사제조 (HS 5205)	→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5212)	→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기준		CC		CTH (5205로부터 제외)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5201-5208)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		비원산지 (국내 생산 미확인)		원산지 미충족		특혜 수출 불가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비원산지 (국내 생산 확인)		원산지 충족		특혜 수출 가능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양식(2013. 2. 2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급하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E-mail			
4. 공급받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E-mail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목번호 (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6. 비원산지 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연번	품목번호 (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단위	가격	비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7. 작성자 성명	상 호
작성자 서명	직 위
(년) (월) (일) __ __ __ __/__ __ /__ __/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발급번호	국내제조(포괄) 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 포괄 확인기간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 포괄 확인기간을 적지 않았을 때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급하는 자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공급받는 자	국내제조(포괄) 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5	공급품 명세	공급품의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이나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 재료 명세	5번 항목에 기재한 공급품별로 그 속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를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이나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적습니다.
7	작 성 자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상호,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샘플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 발급번호		13SK–0001		
2. 국내제조 포괄 확인기간		2013 년 1 월 2일부터 2013 년 12 월 31일까지		
3. 공급하는 자	상 호	선광	사업자등록번호	204–12–12345
	주 소	서울시 중랑구 ~~		
	대표자(성명)	이광복		
	전화/팩스	02–432– /02–439–		
	E–mail	abc@naver.com		
4. 공급받는 자	상 호	대신섬유	사업자등록번호	133–12–12345
	주 소	서울시 금천구~~		
	대표자(성명)	고관성		
	전화/팩스	02–867– /02–867–		
	E–mail	abc@hanmail.net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목번호 (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1	5407.61	안감 시접 44'(P100%)			제직–염색–가공
2					

6. 비원산지 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연번	품목번호 (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단위	가격	비고
1	1	5402.47	폴리필라멘트사 75D			인조섬유 10,000데시텍스 이하
	2					
2	1					
	2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7. 작성자 성명 이 광 복	상 호
작성자 서명	직 위
(년) (월) (일) __2013 _/__ 09__ /__02_/	전화번호 팩스번호

명판/직인

8. 서류보관

1) 개요(서류보관의무)

원산지 증명의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자나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작성자는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자가 FTA 원산지 검증(조사)을 받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구성 원재료 일부가 한국산(역내산)이기 때문에 최종 제품도 한국산(역내산)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했다면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행한 협력사도 중요한 검증대상 업체가 되기 때문이다.

또 협력사가 국내제조(포괄) 확인서를 갖추어 최종 제품이 한국산(역내산)으로 판정된 제품이라면 해당 제조공정을 수행한 협력사는 중요한 검증대상 업체가 된다. 이에 관련된 입증서류 구비는 항상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며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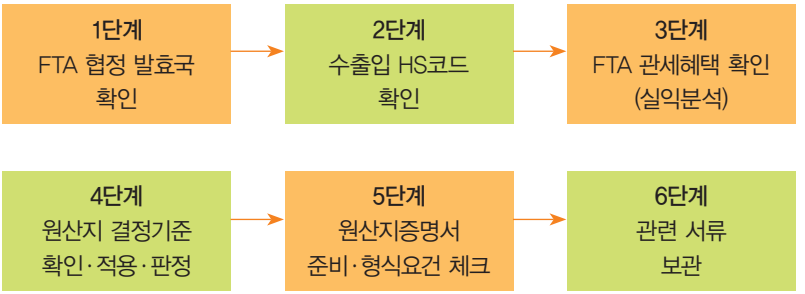
2) 보관서류 목록과 보관기간

다음의 서류는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① 수출자나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③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해당 물품과 원재료 생산·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⑥ 해당 물품과 원재료 출납·재고 관리대장
⑦ 재료 생산자가 생산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제3장≫
완제품·원재료(부품) 수입업체의 FTA 특혜 적용 업무 매뉴얼

FTA를 활용하려는 수입업체는 아래의 6단계에 따라 FTA 원산지 특혜 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입 통관절차와 맞물려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입항된 화물에 대한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세관이 심사 및 수리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 **일반 수입 통관절차**

입항 → 화물 보세구역 반입 → 수입신고 →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 신고수리 → 화물반출

그러나 FTA 협정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령하므로 업무절차가 달라진다. 다만, 수입신고수리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FTA 수입 통관절차**

① 사전 FTA 적용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 수입신고 → FTA 적용신청→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 신고수리 → 화물반출

② 사후 FTA 적용

수입신고 →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 신고수리 → 화물반출 →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 수입신고 정정·환급청구(FTA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선적 전에 발급받아 수입자에게 물품 도착 전 전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물품 도착 후 발행·전달받아도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거래요건 : 역내 거주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발송)하고 수입할 것
- 품목요건 : 관세양허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세번)에 해당할 것
- 원산지요건 : 원산지 규정(일반기준·품목별기준)을 충족시킬 것
- 운송요건 :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할 것
- 절차요건 : 적용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이 적절할 것

1. 협정발효국 확인

FTA가 타결이나 정식서명을 했어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므로 반드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말 현재 총 9개 협정,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어 있다(자세한 사항은 41쪽 참조).

2. 수출입 HS코드 확인

수입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한다. 이 때는 수입품의 수출국(거래 상대방 국가)내에서의 HS코드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할 우리나라의 적용 HS코드를 함께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는 수출입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만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양허 여부를 체크하여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세한 사항은 43쪽 참조).

3. FTA 관세혜택 확인

FTA 협정세율과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실행세율상의 차이가 없으면 FTA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으므로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자세한 사항은 44쪽 참조).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상호대응세율

한-아세안 FTA

우리나라는 아세안 수입품의 관세를 철폐(Normal Track : 일반품목)했으나 상대방은 동일한 우리 수출품에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Sensitive Lists : 민감품목)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FTA 관세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동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수입하는 승용차에 FTA 특혜관세율 0%가 아닌 최혜국 실행관세율인 8%를 적용한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일 때는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 아세안 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상호대응세율이라 한다.

(예)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사이클에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민감품목)하지 않아 우리나라도 FTA 특혜관세율인 3%가 아닌 최혜국 실행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나, 말레이시아의 현행 모터사이클의 관세율이 5%이므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모터사이클에 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페루 FTA

페루가 원산지인 중고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당하는 중고 품목은 내과용·외과용·이화학용 원심분리기(8421.19-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9018.12-0000), 자기공명촬영기(9018.13-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9018.14-0000), 임신진단기(9018.90-1000), 치과용 컴퓨터 단층촬영기기(9022.13-0000) 등이다.

한-미 FTA

미국이 원산지인 자동차(품목번호 제8703호를 말한다)의 경우로 상대국이 FTA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거나 우리나라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매·운송·유통·사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에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1) FTA 협정관세율 조회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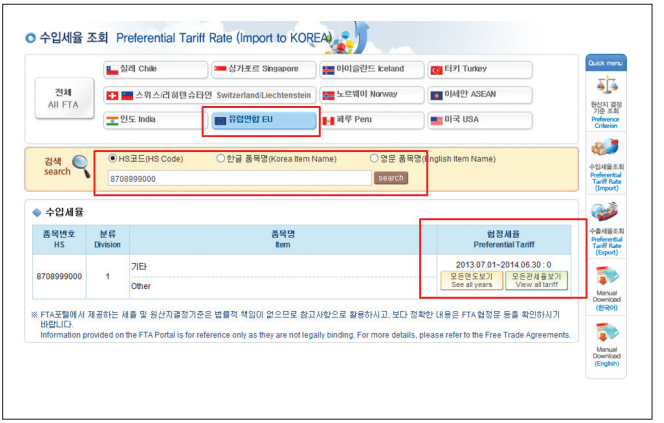
FTA 협정관세율은 각 협정마다 품목별로 즉시 철폐와 단계적 철폐로 나뉘므로 반드시 해당 FTA 협정문을 찾아보거나,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FTA포털사이트에서 세율을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1)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한다

'FTA 수입시 세율'을 선택한다.



거래 국가명을 선택한 후 수입 HS코드 10단위를 입력·조회한다.



(2)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http://fta.kita.net)에 접속한다

'수입(한국 관세율)'을 선택한다.



거래 국가명을 선택한 후 수입 HS코드 10단위를 입력·조회한다.



세율적용 우선순위

1순위	덤핑방지관세(51조), 상계관세(57조), 보복관세(63조), 긴급관세(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68조)	관세율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 적용
2순위	협정세율(FTA)≤3,4,5,6 순위세율	협정세율 적용
	협정세율(FTA)>3,4,5,6 순위세율	관세법상 세율 적용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세율이 높아도 5, 6순위보다 우선 적용
3순위	조정관세(69조) 할당관세(71조), 계절관세(71조)	할당관세율은 일반특혜세율 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
4순위	최빈특혜(일반특혜)관세(76조3항)	–
5순위	잠정세율(50조)	–
6순위	기본세율(50조)	–

4. 원산지증명서 준비와 형식요건 체크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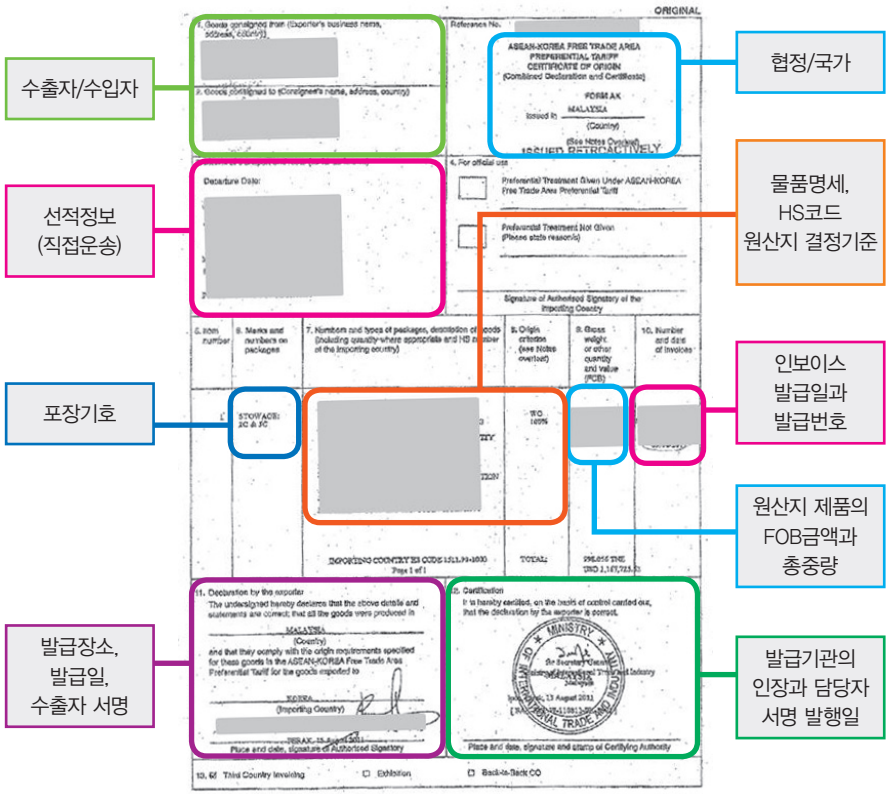
FTA 협정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라고 모두 해당 국가의 FTA 원산지 제품으로 볼 수 없다. 한국 내에서 유통·수출하는 것이 모두 한국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FTA의 관세특혜 0%를 적용받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이 FTA 원산지증명서다.

2) FTA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체크

상대방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 B/L 등의 상업서류와 함께 FTA 원산

지증명서를 받을 때는 해당 서류의 형식요건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별로 발급방식이 달라 잘못된 서류를 받으면 FTA 협정관세 적용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은 수입자의 추징 RISK가 될 수 있다.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51쪽 참조).

(1)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체크 예시



앞의 서류는 많이 활용하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AK-FORM)다.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우선 다른 상업서류들과 대조해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

한-EU FTA의 경우에는 인보이스와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원산지 증명을 한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인보이스에 원산지 신고문안만 적혀 수입되면 되므로 매우 편하지만 그만큼 해당 서류에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수출자와 체크해야 한다.

특히 EU수출자가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닌 EORI 번호(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우리나라의 통관 고유부호와 유사한 번호)를 적지는 않았는지 체크해야 한다. EU측의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관세청 FTA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EU와 EFTA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안내

기준일 2013. 5. 9

국가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고
벨기에	BE74	국가(2)/인증번호(1~4)	–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
체코	CZ/51/0001/13	국가(2)/세관부호(01–08 or 51–65)/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부호 확대추가 51–65(13.03.22)
	CZ/51/0001/13		
덴마크	DK/51/04/237/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3가지 형식 모두 유효 239추가사용(13.02.26)
	DK/51/239/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9/인증번호(5)	
	DK/04/000638	국가(2)/연도(2)/인증번호(6)	
독일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
에스토니아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
아일랜드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
그리스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
스페인	ES/28/0001/98	국가(2)/지역번호(2)/인증번호(4)/인증연도(2)	–

국가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고
프랑스	FR/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태리	IT/001/RM1/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 +디지털번호(1) or (2)/인증연도(2) Lombardy 지역에 Milan3 세관신설 (MI13(13.01.3)	※지역코드(RM1,RM2, MI1,MI2,MI3,NA1,NA2) RM(로마), MI(밀라노), NA(나폴리)
	IT/001/RM2/06		
	IT/001/NA1/06		
	IT/001/BO/11	국가(2)/지역번호(2)/인증번호(3 2)/지역코드(BO)	그외 지역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
리투아니아	LT/VMO/011	국가(2)/세관관서명(대문자2, 디지털번호(1)/인증번호(3)	세관관서명3→2 디지털번호 1추가(12.11.7)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2)/ORLD/인증번호(1–500) or(501–999)/인증연도(4) ※ORLD(Origine, Direction des Douans et Accises)	1~500 이하(national) 501~999(single)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N(nationa) E(EU community)
말타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 인증일련번호(3~4)	-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 (P or L)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2)/세관관서명(대문자5)/인증번호(3)	-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 인증연도(2)	-
핀란드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국가(2)/인증번호/Aland지역은 2자리	-
스웨덴	SE/SHF/123456	국가(2)/세관관서(3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 번호 2자리 사용)
영국	GB/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2)/세관부호(5)/인증번호(2)/ 최종인증연도(4)	신규추가(12.5.30)
한–EFTA(스위스)	123 or 1234 or123/1998	인증번호(3~4자리)/인증연도(4)	-
한–EFTA(노르웨이)	NO/07–123456789	국가(2)/인증연도(2)/인증번호(9) ※08.1.1부터 인증연도는 07이후 것만 사용	-

5. 협정관세적용 신청

1) 개 요

수출자에게 받은 FTA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을 모두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이 된다.

2) FTA 협정관세적용 신청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 도착하여 통관하기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아무 문제없이 수입신고와 함께 FTA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 납부 후 물품을 인수하고, 나중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은 후 사후적용신청을 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상대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때는 협정국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FTA 외의 APTA(아태무역협정)와 같은 경우에는 특혜관세 사후신청제도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통관 전 신청요건	통관 후 신청요건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미 등의 FTA	협정관세적용 신청서 제출 원산지증명서 소지	통관 후 1년 이내 신청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미국·페루 사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제출
APTA 등 일반 특혜협정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다음과 같은 부관을 기재한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C/O는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하면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 서명

3)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일정한 사항에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했을 때 수입신고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해야 한다.

6. 서류보관

1) 개요(서류보관의무)

FTA 특혜관세적용 신청은 '先(선) 통관 後(후) 검증'이 원칙이므로 수입자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보

관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FTA 특혜관세적용 신청에 대한 사후추징이 있을 수 있다.

2) 보관서류 목록

수입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② 수입신고필증
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④ 수입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⑤ 수입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⑥ 사전심사서 사본,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
⑦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제4장≫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1.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개요

인증수출자제도는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려고 도입한 제도다.

-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나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 한-EU FTA에서 원산지 제품의 수출금액이 6천 유로를 초과하면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다.

2.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협정별 혜택

(1) 인증수출자의 종류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 혜택을 부여

받고,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에 따라 혜택을 부여받는 것이 특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3년이고,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2년이 기본이며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과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 유효기간	3년	2년(11. 6. 30 개정)
인증기관	6개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인천공항/대구/광주), 평택직할세관	
인증기준	법규준수도와 원산지 증명 능력	HS 6단위별 원산지 증명 능력

2)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

협 정	인증 전	인증 후
한–ASEAN 한–싱가포르 한–인도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②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서 사본 – 송품장이나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 기타 원산지 증빙서류 ③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 ② 첨부서류 제출 생략 ③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6,000유로 이하 수출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모든 수출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통상 Invoice)에 수출자 서명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자 서명 생략
한–페루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 모두 가능
기타	동 제도 미적용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3.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신청)

1) 인증수출자 요건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

원산지 증명 능력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

원산지 관련 업무 능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 원산지 관리 전담자(외부 원산지 전문가 포함) 지정·운영

법규준수도

–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완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최근 2년간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요건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을 수출하는 자
(HS 6단위는 포괄적 개념으로 대표모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 관련 업무 능력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 원산지 관리 전담자(외부 원산지 전문가 포함) 지정·운영

다음의 법규 준수도 관련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간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보완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2)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1) 개 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회사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원산지를 증명할 때 서명할 사람을 지정하는 서명권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서명권자는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원산지 관리 전담자라도 서명권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서명할 수 없다.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내부 전담자'와 '외부 전담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내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기준

①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

②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 관리 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

㉮ 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 : 건당 1점(최대 15점)

㈏ 관세청·민간협회·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 교육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인정 과목	인정 내용	인정 점수
자유무역협정(FTA) 법령	·FTA 협정문 중 원산지 규정 ·FTA 관세특례법·고시	시간당 2점(최대 4점)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 이론 ·결정기준 판정 연습	시간당 2점(최대 6점)
품목분류	·품목분류 이론 ·산업별 품목분류 사례	시간당 2점(최대 6점)
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지정 실무	시간당 2점(최대 6점)
원산지 관리 실무	·증명서·소명자료 작성 실무 ·업무 매뉴얼 작성·사례 실무 ·전산관리시스템 실무	시간당 2점(최대 6점)

㈐ 관세·상품학·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최대 5점

(관세사·관세업무 담당 변호사 : 20점)

㈑ 관세청이나 전문기관의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실적 : 건당 5점

(최대 15점)

※ 전문기관 : 관세사·회계법인·컨설팅법인 등

㈒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전담 경력 : 2점~5점

1년 이내(2점), 2년 이내(3점), 3년 이내(4점), 3년 이상(5점)

③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3) 외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기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으려는 회사 내부에 '내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

가 없거나 그와 별도로 복수로 지정하려고 할 때는 '외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외부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될 수 있는 전문가는 관세사·변호사 등이다.

3) 인증수출자 신청서류[2](신청서 작성은 122쪽 참조).

인증수출자를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신청은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청하거나 서면 접수
② 주요 수출품(생산품)의 원산지소명서(5개 품목 이내)
③ 원산지(포괄)확인서(재료나 최종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때).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한 자료는 대외취급주의(FTA특례법 제20조 참조).
④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원재료명세서(BOM) 등
⑤ 기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서명카드·증명서 작성대장·원산지 관리 전담자 증빙서류 등
⑥ 원산지 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2항에 따라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등(자율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2) 출처 : 세관 인증수출자 신청서류 설명 자료 / 품목별 인증기준 예시

– 서면확인서는 인증신청시 제출한 서류나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 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 명시

(4) 인증수출자 신청하는 절차

1. 인증신청(UNI-PASS 또는 서면)	인증신청서·원산지소명서·원산지확인서 등
2. 인증요건 심사	신청서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시 현지 확인)
3. 보정요구(5~10일)	– 필요시 보정 요구 – 보정사항 보완
4. 인증부여(20일 이내)	신청내역(보정내역 포함) 확인 후 인증 (유효기간 3/2년)
5. 인증 변경 신고·수리	– 변경내역 확인 후 승인 – 인증사항 변경시 신고
6. 연장신청·인증	– 요건확인 후 3~2년간 연장 – 인증만료 30일 전 연장신청
7. 사후관리	– 운영보고서 확인(자율점검) – 필요시 인증요건 확인
8. 시정명령	– 위반요건 발생시 시정명령 – 30일 이상
9. 인증취소·청문	– 인증요건 위반시 인증 취소 – 청문시 소명자료 제출

(5) 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능력과 확인 서류

(1) 업체별 인증수출자

주 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 서류
수출품과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원산지 관리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검증결과 보고서·의견서
	원재료 원산지 관리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 확보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관리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 기준·리스트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생산(수출)품에 적용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해당 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해당 품목의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품목분류·원산지기준 추가·변경시 반영 기능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 확인)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회사가 실존하며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생산자에게 최종 수출품을 받아 수출할 때는 원산지확인서 제출 여부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생산공정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 결과 보고서·의견서
	원산지소명서 작성 능력 확인 ①프로세스 적정 여부 확인 ②주요 수출(생산) 품목(5개 이내) 서류 확인 ·원산지소명서의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 확인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①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검증결과 보고서·의견서 ②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소명서 ·소명자료 ·사전검증 결과 보고서·의견서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대비)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스캔 가능)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해당 물품과 원재료의 생산이나 구입 관련 서류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해당 물품과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 대장 등	·시스템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검증결과 보고서·의견서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 서류
신청서에 기재한 HS 6단위 물품의 대표 품목 (5개 이내)을 선정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사전검증시 확인한 협정·HS 6단위 생략 가능)	생산공정 확인 ·회사가 실존하며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이 있는지 여부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산자에게 최종 물품을 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와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전검증결과 보고서·의견서 ·제품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주요 수출(생산) 품목 5개 이내 선정 ·원산지소명서의 항목을 모두 기재했는지 여부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한지,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원산지 최종판정 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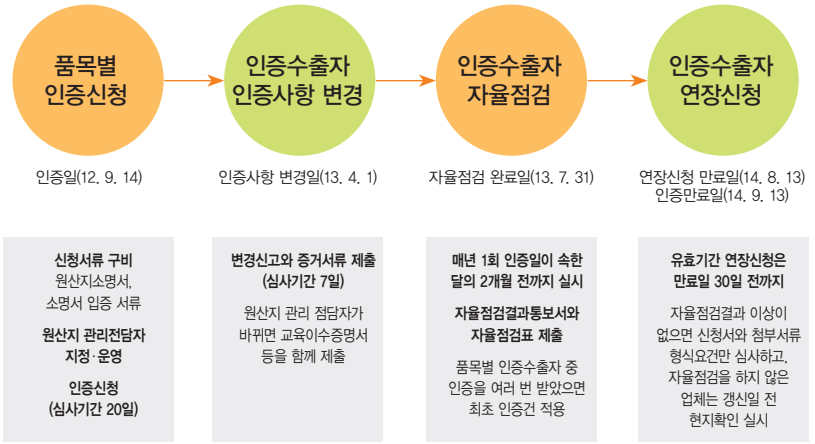
4.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자율점검)

1) 개 요

인증수출자 스스로 인증일 기준 매 1년마다 자율적으로 인증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한다.

인증수출자 사후관리는 원칙적으로 인증한 세관이 담당하며, 사후관리 세관을 변경하려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서'를 인증 세관에 제출해야 변경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니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율점검 절차



출처 :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모든 것, 부산세관 http://fta.customs.go.kr, 2013. 6.

3) 자율점검결과 통보서와 자율점검표

업체들이 사후관리 세관에서 받는 자율점검 관련 서식을 실제 작성하는 것을 가정하여 다음에 작성 예를 첨부한다. 각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아래의 예처럼 업체 사정에 맞게 작성하여 매년 1회 최초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까지 사후관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4) 인증사항 변경신청

인증수출자의 인증을 받은 후 업체 상호, 사업자번호, 원산지 관리 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갖추어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분할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품목에 대한 HS코드에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 결정기준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신규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갱신(연장신청)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맨 처음 신청할 때처럼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결과 통보서(2012. 10. 10) 샘플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결과 통보서

<table>
<tr><td colspan="3">① 인증번호 : 010-12-123456</td><td colspan="3">② 차수 : 1차</td></tr>
<tr><td rowspan="5">③
기본
정보</td><td>업체명</td><td>대신기계(주)</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514-12-12345</td></tr>
<tr><td>대표자</td><td>김상철</td><td>업체유형</td><td colspan="2">제조업</td></tr>
<tr><td>종 목</td><td>기계</td><td>업태(제조/무역)</td><td colspan="2">제조</td></tr>
<tr><td>주 소</td><td colspan="4">경기도 광주시***</td></tr>
<tr><td>연락처</td><td colspan="4">이메일 da@abc.co.kr 전화번호 031-610-</td></tr>
<tr><td colspan="2">④ 인증관련</td><td>HS 6단위</td><td>품명</td><td>협정</td><td colspan="2">원산지기준</td></tr>
<tr><td colspan="2" rowspan="2">인증품목
(필요시 별지 기재)</td><td>8408.90</td><td>DIESEL ENGINE</td><td>한-EU</td><td colspan="2">MC 50</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3">원산지 전담자</td><td>성명</td><td>소속</td><td>직책</td><td>전화</td><td>이메일</td></tr>
<tr><td>김민준</td><td>해외영업팀</td><td>차장</td><td>031-610-</td><td>da@abc.co.kr</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13">⑤
FTA
활용/
미활용</td><td rowspan="9">FTA
C/O
발급</td><td>협정명</td><td>건수</td><td>적용 금액</td><td colspan="2">비고</td></tr>
<tr><td>한-EU FTA</td><td>14</td><td>170만 원</td><td colspan="2"></td></tr>
<tr><td>한-아세안 FT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한-인도 CEP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한-EFTA FT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한-싱가포르 FT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한-칠레 FT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한-페루 FT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한-미 FTA</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td><td>5</td><td>2백만 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9">FTA
미활용</td><td>협정명</td><td colspan="4">미활용 사유/ 애로사항</td></tr>
<tr><td>한-EU FTA</td><td colspan="4"></td></tr>
<tr><td>한-아세안 FTA</td><td colspan="4">- 수출 없음</td></tr>
<tr><td>한-인도 CEPA</td><td colspan="4">- 관세 혜택 없음</td></tr>
<tr><td>한-EFTA FTA</td><td colspan="4">- 수출 없음</td></tr>
<tr><td>한-싱가포르 FTA</td><td colspan="4">- 수출 없음</td></tr>
<tr><td>한-칠레 FTA</td><td colspan="4">- 수출 없음</td></tr>
<tr><td>한-페루 FTA</td><td colspan="4">- 수출 없음</td></tr>
<tr><td>한-미 FTA</td><td colspan="4">- 수입자 요청 없음</td></tr>
</table>

⑥ 원산지 인증변경 등 이력관리(필요시 근거서류 구비)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사유발생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성명	곽노필	김상철	대표이사 변경	2013. 7. 8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원산지 관리 전담자	김호연	김민준	담당자 퇴사	2013. 5. 7
서명권자*				

⑦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이력관리 (필요시 별지 기재)

연번	일자	담당자	주 요 내 용
1	2013.5.7	김호연	퇴사
2	2013.5.7	김민준	보직 변경으로 신규 지정(원산지관리사)

⑧ 원산지 관련 건의사항

첨부 :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자율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3년 09월 25일

제출자 김 민 준 (서명)

서 울 세 관 장 귀하

●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2012. 10. 10) 샘플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수출입 통관	
●점검사항	점검결과
1-1. 전체 수출입 품목 수(HS 6단위 기준)를 기재 *(해설 : 인증과 별개로 해당 업체의 전체 수출입 품목 수를 기재)*	16개
1-2. 수출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물품이 수입되었는지 여부?	예
1-3.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기재	독일, 이태리
1-4.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품목을 기재	없음
2. 인증사항 변경	
●점검사항	점검결과
2-1. 품목별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 받은 품목 수를 기재	1개
2-2. 인증요건의 변경사항을 인증세관에 신고 여부?	예
2-3. 인증품목 중 원재료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지 여부?	없음
2-4. 원재료의 변경으로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는 품목이 있는지 여부?	없음
2-5. 인증일 이후 품목번호(HS6단위)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지 여부?	없음
2-6. 인증품목중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변경된 품목이 있는지 여부?	없음
3. 원산지 관리 전담자	
●점검사항	점검결과
3-1.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원수를 기재	1명
3-2.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고용변동이 있는지 여부?	있음
3-3.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외부 전문가인 경우 계약기간 경과 여부? *(해설 : 관세사 등과 외부 관리 전담자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없음
3-4.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교육이수실적 등 자격요건 유지 여부?	예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점검사항	점검결과
4-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의 작성 관리 여부?	예
4-2. 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 등 지재사항 정확성 여부?	예
4-3. 서명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했는지 여부?	아니오
4-4. 서명이 자필인지 여부?	예
5. 원산지 기준 관리	
●점검사항	점검결과
5-1. 수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	예
5-2. 중간재로 지정된 상품의 수출자 직접 생산여부? *(해설 : 원산지 결정기준 중 중간재 규정을 활용한 경우 체크할 것)*	해당 없음
5-3. 지정한 중간재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해당 없음
6. 원산지증명서 관리(※활용하는 FTA를 중심으로 기재할 것)	
●점검사항	점검결과
6-1. 한-EU FTA : ①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 표시 여부?	예
②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유무?	아니오
③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일과 장소 기재 여부?	예
6-2. 한-EFTA FTA : ①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정확성 여부?	해당 없음
6-3. 한-아세안, 한-인도 C/O : ② 물품의 생산자가 여럿인 경우 물품별 표기 여부?	해당 없음
③ C/O 인쇄 후 수출자 신고 항목에 서명권자 친필서명 여부?	해당 없음
6-4.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작성·관리하는지 여부?	예
6-5.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 유무?	없음
6-6.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 유무?	없음
6-7. FTA C/O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없음
6-8.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여부?	없음
6-9.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사실 유무?	해당 없음
6-10. 있다면 반려 사유는?	

7. 원산지소명서(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	
●점검사항	점검결과
7-1.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물품 품명규격이 같은지 여부?	예
7-2.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 결정 방법 기재 ①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서 ③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④해외 거래처의 요청 ⑤당사 수출입 품목 ⑥해외 품목분류 사례	①
7-3. 원산지소명서의 물품가격이 협정에 따라 조정되었는지 여부?	예
7-4. 원산지소명서에 투입한 원재료가 빠짐없이 적었는가?	예
7-5. 원산지소명서에 작성자의 성명·서명 등을 적었는가?	예
8. 원산지(포괄)확인서	
●점검사항	점검결과
8-1.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건수를 기재 *(해설 : 작성해서 교부한 것만 체크하여 기재할 것)*	1건
8-2. 원산지(포괄)확인서 증명기간의 경과 여부? *(해설 : 교부한 것과 교부받은 것 모두 체크하여 기재할 것)*	아니오
8-3. 원재료나 수출품 공급자가 바뀌었는지 여부?	아니오
8-4.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작성자의 성명·서명을 적었는지?	예
8-5.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적은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확성 여부? *(해설 : 품목번호와 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의 정확성)*	예
8-6.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게 원산지관리 지원 여부?	예
8-7.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해설 : 8-6이 "예"인 경우)*	협력 관세사를 통해 지원
8-8.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리 여부?	예

9. 제조 공정	
●점검사항	점검결과
9-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 구비 여부?	예
9-2. 해외에 생산공장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9-3.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 여부?	예
9-4.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만을 수행하는지 여부?	예
9-5. 외주공정에서 추가(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재료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9-6. 제조공정도의 작성일과 작성자를 적었는지 여부?	예
10. 원재료 관리(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점검사항	점검결과
10-1. 원재료 재고관리를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하는지 여부?	예
10-2. 적용하는 원재료 재고관리법을 기재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평균법
10-3.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부분품)가 있는지 여부? *(해설 :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인 경우 체크)*	아니오
11.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 품목)	
●점검사항	점검결과
11-1. 상품가격 산출은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EXW 또는 FOB)을 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	예
11-2. 원가계산서에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	예
11-3. 판매비·관리비·이윤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예(적정함)
11-4.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CIF)에 관세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 부대비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아니오
12. 서류보관	
●점검사항	점검결과
12-1.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는지 여부?	예
12-2. 원재료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는지 여부?	예
12-3. 보관하는 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예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양식(2013. 2. 22)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은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또는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귀 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변경·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직인

6. 인증수출자 신청할 때 많이 하는 오류

1) 인증수출자 신청할 때 많이 하는 오류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	양식	① 구서식 사용(신서식, 2013. 2. 23 개정)
	4. 원산지 인증대상 신청 물품	② 일반 품명이 아닌 모델·규격 기재 ③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오류, HS코드 오류
	하단	④ 신청인 성명·서명 누락 ⑤ 작성일 누락 ⑥ 명판·직인
원산지소명서	양식	① 2010. 12. 31
	2. 생산자	② 최종 생산자가 아닌 업체 기재
	3. 품명·규격	③ 인증신청서와 품명 일치하지 않음 ④ 규격 미기재 ⑤ 품명을 모델로 기재
	5. 물품가격	⑥ 가격 조건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 ⑦ 금액 미기재(부가가치기준)
	6. 원산지 결정기준	⑧ 기재 오류
	7. 주요 생산공정	⑨ 미기재
	원재료명세서	⑩ 원재료명 일부 누락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⑪ 충족 여부 체크 오류 ⑫ 부가가치비율 미기재
	하단	⑬ 협정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미기재(예 : 한–EU) ⑭ 상호와 주소 미기재 ⑮ 작성자 서명 누락 ⑯ 명판·직인 누락
원산지(포괄) 확인서	양식	① 구서식 사용(신서식, 2013. 2. 23 개정)
	1. 공급하는 자, 2.공급받는자	② 바꾸어 기재
	6. 품명/규격	③ 완제품의 경우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지 않음 ④ 품명이 아닌 모델명만 기재 ⑤ 규격 미기재
	7. 원산지 결정기준	⑥ 원재료 결정기준이 아닌 완제품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10.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⑦ 기간 오류
	하단	⑧ 작성자 서명과 상호·주소 미기재
가격 증빙자료	거래명세서	① 총액만 적어 해당 원재료 구입단가를 확인하기 곤란함 ② 규격·수량 적지 않고 총공급가만 적어 해당 원재료 구입단가 확인 곤란
제조공정도		① 투입 원재료 기재 누락
		② 작업공정별 작업장 미기재
서명확인서		① 구서식 ② 서명·명판·직인 누락
서명카드		① 서명 누락 ② 해지일과 사유 미기재 ③ 명판·직인 누락
원산지 관리 전담자	증빙서류	① 교육 이수증명서 미제출 ② 외부전담자(관세사) 계약서와 관세사 자격증 사본 미제출
	확인서	③ 원산지 관리 전담자 확인서 미제출

2) 원산지 자율관리점검에서 많이 하는 오류

결과통보서	① 인증번호	기재 오류, 미기재
	② 차수	기재 오류, 미기재
	③ 기본 정보	업체 유형 기재 오류, 미기재
	④ 인증 관련	일부 인증품목 미기재, 원산지기준 기재 오류
		원산지 관리 전담자 전산에 등록된 전담자와 다름
		원산지 관리 전담자 소속 미기재
	⑤ FTA 활용/미활용	발급 건수 미기재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건수가 자율점검표 8-1과 다름
	⑥ 원산지 인증 변경 등 이력관리	변경사항이 있을 때 세관에 신고 여부
	⑦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이력관리	교육 이수 내용 미기재
	하단	작성일 미기재, 작성자 서명 누락
자율점검표	1. 수출입 통관	품목수 기재 오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명 대신 협정 기재
	2. 인증사항 변경	인증받은 품목수 기재 오류
		인증요건 변경사항이 결과 통보서와 다름
	3. 원산지 관리 전담자	인원수 기재 오류
		자격요건 유지 여부 기재 오류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자필서명 관리 기재 오류
	5. 원산지기준 관리	중간재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가 응답
	6. 원산지증명서 관리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잘못 작성 관리
	7. 원산지소명서	물품 가격이 협정에 따라 조정 여부 기재 오류
		미기재
	8.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건수 기재 오류
		발급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품목분류 미관리
	9. 제조공정	업체 내부의 제조공정도 미비
		외국에 생산공장 있는 경우 인증품목과 관련 여부 미기재
		불인정공정 수행
		제조공정도의 작성일과 작성자 미기재
	10. 원재료 관리	원재료의 재고관리 미비
		완성품과 동일 HS 4단위 원재료 존재 사유 미기재
	11. 원가관리	판매비, 관리비, 이윤 과다책정
		수입 부대비용 포함할 때 사유 미작성
	12. 서류보관	서류관리 미비, 단순 기재 오류

7.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

최근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 건수가 늘고 있으며, 향후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제도만 활용하려고 하므로 전환 안내문을 소개한다. 다음은 서울세관에서 안내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 안내문』 중 일부다.

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이 필요한 수출품이나 협정이 추가될 때마다 세관에 신청하여 인증받아야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2년마다 연장신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음.

②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증명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인증과 관련된 모든 협정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업체별로 전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따라서 관세청(서울세관)에서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전환하려고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심사기준을 아래와 같이 완화했음을 안내하니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기존 : 인증수출자제도와 관련있는 모든 협정(한-EU·EFTA·아세안·인도·페루 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선택기준일 때는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 심사

– 개선 : 5가지 협정 중 업체가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국가와 관련있는 협정, 업체가 선택한 원산지 결정기준만 심사

제5장≫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1. FTA BOM 의 작성

보통 회사의 생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재명세서(BOM)로 재료내역을 확인한다. BOM은 완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구성 원재료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서류로, FTA 원산지 판정을 하려면 해당 제품에 결합하는 직접재료로 모든 원재료를 매입 단위로 체크해 검토해야 한다.

1) 작성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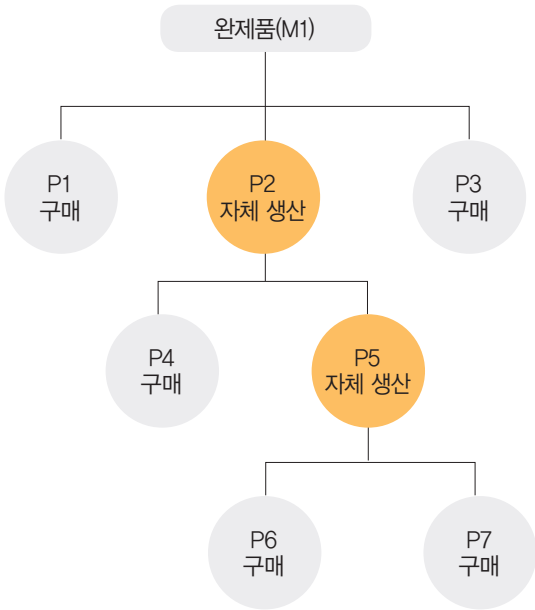
① BOM, Part list 등 재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

② FTA BOM에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와 HS코드, FTA 원산지 항목을 추가한다.

③ 원재료/부품별로 HS코드를 확인한다(세번변경 여부와 재료 원산지 확인에 필수 기초자료)

④ 구입경로별로 자체 확인 건과 납품업체 확인의뢰(원산지확인서 요청) 건을 분리하여 확인한다.

⑤ 가공단계별로 구성 원재료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으면 일반적으로 FTA BOM은 P1, P3, P4, P6, P7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중간재 규정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때 주의할 사항

- 국내 업체가 생산한 재료나 국내에서 매입한 재료라 하더라도 FTA 목적상 비원산지 재료일 수 있다.
- 한국산 재료로 인정받으려면 협력업체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국내에서 구입한 재료 중 원산지 확인이 곤란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한다.
- 수입 재료 중 최종 완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산 재료, 즉 역내산 재료는 한국산 재료와 동일하게 원산지 재료로 인정한다(조건 :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 BOM 샘플

소요부품(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 완제품 품명: KNITTED FABRIC (HS 6004.10)
□ 모델명: BENECHIA
□ 적용협정: 한-아세안 FTA
□ 작성(기준)일자: 2013. 9. 15

품명 (재료명)	세번부호 (HS No)	원산지	소요량	단가	가격 (원)	구성비	구매처	입증서류
POLYESTER YARN	5509.59	한국	72g			70%	효산주식회사	원산지확인서
SPANDEX YARN	5402.44	미상	30g			25%	타광산업	세금계산서
DYING STUFF	3204.12	미상	5g			5%	좋은염색	세금계산서
		역내산						
		역외산						

** 부가가치기준 (MC법 기준) : 한-EU/ 한-EFTA 등 **

구분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A =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B = Ex-Works가격 (내국세 공제후 가격)	부가가치 비율(%) = A/B * 100
원				

※ EX-Works 가격은 완제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 가치 포함, 완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anyInternalTax)를 공제.

** 부가가치기준 (RVC/BD법 기준) : 한-아세안/ 한-인도 등 **

구분	역내산(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A = 비원산지 재료 가치의 합계	EX-Work 가격	기타경비 및 국제운송비	B = FOB 가격	부가가치비율 (공제법) (%) = (B-A)/B * 100
원						

※ 가격에 관한 정의와 재료가치의 산정방법은 협정문 참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관련업무 제출을 위하여 작성,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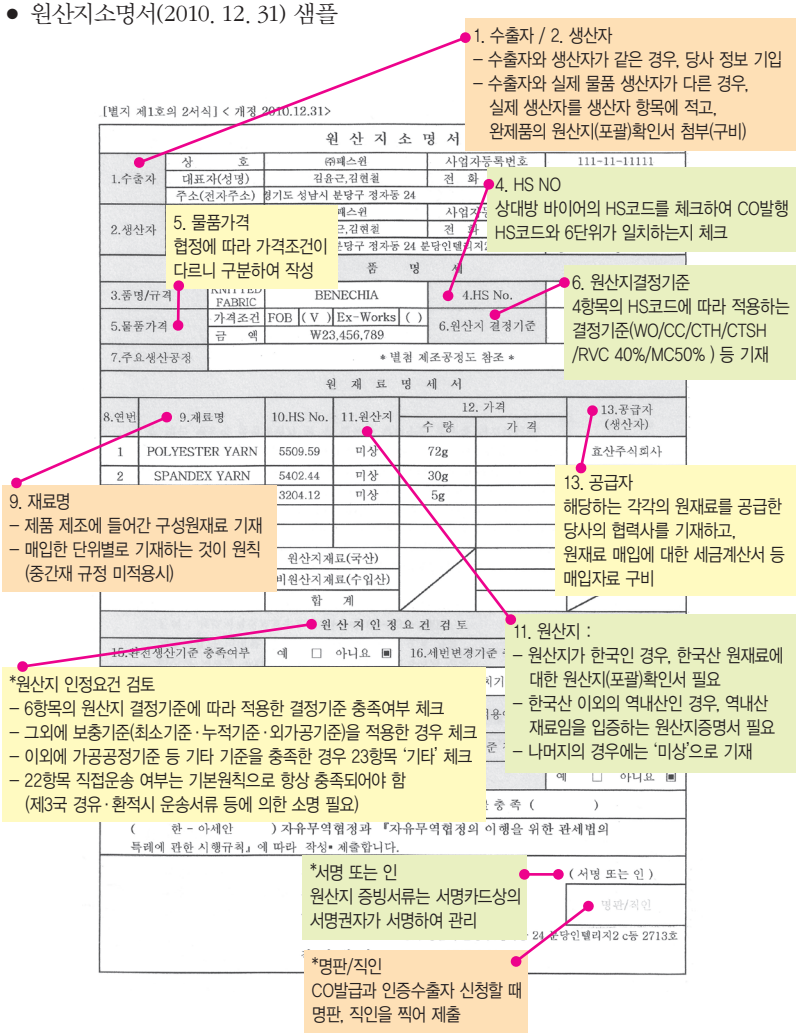
작성자: (주)패스원 생산팀장 김 민 준 (서명)

명판/직인

2. 원산지소명서 작성

원산지소명서는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기초 서류 중 하나로, 원산지 판정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주의할 사항을 체크해본다.

● 원산지소명서(2010. 12. 31) 샘플



[별지 제1호의 2서식] < 개정 2010.12.31>

원 산 지 소 명 서

1.수출자	상 호	㈜페스원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대표자(성명)	김윤근,김현철	전 화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2.생산자	상 호	페스원	사업자	
	대표자(성명)	근,김현철	전 화	
	주소(전자주소)	분당구 정자동 24 분당인텔리지		

품 명 세 서

3.품명/규격	KNITTED FABRIC	BENECHIA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V) Ex-Works ( )	6.원산지 결정기준
	금 액	W23,456,789	
7.주요생산공정	* 별첨 제조공정도 참조 *		

원 재 료 명 세 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 가격 수 량	12. 가격 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1	POLYESTER YARN	5509.59	미상	72g		효산주식회사
2	SPANDEX YARN	5402.44	미상	30g		
		3204.12	미상	5g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 산 지 인 정 요 건 검 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요 ▣	16.세번변경기준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서명 또는 인)

명판/직인

24 분당인텔리지2 c동 2713호

chapter 2 · FTA 활용편 _ 125

● 원산지소명서 양식(2010. 12. 31)

원 산 지 소 명 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4.HS No.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 Ex-Works ( )	6.원산지 결정기준	
	금 액			
7.주요생산공정				

원재료명세서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3. 공급자 (생산자)
				수 량	가 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 아니오 □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2.직접운송 여부	예 □ 아니오 □	23.기 타	예 □ 아니오 □
24.원산지 결정	충족 ( )	불충족 ( )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호및주소 :
작성일자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수출자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 표기합니다.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 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 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 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 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 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료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산지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계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 기준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 로 표기합니다. ○19~21란에 "예" 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 결정	○이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 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 에 "○" 를 표기합니다.

3.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구성 원재료 중 한국산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령하여 구비한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하다.

● 원산지(포괄)확인서(2013. 2. 22) 샘플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HYO-03-01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1. 공급하는 자	상 호 효산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20-12-12345
	대표자(성명) 김한국	전화/팩스 02-123-4567 / 02-123-4589
	주소/E-mail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abc @yahoo.co.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 공급받는 자	상 호 (주)패스윈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대표자(성명) 김윤근, 김현철	전화/팩스 031-711-6420 / 031-711-6424
	주소/E-mail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 passwin@passwin.kr	

공급물품 명세서

3. 연번	4. 적용 대상 협정	5. 품목번호 (HS 6단위)	6. 품명·규격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9. 원산지	10. 원산지 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1	한아세안	5509.59	POLYESTER YARN	CTC	[√]	[ ]	KR	2013. 7. 1~2014. 6. 3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 성 자 : 김한국 (서명 또는 인)
직 위 : 대표
상 호 및 주 소 : 효산주식회사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작 성 일 : 2013. 9. 1

명판 / 직인

210mm×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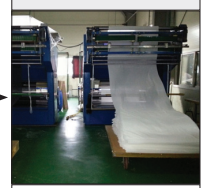
4. 생산입증 서류(제조공정도) 작성과 입증

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불인정공정 이상의 가공을했음을 체크하려고 제조공정도를 만들어 입증한다. 완성품 생산까지 순서대로 주요 공정 위주로 기술·나열하며, 사진은 필수는 아니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었다.

● 제조공정도 샘플

제조공정도(1/XX)

□ 제품명 : KNITTED FABRIC (HS 6004.10)
□ 모델규격 : BENECHIA
□ 작성일자 : 2013. 9. 15

공정명	① 원사투입	② 편직공정	③ 접착가공
공정 사진			
투입 원재료나 공정설명	추가 기술 가능	추가 기술 가능	추가 기술 가능

작성자 : (주)패스원 생산팀장 김민준 (서명/인)

명판 / 직인

5. 서명카드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에는 지정한 서명권자가 서명해야 한다.

● 서명카드 샘플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1	(원본 서명 기재)	–	대표	김윤근	2013.9.1 신규지정	
2	(원본 서명 기재)	–	대표	김현철	2013.9.1 신규지정	
3	(원본 서명 기재)	해외영업부	과장	김호연	2013.9.1 신규지정	
4						
5						
6						
7						
8						
9						
10						
11						
12						

명판 / 직인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내역을 작성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샘플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규격	품목 번호	수량	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수입자 수입국명	협정명칭 원산지결정기준	비고
PASS -13 001	2013. 9.20	010-15-10-00000001 / 2013.10.2	KNITTED FABRIC/ lumen	6004.10	100 (roll)	KR	㈜패스윈	P&P/ 미국	한-미/ PSR	

※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자율 발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하기 문구 첨부.
: 당사는 2013. 9. 25 현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실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패스윈 해외영업부 과장 김호연 (서명/인)

명판 / 직인

6. 인증수출자신청 구비서류 작성

● 업체별/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2013. 2. 22) 샘플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1. 신청구분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신청인		
상 호	㈜패스윈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대표자 성명 김윤근,김현철
전 화 번 호	031-711-6420	팩 스 번 호 031-711-6424
E-mail 주소	passwin@passwin.kr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 지정요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아니오
최근 2년간 속임수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작성발급 여부	[ ]예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1	6004.10	KNITTED FABRIC/ BENECHIA	한아세안	CTH	KR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1	김호연	과장	해외영업	031-711-6420	031-711-6424	passwin@passwin.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13 년 9 월 25 일

신 청 인: 김윤근, 김현철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서 울 세 관 장 귀 하

직인명판

첨부서류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물품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합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업체별/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2013. 2. 22) 샘플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1. 신청구분	[✔] 신규인증	[ ]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신청인		
	상 호 ㈜패스윈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대표자 성명 김윤근,김현철
	전 화 번 호 031-711-6420	팩 스 번 호 031-711-6424
	E-mail 주소 passwin@passwin.kr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 지정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예 [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1	6004.10	KNITTED FABRIC/ BENECHIA	한아세안	CTH	KR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1	김호연	과장	해외영업	031-711-6420	031-711-6424	passwin@passwin.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13 년 9 월 25 일

신 청 인: 김윤근, 김현철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서 울 세 관 장 귀 하

직인명판

첨부서류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물품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지로 제출시 생략 가능합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샘플

원산지관리전담자 확인서

『(주)패스윈』은 「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2」에 따라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를 신청함에 있어 원산지관리전담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성　　명 : 김 호 연
주민등록번호 : 750101-1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직　　위 : 과장
재 직 기 간 : 2011. 1. 2 ~ 현재

작성일자 : 2013. 9. 25

(주)패스윈
대표이사 김윤근, 김현철

직인명판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2012. 10. 10) 샘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자	상 호	(주)패스윈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4
	사업자번호	111-11-11111
	대표자성명	김윤근, 김현철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

2013 년 9 월 25 일

제 출 자 김윤근, 김현철 (인 또는 서명)

서울본부 세관장 귀하

직인명판

※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1. FTA 비즈니스 모델

FTA 비즈니스모델은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먼저 연구한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1) 직수출업체의 FTA 관세인하 활용 모델

(1) 모델개요

가장 기본적인 FTA 비즈니스 모델로, FTA 미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FTA 체결국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관세 절감 상당액만큼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모델이다.

(2) 체크포인트와 전략

① 수출상대국의 FTA 양허대상 여부와 양허관세율 확인

②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충족 방안을 강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충족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율 인하 혜택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③ 가격정책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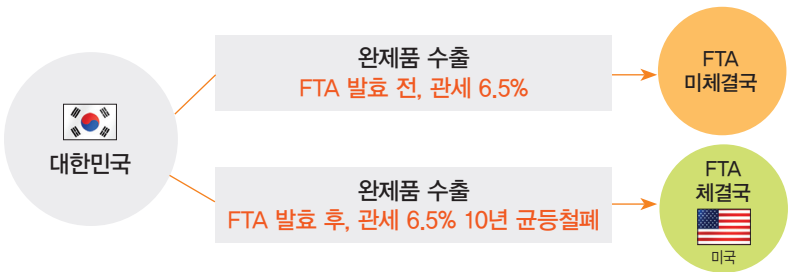
FTA 상대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혜택은 크게 수출확대와 채산성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수출확대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관세인하폭만큼 가격을 인하하는 반면 채산성을 우선시할 경우에는 가격 인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④ 수출자와 수입자 간 관세율 인하 혜택의 분배전략 수립

(3) 예시

우리나라의 품질경쟁력이 높은 ABS 수지의 경우 대미 수출에서 FTA 발효되기 전 6.5%의 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10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진다.

6.5%의 관세가 철폐되면 FTA 발효 이전에는 KG당 2달러이던 한국산 ABS 수지의 미국 도입 단가가 발효 이후에는 관세율이 없어지면서 1.88달러로 낮아져, 멕시코산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대만산과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2) 제3국 경유 가공수출업체의 FTA 무관세 수출 모델

(1) 모델개요

우리나라의 FTA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FTA까지도 분석해야 하는 모델이다. 국내 기업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제3국에서 생산 후 최종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에 적용가능한 모델로서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그 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다만, 본 모델은 제3국에서 원산지가 충족될만큼의 제조, 가공이이루어진 후 수출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2) 체크포인트와 전략

① 완제품 수입국의 FTA 양허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중간 생산국(제3국) 및 최종 수입국과의 FTA 관세인하폭이 제품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검토한다.

② 최종 수입국 시장에서 중간 생산국(제3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확인

③ 완제품생산국에 투자 진출 가능성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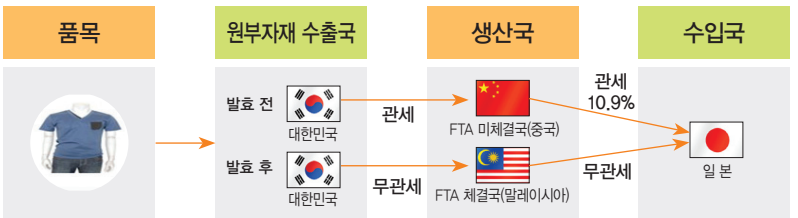
상대국의 FTA를 활용하는 모델이 가격경쟁력이 클 경우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에 진출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④ 현지 공정 이전시에는 최적의 장소를 선택

현지 공정 이전시 수입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최적의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예시

면 티셔츠의 경우 기존에는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보내 제품을 만들어 일본으로 수출, 일본에서 10.9%의 관세율을 부담했다.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원부자재를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한 말레이시아에 보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여 일본과 말레이시아 간에 FTA를 이용하여 무관세로 일본으로 수출한다.



3) 원자재 수입선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1) 모델개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를 기준으로 FTA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충족을 위해 부품, 소재의 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해 원산지를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FTA 상대국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를 국산(역내산)재료로 간주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이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다.

(2) 체크포인트와 전략

① 수입원재료 관세율·품질 확인

FTA 미체결국과 FTA 체결국간 관세율 및 품질을 비교하여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수입시 납부한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되므로 국가별 관세율 인하폭이 중요하지 않지만, 내수판매를 위한 부품, 소재 및 완제품 수입시에는 관세율 인하폭이 중요한 변수이다.

②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충족방안을 위한 전략 수립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선이 결정되면 우리나라에서 FTA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를 검토해야 한다.

③ 생산체제 및 시장 수용성을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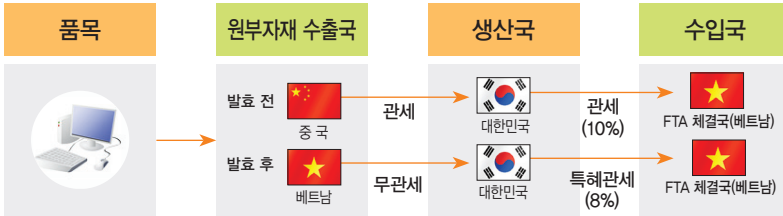
수입제품이 가격과 함께 국내 생산체제에 적합한 제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완제품의 경우 시장의 수용성을 검토해야 한다.

(3) 예시

컴퓨터를 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관세율 10%를 부담하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 FTA 특혜관세율 8%만 납부한다.

'A'사가 생산하는 컴퓨터는 현재의 생산체제에서는 국내 부가가치가 33만 원으로 총생산비 98만 원의 33.7%로 베트남이 한국산 컴퓨터 수입시 적용하는 원산지기준인 부가가치기준 40%에 미달되기 때문에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중국에서 도입하던 HDD부품을 원산지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베트남에서 수입하면 국산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비율이 40.8%가 되어 특혜관세율 8%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국내 조달 및 생산 전환을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1) 모델개요

섬유 등 가공공정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품목에 적용 가능한 모델로서 역외국에서 수행하던 공정 중 원산지 인정에 필요한 공정을 역내에서 수행,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모델은 주로 섬유산업에서 미국의 원사기준(Yarn-forward)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에 사용할 수 있다. 원사기준은 대미 수출에 있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사 제조단계부터 모든 가공공정(제직, 재단, 염색, 봉제)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저가 원사를 수입해 가공·수출하던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국내에서 조달·생산·가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있는 바이어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조달하던 원사를 우리나라 제품으로 변경하는 수입선 전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체크포인트와 전략

① '관세인하혜택〉 국내조달·생산전환 비용'여부 확인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생산공정을 해외로 이전하는 목적은 생산비 절감이므로 이를 국내조달 및 생산으로 전환

하는 것은 생산비 상승을 초래한다. 따라서 완제품 수출시 관세인하 혜택이 국내조달·생산전환에 따른 생산비 상승분보다 커야한다.

② 중장기적인 국내외 조달·생산 환경의 변화를 감안

국내 조달·생산에 따른 비용보다 혜택이 크다고 해도 국내외 조달/투자 환경은 항상 변화하므로 전환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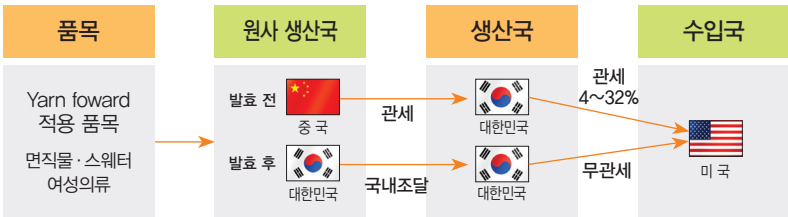
③ 한국산 브랜드 효과를 최대화하는 전략수립

원산지가 한국으로 바뀜으로써 누리게 되는 한국산 브랜드 효과를 최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예시

인조섬유 스웨터의 경우 기존 생산 시스템과 같이 1,700원의 중국산 원사를 수입 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율 32%를 적용받아 미국내 도입가격이 1벌당 11,484원이 된다.

그러나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국산 원사를 사용하면 국산 원사가 중국산에 비해 300원 비싸기 때문에 생산 원가는 높아지지만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율 32%를 면제받아 미국 도입가격이 1벌당 9,000원이 되면서 중국 원사 사용시에 비해 가격이 22% 저렴해진다.



인조섬유 스웨터 관세 32% 즉시 철폐, Yarn-Forward 적용(단위 : 원)

구분	중국 원사 사용	국내 생산
원사 비용	1,700	2,000
완제품 가격(A)	6,700	7,000
운임 등 수수료(B)	2,000	2,000
미국 관세(32%)(C)	2,784	0
미국 도입가격(A+B+C)	11,484	9,000

5) 외주업체의 원산지 관리를 통한 한국산 원산지 증명 모델

(1) 모델개요

외주업체에서 공급받은 반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사급거래를 통해 외주업체에서 공급받은 반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외주업체로부터 반제품의 FTA 원산지확인서 수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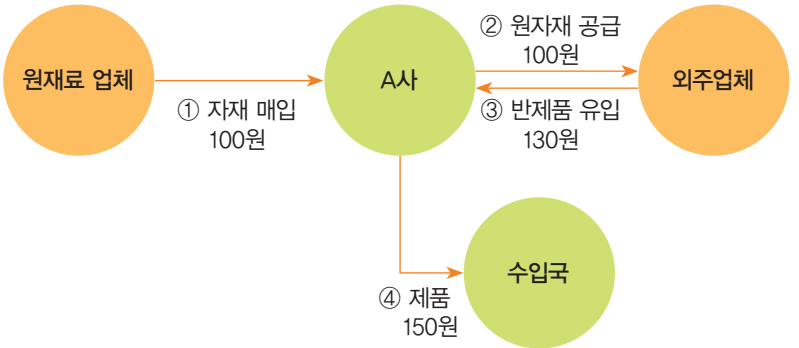
② 부가가치비율 산출시 누적기준 활용

(2) 체크포인트와 전략

① 유무상 사급거래에 대한 반제품 원산지 확인하는 방법

- 원산지가 한국산일 때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확인서 등을 작성·제공
- 원산지가 한국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자의 생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최종 생산 제품의 부가가치비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생산 정보 공개가 불가능할 때는 원산지확인서를 역외산으로 제공해야 한다.

(3) 예시



① 외주업체에게 반제품의 FTA 원산지확인서 수취

– 외주업체가 A사에게 조달받은 원재료를 제조, 가공해 생산한 반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판정해 원산지정보를 제공

– 외주업체는 생산한 반제품의 HS코드를 확인한 후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 및 판정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A사는 최종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게 됨.

㉮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인 경우

최종 생산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므로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반제품의 구입가격인 130원을 원산지 재료로 계상해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역내 가치포함비율 계산시 역내산 재료의 가치로 계상해 판정한다.

㈏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외산인 경우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외산이므로 반제품의 세번과 최종 생산제품의 세번이 변경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다.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반제품의 구입 가격인 130원을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로 계상해 원산지를 판정한다.

② 부가가치비율 산출시 누적기준 활용

– 이는 반제품의 원산지가 역외산이거나 외주업체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외주업체가 반제품생산과 관련한 재료명세서(BOM) 및 가격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 회사는 역내에 소재하는 외주업체에서 발생한 외주가공비가 30원(130원−100원)이며, 이 중 외주가공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임가공비(이윤 및 노무비) 30원 또는

㈏ 임가공비(이윤 및 노무비) 20원+외주업체의 직접구입 원재료 10원

– A사가 외주업체에게 제공한 원재료 100원을 역내산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종 생산 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시 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의 경우 100원(원자재 가치), ㈏의 경우 110원(원자재 가치 100원+외주업체의 직접구입 원재료 가치 10원)이다.

– 이 때 외주업체의 직접구입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이거나 비원산지 재료이면 ㉰의 원재료 가치를 100으로 계산해야 한다.

2. FTA 활용 성공기업 사례

1) FTA 관세절감 효과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활용

(1) 기업소개 및 활용 전 상황

'A'사는 신발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로 일본과 홍콩이 주요 수출국이고, 미국으로는 샘플수준의 소량을 수출하고 있었다. 신발의 경우 내수, 해외시장 모두 과다 경쟁상황으로 매출부진의 어려움을 격고 있었으며, 수출 역시 정체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한국산 신발의 모델,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으나 중국산 신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미국 수입자의 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FTA 활용 과정과 성과

① 한-미 FTA를 통한 관세절감효과의 확인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경우 생산 신발의 모델별로 4.3% ~ 10%의 관세가 철폐됨을 확인했다.

② 수출제품의 원산지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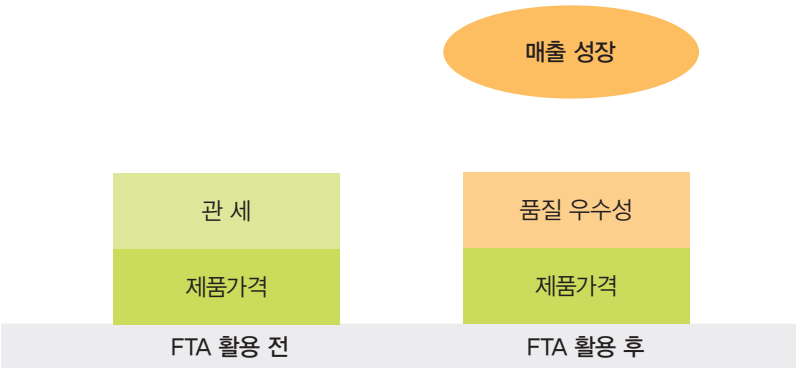
생산 신발의 FTA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입원재료 및 생산공정이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해 한-미 FTA 원

산지증명서 발급의 가능함을 확인했다.

③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미국 바이어와 협상

미국 바이어에게 한-미 FTA로 인한 관세절감 및 한국산 신발의 품질 우수성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산 신발은 한국산 신발에 비해 약 20% 정도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한-미 FTA 원산지 증명을 통해 약 10% 정도 절감되는 관세 및 물품취급수수료에 대해 강조했으며, 미국 바이어는 최종적으로 'A'사의 신발에 대해 발주를 결정했다.

'A'사는 2011년에 3억원 수준의 수출매출액이 2012년 5억원 수준으로 약 58%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미국 수출계약은 꾸준히 진행 및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향후 계획

관리적인 측면에서 미국 FTA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꾀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미 FTA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한-EU FTA를 활용하여 프랑스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2)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신규 시장을 개척

(1) 기업소개와 활용 전 상황

'B'사는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루 최대 15만 리터의 막걸리를 생산하여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5개국으로 수출하는 막걸리 제조업체다.

그러나 수출액의 9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여 시장상황 변화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거래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신시장을 개척하여 수출국의 다변화를 모색하려고 했으며, EU 수출시장의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독일의 바이어로부터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전달을 요구받았으나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아닌 관계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없어 바이어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었다.

(2) FTA 활용 과정와 성과

① 수출제품의 원산지를 확인

한-EU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통해 한-EU FTA에서 한국산 인정여부를 확인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함을 확인했다.

②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인증수출자 신청을 하여 인증을 취득했으며, 독일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전달하여 EU 현지에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향후 계획

'B'사는 2013년 수출국을 3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R&D 투자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아시아권 국가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도 준비하고 있다.

3) 전략적 협력업체 관리를 통한 원산지 증명

(1) 기업소개와 활용 전 상황

'C'사는 차량용 Door Module에 들어가는 Window Regulator를 생산하여 국내와 해외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음과 동시에 해외 법인(공장)으로부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받고 있었지만 발급을 주저하는 상황이었다.

(2) FTA 활용 과정과 성과

① BOM의 정비 및 원산지 판정

'C'사는 컨설팅을 통해 생산 BOM을 원산지 판정 BOM으로 변환했으며 원재료의 HS코드를 분류하여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다.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제품의 HS코드(제8479호)와 투입한 원재료의 HS코드가 변경되지 않아 세번변경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부가가

치기준을 검토한 결과 6.03%에 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성 원재료 내역	HS코드	소요 원재료량	원재료 단가(1EA 당, 원)	공급업체	원산지/비원산지
R**********	8479.90	1EA	**********	********	미상-비원산지
B**********	7318.15	2EA	**********	********	미상-비원산지
P**********	8483.50	4EA	**********	********	미상-비원산지
P**********	7317.00	4EA	**********	********	미상-비원산지
P**********	8479.90	1EA	**********	********	미상-비원산지
R**********	8479.90	1EA	**********	********	미상-비원산지
D**********	8483.50	1EA	**********	********	미상-비원산지
P**********	8479.90	1EA	**********	********	미상-비원산지
P**********	8479.90	1EA	**********	********	미상-비원산지
C**********	7326.20	1EA	**********	********	미상-비원산지
B**********	8479.90	2EA	**********	********	미상-비원산지
C**********	7326.20	1EA	**********	********	미상-비원산지
C**********	7326.20	1EA	**********	********	미상-비원산지
M**********	8501.10	1EA	**********	********	미상-비원산지
U**********	8479.90	1EA	**********	********	미상-비원산지
S**********	7318.15	2EA	**********	********	미상-비원산지
T**********	7318.15	3EA	**********	********	미상-비원산지

② 협력업체의 선별 및 원산지확인서 요청

투입원자재 중 원산지 재료(한국산 재료)가 전혀 없음에 그 원인을 파악하고 협력업체 중 필수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업체(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7개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선별하여 원산지 판정과 확인서 발급 교육을 시행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했다.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경우

- 세번변경기준 판정을 위해서는 제품의 HS코드와 동일한 HS코드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우선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부가가치기준 판정을 위해서는 투입 원재료비가 높은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우선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원산지증명서 발급

7개의 협력업체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받은 결과 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되었고, 원산지 재료(한국산 재료)의 비중이 그만큼 상향조정되어 부가가치기준 역시 54.2%로 충족되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물론 다른 고객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요청에도 대응을 할 수 있었다.

CHAPTER 3

FTA 판정실무편

제1장≫
FTA와 원산지의 중요성

1. FTA와 원산지

1) 원산지의 의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동식물 등이 자라거나 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한 지역을 말하는데 이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한다. FTA에서 원산지 분야는 크게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절차로 구성된다.

2) 원산지 규정과 절차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이란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협정·조약·법령 등을 말한다.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기준(Origin Criterion)에 따라 결정하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라 한다. 원산지 규정은 그 목적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완전생산기준·실질적 변형기준 등)과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한 기준 등으로 구분한다.

(2) 원산지 절차(Origin Procedures)

원산지 절차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과 발행, 증명서 발급기관,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류보관, 협정관세적용 신청, 사전심사, 원산지 검증, 불복청구, 관세협력 등을 규정한다.

3) 원산지 규정의 적용분야에 따른 구분

(1) 특혜(Preferential) 원산지 규정

각국은 국제무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양허한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수혜 대상국에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할 때 원산지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FTA 원산지 규정이 대표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이다.

(2) 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 규정

관세특혜 목적 외에 소비자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규정 등이 이에 속한다.

2. FTA와 원산지의 중요성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어떤 물품이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최근 세계화 추세 속에서 R&D, 원재료 조달·생산·판매가 글로벌 차원에서 분화되어 한 가지 물품을

생산하는 데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되는게 일반적이다. 이에 원산지 결정이 점점 복잡하며 어려워져 국제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FTA에서 원산지를 규정하는 목적은 특혜관세 대우자격 확인, 역외국의 우회수입(무임승차) 방지, 역내 회원국 간 교역확대, 외국인 투자유치(FDI) 때문이다. 이를 위해 많은 국가들은 FTA에서 엄격하며 까다로운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물품의 시장접근과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 수단으로 이용한다.

제2장 ≫
FTA 원산지 판정실무

1.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요

원산지 판정이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FTA에서 원산지의 판정은 물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볼 것인지,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협상에서 특정 품목의 상대적인 경쟁 우위와 열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 FTA마다 품목마다 다르다. 그러나 FTA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은 대부분 같고, 핵심 메커니즘은 어떤 품목이 상대국에서 특혜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구분하며,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 협정 체계상 '원산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총칙)	기본 원칙	완전생산품		
		불완전생산품 : 역내가공원칙+충분가공원칙		
		운송요건		
	보충 기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예비품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각칙)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	

지 규정'의 본문으로 규정하며, 품목별기준은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각칙으로 '별표'로 규정한다.

보충기준에 해당하는 분야별 특례규정에는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규정, 대체가능 물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이 있는데 이는 품목별기준을 보완·완화하는 것이다. 원산지 판정은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모두 충족('동시충족')시켜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3.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1) 완전생산기준

(1) 개념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Produced Criterion)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생산과정을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경

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업제품 등 1차산품에 적용한다.

(2) 완전생산기준의 완화

이론적인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려면 다른 국가의 재료를 투입하거나 공정을 추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생산거점이 해외에 있는 현재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경우 비원산지의 원재료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완전생산기준 충족을 통한 FTA 특혜를 제한하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체약 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나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유형	내 용
1국 완전생산품	·1개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품 예)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종자를 파종해 역내에서 재배·수확한 쌀
역내 완전생산품	·2개 이상의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완전생산기준 자체나 누적기준(Accumulation)에 의하여 폭넓게 인정하나 일부 협정은 일반기준이나 품목별기준으로 누적을 제한함
완전생산 간주물품	·역외에서 생산하거나 역내산 재료나 원산지 불명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함 예) 역내 선박으로 공해에서 채취한 수산물·고물·부산물 등

2) 역내가공원칙

(1) 개념

역내가공원칙은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을 역내에서 수행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칙이다.

이는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에 형성된 해외 생산기지를 FTA 체결국으로 이전하여 역내 생산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2) 역내가공원칙의 완화

기업은 생산라인의 다변화를 통한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한 무역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FTA 특혜 부여를 위한 요건으로 역내가공원칙만을 적용한다면 법과 실무에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에 원활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역외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 역외가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에 따라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 특례가 적용된다.

3) 충분가공원칙

역내에서 해당 물품이 단순·경미한 공정만 거친 경우, 다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공정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이 아닌 경우 원산지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FTA 협정에서는 충분히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지 않는 공정을 '불인정공정(Insufficient working or processing operations, non-qualifying operation)'으로 규정한다.

세번이 변경되나 단순·경미한 공정에 해당하는 사례

투입원료	생산공정	생산제품
멸치(0301)	건조	마른멸치(0305)
쌀(1006)	제분	쌀가루(1102)
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
석회석(2521)	분쇄·열처리	시멘트(2523)
페니실린(3303)	포장	소매용 페니실린(3004)
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
안경테(9003) 안경렌즈(9001)	조립	안경(9004)

참고 : 정인교 외, 우리나라 FTA 원산지 규정(ROO) 연구와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대부분의 FTA는 불인정공정을 일반기준으로 규정하나 한-미 FTA는 품목별기준에서 규정한다.



캐나다 소를 미국에서 수입해 도축한 후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의 원산지 문제

다른 FTA 협정에서는 '도축'을 불인정공정으로 규정하나 한-미 FTA에서는 닭고기(완전생산기준을 적용)를 제외한 육류는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도축국 기준)한다. 다만 소고기는 도축국 기준을 적용해도 위생·검역 조건에 의해 캐나다산 생우를 미국에서 도축한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고, 멕시코산 생우는 미국 내에서 100일 이상 사육 후 도축해야 수입할 수 있다.

참고 : 수출입 기업 실무자를 위한 한-미 FTA 활용 매뉴얼북, 서울본부세관, 2011

(4) 직접운송원칙

(1) 개념

당해 물품을 수출국 내에서 선적해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역내국 간에 직접운송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해 수출입하는 경우 추가 공정 등에 의한 원산지 둔갑 및 역외산 물품의 우회 수출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고 함이며, 동시에 체약국 간 물품이 직접 운송되는 경우 역내 운송업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마련한 규정이다.

(2) 직접운송원칙의 완화

지리상의 이유로 복합운송 형태로 운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운송상의 이유로 환적이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각 FTA 협정별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한다. 제3국을 거쳐 수입할 때는 해당 경위를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는 물품이 출항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협의로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와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이나 일시장치되었음을 해당 국가의 세관이나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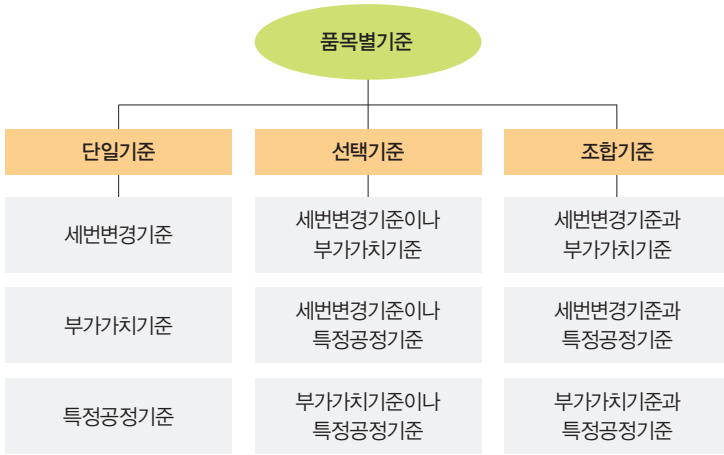
(1) 개 요

물품을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제조한 경우 당해 물품의 본질

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실질적 변형이란 물품의 생산·제조·가공시 투입한 원재료와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생산기준은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2개국 이상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을 수행한 최종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인정한다.

글로벌 기업에 의한 생산방식의 다양화로 완전생산기준의 적용은 제한적이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제조품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의 단일기준이나 이들의 선택기준이나 조합기준으로 구성된다.



2) 세번변경기준

(1) 개념

세번변경기준은 당해 물품(완제품)의 HS코드와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원재료)의 HS코드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불인정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한 경우에는 세번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물품이 된다.

즉,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완제품과 투입된 원재료의 세번변경 여부의 검토 대상은 비원산지 재료만이며, 원산지 재료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산지 재료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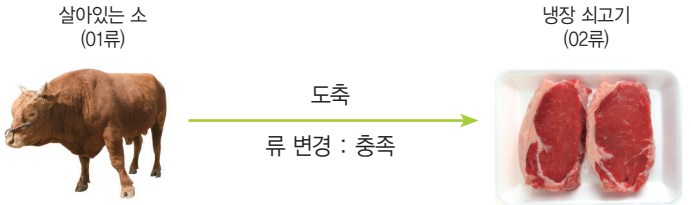
② 세번변경기준의 유형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 Change of Chap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 Change of Tariff Sub Heading)을 주로 사용한다.

세번변경기준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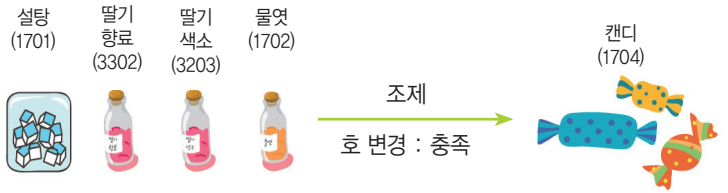
■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201호~제0210호(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0105호 닭을 제외한다)에서 제0201호 내지 021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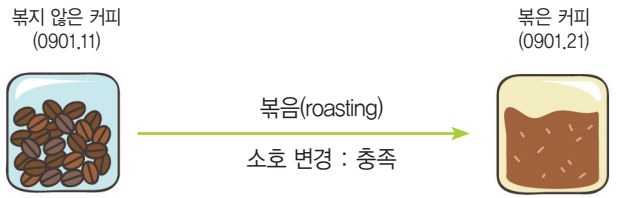
■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704호(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901.21호(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외형 세번변경기준

제7326.90(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제7325호의 것은 제외한다)로 생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되 구성 원재료 중 제7325호로 분류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동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이어야 한다. 비원산지 재료일 때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더라도 '역외산'으로 판정한다.

3) 부가가치기준

(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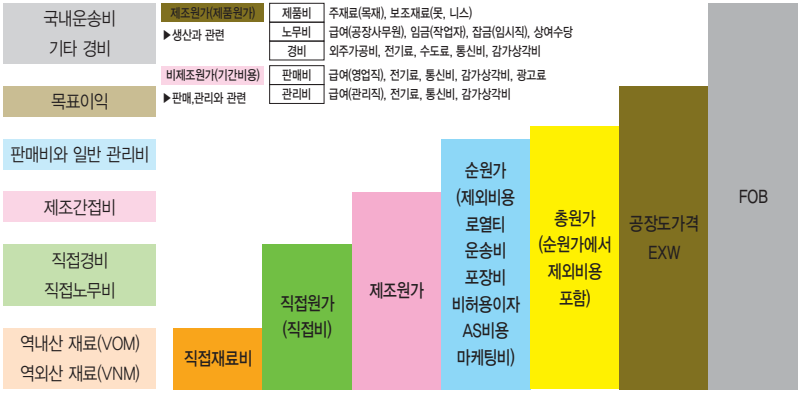
부가가치기준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 과정을 통해 협약국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2) 부가가치기준 산출방식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 RC법(Regional Contents)과 역외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는 MC(iMport Contents)로 구분하고, RC법은 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으로 구분한다.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려면 상품의 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상품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한-EFTA FTA, 한-EU FTA, 한-터키 FTA는 공장도가격(EX-works)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FTA는 FOB 가격(또는 FOB 수준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가격의 구성요소



·RVC(역내 부가가치) : 국내에서 생산활동 등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
·순원가 : 총원가−제외비용(로열티, 마케팅비 등)
·EXW(공장도 가격) : 총원가+목표이익
·FOB(본선인도가격) : EXW+국내 운송비+기타 경비(보험료 등)

㉠ 직접재료비(Direct Material Cost)
·재료원가 중 특정 제품에 소비되어 그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하며, 특정 제품에 대하여 그 소비액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료비
·역외산 재료(VNM :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 각 협정에 의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모든 재료
·역내산 재료(VOM :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각 협정에 의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입증서류를 구비한 재료

㉡ 직접노무비(Direct Labor Cost)
·특정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한 노무비 중 직접 추적이 가능한 원가
·예시 : 제품의 생산이나 조립에 직접 참여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 직접경비(Direct Expenses)
·특정 제품에 직접 투입한 비용 중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예시 : 해당 제품의 설계비, 특허사용료

㉣ 직접원가(Direct Cost)
·제품생산에 직접 들어가 추적이 가능한 원가
·직접경비=직접재료비(역내산 및 역외산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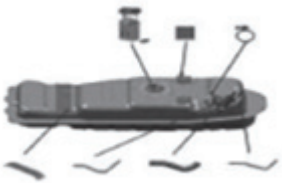
㉤ 제조간접비(Indirect Manufacturing Cost or Factory Overhead Cost)
·다양한 제품에 공통으로 투입한 원가 중 추적이 불가능한 원가
·간접재료비 : 기계·설비의 수선용 재료, 기계윤활유 등
·간접노무비 : 재료 취급자, 공장 수위 등의 임금
·간접경비 : 가스, 수도료, 전기료, 공장전체의 감가상각비 등

㉥ 제조원가(Manufacturing Cost)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비에 포함되므로 제품원가라고도 함
·제조원가=직접원가(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제조간접비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Sales,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
·제조분야가 아닌 사무나 영업분야와 관련된 모든 인건비와 물건비로, 판매비는 영업사원의 급여·전기·통신비·감가상각비·광고료 등을 말하고, 일반관리비는 관리사원의 급여·전기·통신비와 감가상각비 등을 말함
·제조시점에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원가

부가가치 비율 산출의 예

자동차용 FUEL TANK ASSY



구분	품명	원산지	단가(원)
투입 원재료	FUEL TANK	한국	2,000
	F/PUMP	한국	4,000
	Baffle	한국	2,000
	F/valve	독일	2,000
	소 계		10,000
완성품 EXW 가격			12,000
내륙 운송비 등			1,000
완성품 FOB 가격			13,000

■ 집적법(Build-up Method)

$$\text{부가가치 비율(BU)} = \frac{\text{원산지 재료비(8,000)}}{\text{상품가격(13,000)}} \times 100 = 61.54\%$$

■ 공제법(Build-down Method)

$$\text{부가가치 비율(BD)} = \frac{\text{상품가격(13,000)} - \text{비원산지 재료비(2,000)}}{\text{상품가격(13,000)}} \times 100 = 84.62\%$$

■ MC법(iMport Contents)

$$\text{부가가치 비율(MC)} = \frac{\text{비원산지 재료비(2,000)}}{\text{상품가격(12,000)}} \times 100 = 16.67\%$$

⑷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이란 주요 제품에 대해 특정한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FTA에서 원산지 상품의 실질적인 변형 여부는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이나 부가가치기준으로 판정한다. 어류, 식물성 생산품, 석유·화학·섬유 제품 등 제품의 생산·제조·가공 공정이 특수하거나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가공공정을 원산지기준으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가공공정기준은 독자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세번변경기준 이나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규정된다.



가공공정기준 예시

제5007호(한-아세안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5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적어도 두 공정 이상의 예비나 마감 공정을 수반하여 날염이나 염색된 것 또는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제6115호~제6117호(한-EFTA FTA)

제6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이나 봉제 또는 기타 조립해야 함.

5. 분야별 특례

1) 누적기준

원산지를 결정할 때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누적(accumulation)이라 한다. 즉, 제품생산에 투입된 상대국의 상품이나 재료를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역내산 원부자재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산 원재료와 미국산 원재료로 완제품을 생산한 후 그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면 누적기준에 따라 미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마찬가지로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어 수출제품은 한국산이 된다.

(1) 누적의 유형

재료누적 —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상품 생산국 재료로 간주하는 것으로 모든 FTA에서 허용하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공정누적 —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와의 FTA에서는 인정하나, 원칙적으로 아세안·EFTA·EU FTA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누적적용의 예

거래관계

한국 A업체가 미국 B업체에서 에어백용 Inflator를 수입하고, cover·plate·cushion 등은 국내산을 조달하여 자동차용 에어백을 생산한 후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물품 구성과 가격

제품 : 에어백(제8708.95호)
판매가격 : 56,000원(FOB 기준)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제8708.95호)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708.10호 내지 제8708.9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①직접법 35% 이상 또는 ②공제법 55% 이상 또는 ③순원가법 35% 이상.

재료내역

품명	품목번호(HS코드)	단가(원)	원산지
Cover	3926	3,000	한국
Cushion	8708.95	8,000	한국
Plate	7326	2,000	한국
Horn	8306	4,000	한국
Inflater	8708.95	31,000	미국
합 계		48,000	-

검토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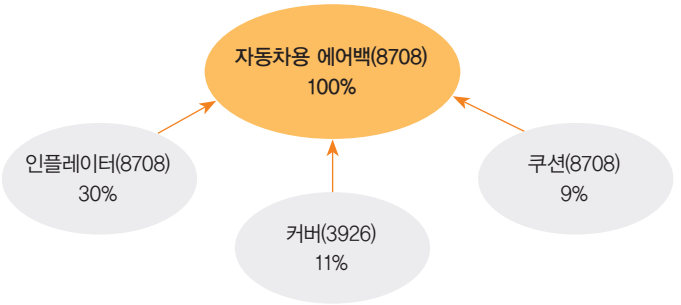
누적기준 비적용시 : 미국산 재료 Inflater의 세번은 완성품과 같으므로 세번변경기준에 충족되지 않고, 한국산 재료비 17,000원은 FOB 가격의 30%이므로 부가가치 요건 35%(집적법 적용)에 미달한다.

누적기준 적용시 : 미국산 재료 Inflater는 국산으로 간주하므로 원산지 재료로만 역내에서 생산한 상품으로 인정한다. 집적법 적용시 부가가치 비율은 85.7%로 부가가치기준 역시 충족된다.

2) 최소기준(미소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세번변경이 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세번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최소(미소)기준이라 하며, De minimis, tolerance rule이라고도 한다. 최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에 한하여 적용한다.

최소기준의 예



국산 인플레이터와 중국산 커버와 쿠션으로 자동차용 에어백을 만드는 경우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라면 쿠션 가격이 에어백 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번 변경되지 않았어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3) 중간재

중간재란 제품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며, 부가가치 품목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간재의 예



역외산 재료(연료펌프)와 역내산 재료(흡기밸브)로 엔진을 생산하는 경우로, 엔진(중간재)이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면 엔진의 가격 전체($450)를 역내산 재료비로 취급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는 중간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우리나라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인정하여 중간재 규정을 사용할 있다. 그러나 한-인도 CEPA에서는 협정과 국내법에서 중간재 규정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4)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

대체가능 상품과 재료(Identical and interchangeable materials)란 동종·동질의 원류나 곡물 등과 같이 종류와 상업적인 가치가 같은 재료로, 기술적·물리적인 특성이 같고, 일단 최종재에 결합되면 어떤 표지에 의해서도 구별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은 물리적·회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재고관리기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재고관리기법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평균법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은 평균법이다. 생산자가 어느 한 가지 기법을 선택하면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계속 그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개별법 : 물품의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선입선출법 :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후입선출법 :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평균법 :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 비율 계산은 보관(기초재고를 포함한다) 또는 취득한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취득 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한다.

(5) 간접재료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란 상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되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지는 않는 재료 또는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건물의 유지나 설비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중립재(Neutral Elements)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를 결정할 때 간접재료는 재료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세번변경기준 적용에서는 그것이 비원산지 물품이라도 세번변경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제조간접비에 포함시킨다.

간접재료는 생산에 사용하는 촉매·연료·공구, 검사용 설비와 소모품 등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협정은 물리적인 결합 여부에 따라 직접재료와 간접재료를 구분하나, 기업회계에서는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고가품은 직접재료로 처리하고, 저가품은 간접재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FTA와 기업회계에서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간접재료의 예

- 생산용 재료 : 에너지, 연료, 촉매, 주형, 공구, 윤활제 등
- 시험·검사용 재료 : 상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하는 설비·장치·보급품 등
- 건물·설비용 재료 : 설비와 건물 유지에 사용하는 예비부품과 재료 등
- 상품에 결합하지는 않았으나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일부로 사용했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외의 상품

6)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부속품·예비부품·공구(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는 통상적으로 본체의 기능이나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부품을 말한다. 기계·기구·장치·차량 등과 함께 수입하는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가 본체인 기계 등과 별도로 송품장을 발행하지 않고, 그 가격이나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한다. 본체인 기계 등의 원산지 결정에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의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고, 기계 등의 원산지 결정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본체인 기계 등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한다.

부속품 등의 예

- 부속품 : 전자제품 코드, 덮개, 매뉴얼
- 예비부품 : 에어컨 먼지 수집기, 예비타이어
- 공구 : 차량용 잭, 자전거 도구 세트

7) 소매용·수송용 포장과 용기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그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악기 케이스나 면도기 케이스와 같이 본체를 구성하지 않는 소매용 포장과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품목분류 되는 경우 세번변경기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는 원산지나 비원산지 재료비에 계상한다. 추가하여 컨테이너 같은 운송용 포장과 용기는 원산지 판정기준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할 때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8) 세트물품

세트물품(Sets)이란 기능과 성질이 다른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합한 것을 말한다. 세트물품의 원산지 결정은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따져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트 구성품 중에서 비원산지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예외로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한다.

세트물품의 예

·이발용 세트(제8510호) : 전기식 헤어크리퍼(8510), 빗(9615), 가위(8213), 브러쉬(9603), 직물제 타올(6302), 가죽제 케이스(4202)

·제도용 킷트(제9017호) : 자(9017), 계산판(9017), 제도용 콤파스(9017), 연필(9609), 연필깍기(8214), 인조플라스틱제 케이스(4202)

제3장≫
산업별 원산지 판정 사례

1. 식품의 FTA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판정 물품—초코볼

① HS코드 : 제1806.90호

② 판매가격(FOB) : 2,000원

③ 원산지 판정 대상 FTA : 한-아세안 FTA

④ 원산지 결정기준 :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역내 부가가치가 40% 이상 발생된 것

⑤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 : ㉠초코볼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4단위 이상이 변경된 경우 또는 ㉡40%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된 경우 역내산으로 판정한다.

2)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검토

품명(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가격(원)
Choco chip	1806.20	미상	180.5
Sugar	1701.99	미상	12
Corn Syrup	1702.90	미상	0.6
Cacao Color H-8595	2106.90	미상	0.5
A	2106.90	미상	1.2
B	2106.90	미상	2.6
C	2106.90	미상	1.8

3) 원산지 판정 결과

초코볼 생산에 들어간 원산지 미상의 HS코드와 초코볼의 HS코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원산지 재료인 'Choco chip'의 HS코드 4단위(제1806호)와 완제품의 HS코드 4단위(제1806호)가 같아 세번변경기준만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세번변경기준의 특례규정인 최소기준(미소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때 세번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이 당해 물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때 세번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의 경우 FOB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한다.

$$\frac{\text{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 가격(180.5원)}}{\text{초코볼 가격(2,000원)}} \times 100 = 9.03\%$$

2. 섬유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 섬유제품의 제조공정과 품목 분류체계

섬유·실·직물·의류제품은 최초 투입 원료인 섬유(fiber)로 방직공정(spin)을 거쳐 실(yarn)을 만든다. 실은 제직(weave) 과 편직(knit) 공정을 거쳐 직물(fabric)이 되고, 각 용도에 맞는 크기로 재단(cut)과 봉제(sew)를 하면 최종 제품인 의류가 된다.



류(chapter)	섬유제품의 가공공정별 세번변경 구조				
	섬유원료	원사	직물	의류	기타 섬유제품
제50류 실크	5001~5003	5004~5006	5007	-	-
제51류 울	5101~5105	5106~5110	5111~5113	-	-
제52류 면	5201~5203	5204~5207	5208~5212	-	-
제53류 마·아마·황마	5301~5305	5306~5308	5309~5311	-	-
제54류 필라멘트 섬유	-	5401~5406	5407~5408	-	-
제55류 스테이플 섬유	5501–5507	5508~5511	5512~5516	-	-
제56류 펠트·부직포	-	-	5602~5603	-	-
제58류 특수직물	-	-	5801~5802	-	-
제59류 침투·도포 직물	-	-	5901~5907	-	-
제60류 편물	-	-	6001~6006	-	-
제61류 편물 의류	-	-	-	6101~6117	-
제62류 비편물 의류	-	-	-	6201~6217	-
제63류 섬유제품	-	-	-	-	6301~6310

섬유와 의류제품은 다른 품목보다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Forward Rule은 섬유와 의류제품의 HS 분류체계상 섬유·실·직물에 이르기까지 생산공정별로 세번변경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생산공정에 별도의 원산지기준인 Forward Rule을 규정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이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2) Forward Rule의 구성

원사기준	·직물·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가는 기초 원재료인 원사부터 완제품인 의류를 역내에서 생산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함. ·원사의 원산지가 역내산이어야 하며, 이후의 모든 생산공정(방적·제직·편직·재단·봉제)도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직물기준	·직물 원산지는 역내산이어야 하며, 이후의 모든 생산공정(제직·편직·재단·봉제·염색 등)도 역내에서 해야 함.
재단·봉제 기준	·의류의 재단·봉제 공정은 역내국에서 해야 함.

원사기준은 직물기준에 비하여 역내에서 발생해야 하는 공정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예

한-미 FTA 제6001호 내지 6006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001호 내지 제60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류,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제5501호 내지 제5503.20호, 제5503.40호 내지 제5503.90호, 제5505호 내지 제5516호의 변경은 제외).

위의 규정 중에서 괄호 안에 예외로 규정한 물품은 역내산(한국산·미국산)이어야 하고, 해당 괄호 안의 물품을 비원산지 원재료로 사용할 때는 최소기준의 허용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 기계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판정 물품—CCTV

① HS코드 : 제8525.80호

② 판매가격(FOB) : 16,000 원

③ 원산지 판정 대상 FTA : 한-인도 CEPA

④ 원산지 결정기준 : ㉠역내 부가가치 포함 비율이 FOB 가격의 35% 이상 그리고 ㉡HS코드 6단위에서 세번변경이 일어난 상품

⑤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 : ㉠CCTV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6단위가 변경되고 ㉡부가가치기준 35% 이상이 되는 경우 역내산으로 판정한다.

2)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검토

구분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가격(원)
원재료비	CMOS	8529.90	역외산	3,500
	렌즈	9002.11	역내산	3,000
	CCD	8541.40	역내산	2,500
	ISP	8542.31	역외산	4,000
합 계				13,000
직접노무비 및 직접경비				1,000
제조간접비				1,000
판매관리비/이윤				500
기타비용/국내운송비				500
FOB 상품가격				16,000

3) 원산지 판정 결과

(1) 세번변경기준 검토

사용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CMOS 모듈, ISP)의 세번이 완제품(CCTV)의 세번(제8525.80호)과 6단위가 다르므로 6단위 세번변경 요건이충족되었다.

(2) 부가가치기준 검토

공제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하는데 53%로 계산되었으므로 부가가치 요건이 충족되었다.

$$\frac{\text{상품가격(16,000원)} - \text{비원산지 재료비(7,500원)}}{\text{상품가격(16,000원)}} \times 100 = 53.13\%$$

(3) 원산지 판정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모두 충족되어 한국산 물품으로 판정한다.

4. 자동차부품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판정 물품-자동차용 엔진

① HS코드 : 제8407.34호

② 총원가 : 142,000원

③ 원산지 판정 대상 FTA : 한-미 FTA

④ 원산지 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8407.10호 내지

제8407.3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한 것 또는 ㉡직접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55% 이상 또는 순원가법 3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⑤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 : ㉠자동차 엔진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4단위가 변경되거나, ㉡기준으로 제시한 부가가치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정한다.

2)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검토

구분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가격(원)
재료비	실린더 라이너	8409.91	일본	12,000
	흡배기밸브	8409 또는 8481	독일	20,000
	가스켓	8484.10	독일	8,000
	실린더 블록	8409.91	미국	30,000
	피스톤	8409.91	독일	10,000
	기타의 부품	–	한국	10,000
	소 계			90,000
직접노무비·직접경비				12,000
기간비용				20,000
공제비용(마케팅비·판매촉진비·로열티 등)				20,000
총원가				142,000

3) 원산지 판정 결과

(1) 세번변경기준 검토

사용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실린더 라이너·흡배기밸브·가스켓·피스톤)의 세번이 완제품(자동차 엔진)의 세번(제8407.34호)과 4단위가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 요건이 충족되었다.

(2) 부가가치기준 검토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에 따라 부가가치를 계산하고(선택 적용), 예시로 순원가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한 결과 규정한 35% 기준이 충족었다.

제품비	102,000원	**제품비 상세 내역** 원산지 재료비 40,000원 비원산지 재료비 50,000원 직접노무비·직접경비 12,000원
기간비용	20,000원	
제외비용	20,000원	

순원가 = 총비용(142,000원)−제외비용(20,000원) = 122,000원

$$\frac{\text{순원가(122,000원)}-\text{비원산지 재료 가격(50,000원)}}{\text{순원가(122,000원)}} \times 100 = 59.02\%$$

(3) 원산지 판정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순원가법)이 모두 충족되어 한국산 물품으로 판정한다.

5. 화학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 원산지 판정 물품−PET

① HS코드 : 제3907.60호

② 원산지 판정 대상 FTA : 한-미 FTA

③ 원산지 결정기준 : 다른 4단위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수지(폴리머)가 중량으로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④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설명 : ㉠PET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 4단위 변경 다만, ㉡구성하는 수지(폴리머) 중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수지(폴리머)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한국산으로 판정한다.

2)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검토

품명(재료명)	세번부호	원산지
테레프탈산디메틸	2917.37	역외산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2905.31	역외산

3) 원산지 판정 결과

사용한 원재료 중 비원산지 재료(테레프탈산디메틸·에틸렌글리콜)의 세번이 완제품(PET)의 세번(제3907호)과 4단위가 다르므로 세번변경기준 요건은 충족되었다. 그리고 원산지 수지(폴리머)에 대한 함량 부분을 최종 체크하여 판정하면 된다.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

美 "FTA 원산지 증명하라"…위반 의심 수출기업 60곳에 통보

협력中企 수천곳 '자료 준비' 비상
검증 서류·절차 매우 복잡…일손 없고 잘 몰라 '허둥'
관세 토해내고 과태료 물수도

미국 관세청이 국내 60여개 수출 대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을 요구했다. 미국과 맺은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완제품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도 일정 비율 이상 한국에서 생산(원산지 규정)해야 하는데, 국내 기업이 이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미국 정부가 파악에 나선 것이다.

미국 관세청은 원산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이 가는 기업에 사전질의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 미국 간 대규모 관세 분쟁이 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와 무역업계, 관세사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 60여곳이 최근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질의서(form 28)'를 받았다. 김영환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단장(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은 "미국 세관의 질의는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긴 힘들지만 6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에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납품하는 수천곳의 중소기업이 대응 자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2, 3차 협력업체 가운데는 FTA 원산지 규정과 사후검증 절차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원산지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곳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미국은 원산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 직원을 직접 파견, 해당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원산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관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3.6.26, http://www.hankyung.com]

FTA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국 관세당국(세관)에서는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많은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제1장≫
FTA 원산지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1.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의 개요

1) 의 의

원산지 검증이란 FTA 협정을 이용하여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 협정 또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제재조치를 통하여 협정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 협정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출입 및 원산지조작을 통한 관세탈루의 방지 및 FTA 협정의 효율적 이행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

목 적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 관세 탈루 방지
유 형	FTA특혜	FTA 특혜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일반 특혜 등	APTA 등 3개 협정 및 최빈국 특혜요건충족 여부, 남북교역 물품에 대한 관세 특혜 심사 등

2) 원산지 검증의 특성

원산지 검증의 가장 큰 특성은 입증책임이 검증을 받는 대상 업체에 있다는 점이다. 특혜 관세 적용이 적정했는가에 대해서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수입자를 포함한 수출자, 생산자가 그 적정성에 대해서 세관(관세당국)의 요청에 적절히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과거 세관심사 및 조사시 세관 측에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였던 것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WTO 무역	FTA 무역
조사진행시 입증책임	세관(관세당국) →	검증 대상 업체 (수입자·수출자·생산자)
입증자료 미제시	추징 곤란 →	특혜관세 배제

3) 원산지 검증의 조사 대상자

원산지 검증 조사 대상자는 FTA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며, 조사는 세관에서 한다.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모든 관련자이므로 관련 거래 자료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① 수입자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③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④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

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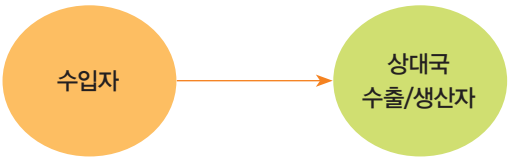
⑤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4) 원산지 검증(조사)의 기본원칙

① 원산지 검증은 해당 업체에서 수출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대상이 된다(수리 후 원산지 조사 원칙) 즉, 수출신고 전이나, 협정관세 적용 전에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서면조사가 원칙이다. 즉 생산공장이나 현지 수출입업자를 조사하는 것은 서면으로 조사한 이후에 서면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한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협정에 따라 다름)

③ 해당 거래에서 FTA 협정을 적용한 수입자가 우선 조사를 받게 된다(수입자 우선 조사 원칙)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직접검증과 간접검증

원산지 사후검증(조사)은 검증의 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된다. 직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 세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검증요청을 보내는 것을 말하고,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국의 세관당국을 통해서 수출자 및 생산자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협정	간접검증	직접검증	회신기한*
한–칠레, 한–싱가포르	–	서면질의, 정보요청, 방문조사	–
한–아세안 (순차적용)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방문조사	2개월
한–인도 (순차적용)	수출국 발급기관에 검증의뢰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3개월
한–EU, EFTA, 터키	수출국 세관에 검증의뢰, 검증과정 참관	–	10개월
한–페루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추가정보 서면요청	권한 있는 당국의 공무원이 동행하는 방문조사	150일
한–미	간접검증(섬유제품에 한함)	정보요청, 서면질의, 방문조사(섬유 외 제품)	섬유 (6개월)

*회신기한은 수출국 검증기관이 수입국 검증요청기관에 회신해야 할 기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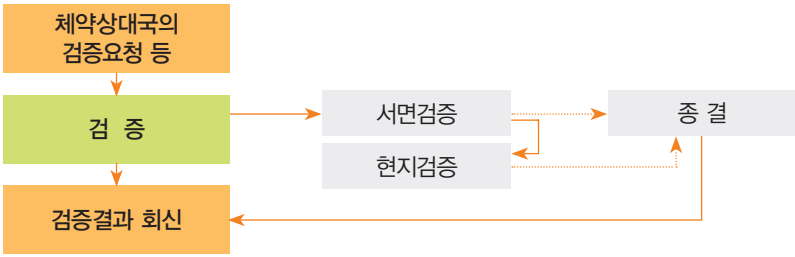
2.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과 절차

1)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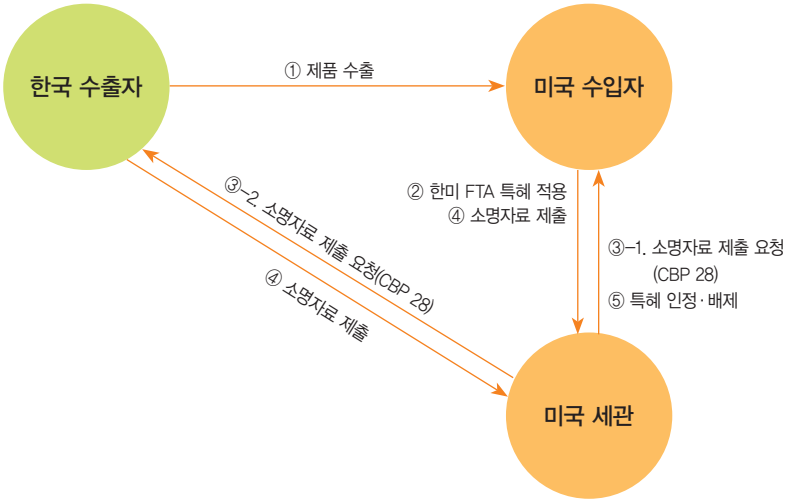
수출기업이 물품을 FTA 체약국에 수출하고, 해당 국가의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 협정이 직접검증이면 협정상대국 세관에서 직접검증통지를 받고(한-미 FTA), 간접검증이면 우리나라 세관에서 검증통지를 받는다(한-EU FTA).

-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경우
- 수출품의 원산지 허위신고 등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정보제공이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로,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세관장이 수출품의 원산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승인받은 경우

2) 검증(조사) 절차



3) 수출품에 대한 '한-미 FTA 협정'의 직접 검증



(1) 개 요

한-미 FTA 검증은 직접검증 방식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만 제한적인 간접검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수입하는 상품이 특혜관세 신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검증의 방법은 (a)서면에 의한 정보 요청 (b)서면질의 (c)

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그 대상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 한다.

(2)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한 서면검증

서면검증은 우리나라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세액 심사와 같은 성격으로 일반적인 FTA 검증은 사후세액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미국 세관에서는 검증도 사후세액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수입통관지 관할세관에서 수행한다.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에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심사와 결정을 한다. 미국 세관에서 수입자를 대상으로 CBP Form 28을 활용하여 원산지 입증을 위한 정보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미 FTA 서면검증이 시작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의 주요 내용

미국 세관의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결정, 특혜관세 원산지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들에 대한 정보다.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ate of Request : 정보요청일이다.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5. Entry No., 5b. Invoice No. : 소명을 요청한 물품 확인 정보다.

6. HTSUS Item No.: 수입자가 미국 통관신고 당시 사용한 HS코드 번호다.

9. TO : 정보제공요청서의 수신자다. 보통 관세 납부의무자인 수입자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 검증대상 물품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다.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 서류 제출 요청이다.

A. 검증 대상 물품에 대한 계약 관련 서류
B. 검증 대상 물품에 대한 물품설명 자료
C. 검증 대상 물품에 대한 재료 내역 관련 자료
D. 검증 대상 물품에 대한 샘플(견본품) 제출 등
E. 14번 항목 참조 : 기타 별도로 요청하는 소명자료

14. CBP Officer Message: UKFTA(Korea-US) FTA(한-미 FTA), Verificatio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등의 문구가 등장할 경우 한-미 FTA검증을 위한 정보요청서다. 이하 원산지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출을 요구한다.

●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양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

		1. Date of Request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6. HTSUS Item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 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 (1) packing ☐ (2) commissions ☐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4) assists ☐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I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4) 소명자료 작성과 제출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한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이 정보제공 요청일부터 30일 밖에 안 되고, 요청서류의 종류가 광범위하며 많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수입자에게 먼저 정보요청서를 통지하고, 수입자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 수출자가 사후검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요청일부터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인 것이 보통이다. 이로 인해 원산지 증빙자료를 구비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이 원산지 검증과 관련된 문서라면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CBP Form 28(정보제공요청서) 하단에 기재된 미국 세관의 담당자 정보(성명·부서·연락처)를 통하여 원가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소명자료를 미국 세관당국(CBP)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

(5) 검증결과 통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미국 세관은 수입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이상이 없으면 유선이나 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결과 통지서인 CBP Form 29의 'Notice of Action로 통보한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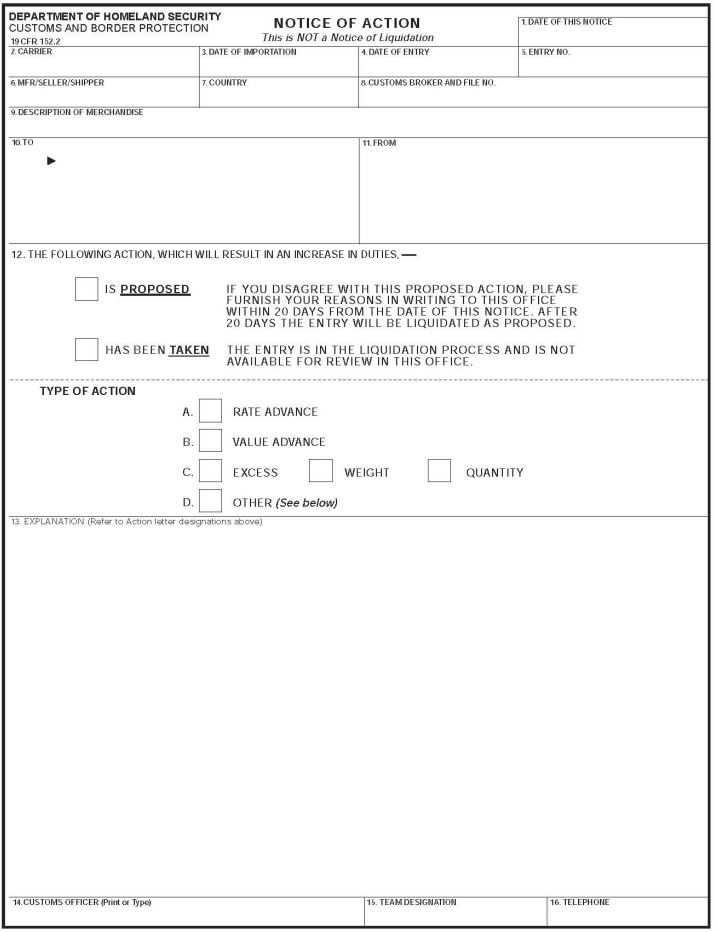
① 예비결정(PROPOSED)

예비결정인 경우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검증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즉, 심사결과 특혜관세 적용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20일 이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면 예비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최종 결정이 된다.

② 최종 결정(TAKEN)

최종 결정은 그 자체로 확정성이 있다. 통지된 결정 내용에 따라 세액 추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만약 불복하려면 우선 정산(Liquidation : 세액의 정산과 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구제 요청을 하거나 소송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CBP Form 29(결과통지서) 양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9 CFR 152.2

NOTICE OF ACTION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1. DATE OF THIS NOTICE
2. CARRIE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5. ENTRY NO.
6. MFR/SELLER/SHIPPER
7. COUNTRY
8. CUSTOMS BROKER AND FILE NO.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10. TO ▶
11. FROM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IES, —

☐ IS **PROPOSED** —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2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 HAS BEEN **TAKEN** —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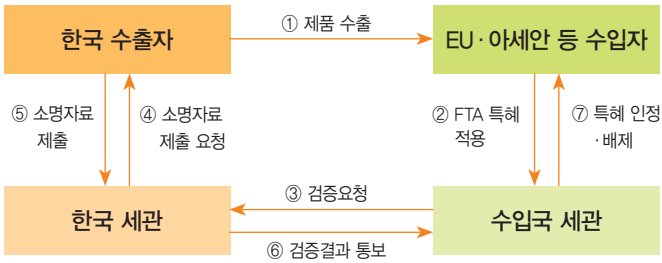
A. ☐ RATE ADVANCE
B. ☐ VALUE ADVANCE
C. ☐ EXCESS ☐ WEIGHT ☐ QUANTITY
D. ☐ OTHER *(See below)*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14. CUSTOMS OFFICER (Print or Type) | 15. TEAM DESIGNATION | 16. TELEP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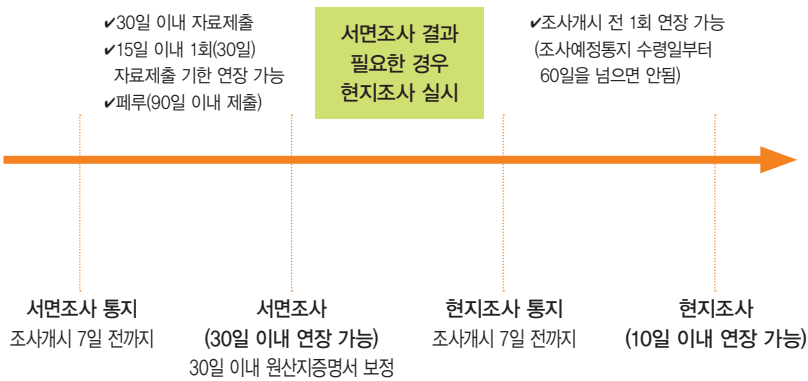
CBP FORM 29

4) 수출품에 대한 한-EU, 한-아세안 FTA 협정 등의 간접검증



한-EU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이 한-미 FTA와 대표적으로 다른 점은 간접검증 방식이라는 점이다. 간접검증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의 세관(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조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세관(관세당국)의 한국 내 수출자 등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면조사

① 서면조사 통지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 등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조사통지서를 받게 된다.

1. 조사 대상자와 서면조사 기간
2. 조사 대상 수출입품
3. 조사 이유
4. 조사할 내용
5. 조사의 법적 근거
6. 제출서류와 제출기한
7. 조사기관과 조사자의 직위와 성명
8. 그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 서면조사통지서 외에 세관에서는 해당 수출기업에게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질문서나 원산지소명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 세관에서는 원산지 검증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질문 내용을 구체화하여 세관 및 기업 모두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려고 표준서면질의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한-미 FTA 검증에만 활용하나 2014년부터는 모든 FTA에 대한 검증시 표준 서면질의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검증 표준 질의서는 수출자·생산자용과 수입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에서는 수출자·생산자용의 일부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 서면조사통지서 양식

서면조사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 질문서 별첨		
제출요구자료		제출기한	
담당공무원 직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요구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서면질의서 양식(수출자·생산자용 중 일부)

【붙임2】 수출자·생산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생산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한-칠레 FTA는 제외).

부문Ⅰ ▶ 거래자 정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아래 해당하는 유형의 □에 ✔표시 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자 유형	유형별 설명
□ 수출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한 자
□ 수출자/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수출한 자이면서 생산한 자
□ 물품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생산한 자
□ 원재료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생산한 자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 업무인력	□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 (성명) ☎ □ 자체 직원 활용 (성명) ☎ 원산지 업무 경력( )년				
	기타 원산지 관리 조직 및 인력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관리체제	원산지 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요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 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검증대상 물품관련 주요 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 장소

원산지관리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이메일)

부문II ▶ 일반사항(수출신고 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 한-칠레 □ 한-싱가포르 □ 한-EFTA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EU □한-페루 □ 한-미국 □ APTA □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품명		규격	
HS부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 자체결정 □ 관세사자문 □ 관세청사전회시 □ 기타( )

1-2.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거래계약서 □ 제조공정설명서 □ 원재료명세서(BOM) □ 용도설명서

□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 정부기관( ) □ 수출자 □ 생산자 □ 상대국수입자 □ 기타( )

2-2.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2-3.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름

2-4.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표시 후,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제3국 발행 송품장 포함)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 기타 ( )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 B/L □ AWB □ 적하목록 □ 기타자료( )

3-2.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했습니까? □ 예 □ 아니오

3-3. 상기 3-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내용 기재), 별지 사용 가능

3-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3-5. 상기 3-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내용 기재), 별지 사용 가능

부문Ⅲ ▶ 원산지 결정기준(수출신고 건별 작성)

4. 공통사항
4-1.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2.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4-3.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4.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4-5.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조공정 기재), 별지 사용 가능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5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번변경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역내가치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 가공공정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완전생산기준
5-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과정 기재), 별지 사용 가능
5-2. 검증대상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별지 사용 가능

6. 세번변경기준

6-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별지 사용 가능).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6-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별지 사용 가능)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또는 물품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7. 역내가치(RVC)

7-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7-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표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별지 사용 가능)

8. 가공공정기준

8-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공정 기재), 별지 사용 가능

9. 대체가능물품

9-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개별법

9-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별지 사용 가능

9-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5.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 선입선출법 □ 평균법	□ 후입선출법 □ 개별법

9-6. 대체 가능 원재료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가능 원재료 내역), 별지 사용 가능

② 서면조사 연기신청

서면조사를 받은 기업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한-페루 FTA 협정은 90일)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연기신청서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제출 연기신청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서면조사 보정요구

서면조사 요청서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서면조사 결과 통지

세관에서 서면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를 받게 된다.

1. 조사 대상자
2. 조사 대상 수출입품
3. 조사 내용
4. 조사 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양식

<table>
<tr><td>승인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4">조사연기승인(신청)서</td></tr>
<tr><td>조사통지서 번호
(접수일자)</td><td>(yy.mm.dd)</td><td>조사대상자</td><td></td></tr>
<tr><td>조사예정 기간</td><td></td><td>조사대상 기간</td><td></td></tr>
<tr><td>방문기간</td><td>*현지조사</td><td>자료 제출기한</td><td>*서면조사</td></tr>
<tr><td rowspan="2">조사대상 수출입물품</td><td>품명</td><td>HS번호
(6단위)</td><td>규격 등 물품설명</td></tr>
<tr><td></td><td></td><td></td></tr>
<tr><td>자료제출 목록</td><td></td><td>연기신청 목록</td><td></td></tr>
<tr><td>연기(희망) 기한</td><td colspan="3"></td></tr>
<tr><td>연기승인 (신청)이유</td><td colspan="3"></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3">조사예정통지서 사본</td></tr>
<tr><td colspan="4">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td></tr>
<tr><td colspan="4">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td></tr>
</table>

●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양식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서면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2) 현지조사

서면조사를 실시한 세관에서 그 자료가 미비하거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수출업체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에서 조사개시 7일전 까지 해당 기업에 통지한다.

① 현지조사 연기신청

현지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 개시 전까지 세관장에게 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조사 연기는 1회 신청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현지조사 결과 보고와 통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세관은 결과를 '서면조사 결과 통지서'와 마찬가지로 '현지조사 결과통지서'를 해당기업에 발송하고, 관세청장은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협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③ 검증(조사)결과 회신

세관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요청을 받으면 다음의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아세안회원국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다만,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접수한 날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인도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다만, 인도의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럽연합 당사자(EU)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페루 :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50일
- 터키 :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

● 조사예정통지서 양식

조사예정통지서

관리번호 :

대상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통 지 내 용〉

조사기간		방문기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 사 대상기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이유	- 현지조사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조사내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조사방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조사방법 적시		
조사공무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상기의 회신기한 내에 조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이전까지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양식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통 지 번 호			조사통지서 문서번호	
대상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방법/내용				
위 반 내 용	- 위반사항 및 근거법령			
조 치 내 용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현지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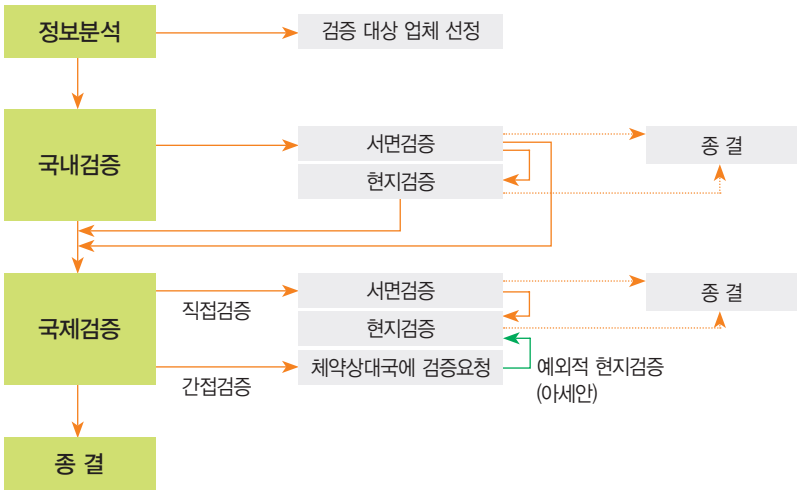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3. 수입품에 대한 각 협정별 사후검증(조사)의 방법



1)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방법

물품을 수입하면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해당 업체는 세관으로부터 아래의 방법으로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을 받을수 있다.

1.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2.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또는 관세당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3.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생산자(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생산자를 포함) 또는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2) 각 협정별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조사) 방법

수입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로, 협정별로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조사)를 할 때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협정 구분	조사 방법
싱가포르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참관 가능)
아세안	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 요청(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가능)
인도	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 요청(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가능)
칠레	조사대상자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유럽연합(EU) 당사자	유럽연합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 요청(참관 가능)
페루	관세당국에 조사 요청 또는 페루 관세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페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지조사
미합중국	① 조사대상자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② 섬유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과 함께 조사대상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 포함) 요청
터키	관세당국에 조사 요청(참관 가능)

3) 수입자에 대한 서면·현지조사

수출품에 대한 서면·현지조사와 동일하다.

4)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서면조사

세관장은 서면조사통지서를 조사 대상자와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 서면조사통지서 양식

Questionnaire for Origin Verification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				
contents	- verification contents - questionary: please refer to attachment			
required document			deadline	
officials in charge				

- Please submit documen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by the given deadline.

- Otherwise,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can be denied and/or you may be punished pursuant to article ○.○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인)

5)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

(1) 현지조사 개시통지

해당 물품을 수출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는 우리나라 세관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세관에서 현지조사를 할 때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조사 대상자
2. 조사 대상 수출입품
3. 조사 예정기간과 방법
4. 조사 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현지조사 결과통지

우리나라 세관의 요청에 의하여 상대국(수출국) 세관에서 현지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1. 조사 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품
3. 조사내용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3) 이의제기

검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는 이의제기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조사예정통지서 양식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Date of birth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 현지조사결과통지서 양식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Date of birth	
	address		(tel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 이의제기서 양식(국문)

<table>
<tr><td colspan="5">이 의 제 기 서</td><td>처리기간
30일</td><td>수수료
없 음</td></tr>
<tr><td rowspan="4">청구인</td><td>상호(법인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개인(사업자)에 한함</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청구담당자</td><td colspan="5">직함 성명 전화번호</td></tr>
<tr><td rowspan="3">청구
대상</td><td>수입신고번호</td><td colspan="3"></td><td>신 고 일 자</td><td></td></tr>
<tr><td>품명 및 규격</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내 용</td><td colspan="5">20 년 월 일 관세 등 원 납부고지</td></tr>
<tr><td colspan="2">처분이 있음을 안 날</td><td colspan="5">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이의제기 이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7"></td></tr>
<tr><td colspan="7">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td></tr>
<tr><td>청구인</td><td></td><td>처분청</td><td></td><td>청구금액</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td></tr>
</table>

● 이의제기서 양식(영문)

[Form 17]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Import declaration No.		Declaration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yy/mm/dd) KRW.....(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

4. FTA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비 주요 체크사항



POINT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FTA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시 다음의 주요 심사 대상들을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적정한 서류 제시로 특혜관세 적용 신청과 증명서 발행에 오류가 없음을 입증하면 검증(조사)은 서면검증으로만 끝날 수도 있다.

1) 협정적용신청 적정성과 품목분류

수출입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과 특혜관세율 적용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원산지증명서 형식요건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증명을 위한 관련 입증서류 등에 형식요건 하자가 없는지 확인한다.

3) 직접운송원칙

FTA 협정상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국으로 바로 운송되어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운송 필요상 환적을 하거나 제 3국에 보관되거나 BWT 거래가 일어나는 등 직접운송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된다.

4) 역외생산과 불인정공정

수출제품이 협정상에 정해진 단순공정/불인정공정만으로 이루어졌는

지 여부를 심사한다. 단순히 세번변경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불인정공정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 재료가 역내국에서 충분히 변형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즉,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세번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완제품과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적절히 품목분류 되었음을 확인한다.

6)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산지기준에서 요구하는 바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물품가격 및 원재료 원가에 대한 적정성과 그 계산방법을 확인한다.

7) 가공공정기준 및 기타 기준

물품별 원산지기준에 재단 및 봉제와 같은 특정한 가공공정을 거칠 것으로 정의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공정이 있는지 생산자를 심사하여 확인한다. 기타 누적기준, 미소기준, 중간재 기준, 대체가능물품 기준, 간접재료 기준, 부속품·예비부품·공구 기준, 세트물품 기준, 소매용·수송용 포장 및 용기 기준 등 FTA 원산지판정을 위한 보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8) 서류보관의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서류보관을 해야 하

며, 관련 법상에서도 최소 5년간 서류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서류보관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5. FTA 원산지 검증(조사) 이후의 조치

1) 협정관세 적용 보류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에 관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받았거나 탈세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또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세관장이 수집한 증거, 자료 등으로 수입자, 생산자나 수출자의 신고 또는 신청 내용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협정관세 적용 제한

세관장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적용제한자에게 통지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협정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해야 한다.

●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양식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통지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조사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 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보류기간		법적 근거		
보류 사유				

FTA관세특례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됨을 통지합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동안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 양식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통지서

지정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Tax ID		해외공급자부호	
대상물품	품명·규격			
	HS번호			
	원산지			
협정관세 적용제한기간				
협정관세 적용제한사유				

귀하는 FTA 관세특례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 신청은 그 지정 일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관세청장 (인)

제2장≫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1. 개 요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 원산지사후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소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 확인서) 발급시 적정한 판단과 절차를 통해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관련된 입증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 관세청에서는 업체들의 자료보관(Record Keepin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후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나열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대상에 따라 적절한 검증 대응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검증대상에 따라 자료의 종류 및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의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수출자(생산자)의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의 대응

수출자(생산자)는 세관(관세당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1) 소명자료 준비 기본방향

(1) 업무 흐름의 이해 및 Flow chart(업무흐름도) 작성 필요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또는 원산지 검증 소명시에는 '원산지 조사 세관공무원'의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세관공무원은 검증을 받는 회사의 업무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원산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은 FTA 원산지 증명을 위한 업무의 전체 흐름에 대하여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검증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하는 회사 내부 담당자 또한 업무의 전체적인 이해와 누락 사항 없는 소명자료 준비를 위해 Flow chart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Flow chart는 원재료 구매부터 원재료 투입, 생산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진행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각 업무 과정 단계마다 수행한 일자 및 산출서류 목록을 기입하여 단계별 해당 자료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원산지소명서 및 기초 데이터의 점검

원산지 검증의 기본은 원산지소명서에 기초하여 해당 수출제품이 한국산이 맞는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다. 원산지소명서 기입사항들의

상호간 합리성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소명서 각 항목에 대한 근거 기초 데이터 및 서류의 적정성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했다면 각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코드선정 근거가 중요할 것이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했다면 각 재료비 등에 대한 가격 자료 산출 기초 데이터의 점검이 중요하다 한다.

(3) 정해진 양식에 적합한 자료 준비

원산지 증명은 협정별 정해진 양식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해당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소명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소명 관련 서류 양식이 시간에 따라 개정되고 있으므로 서류가 작성되는 시기에 맞는 양식에 맞추어 적합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4) 일관성 및 합리성 유지

원산지 소명자료는 서류 간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많은 자료를 구비했어도 서류 상호간의 정합성을 부인 당한다면 해당 수출제품은 원산지 지위를 잃고 그로 인해 수입자는 추징을 당할 수 있다.

2) 소명자료 준비 점검 주요 항목

(1) 원산지소명서

수출제품이 어떠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었는지, 직접운송원칙은 체크했는지, 불인정공정 이상의 충분한 공정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체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한 장에 정리하여 체크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원산지소명서'다. 원산지소명서는 국내법인 'FTA 특례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여 원산지 증명과 향후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는 서류다.

원산지 검증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증명할 때와 동일하게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고 그 소명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준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BOM(자재명세서)

원산지 검증시에는 수출제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했음을 소명하는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출제품의 구성원재료로서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를 나태내주는 BOM(자재명세서)이 가장 핵심적인 서류가 될 것인데, BOM 은 FTA 원산지 결정 목적을 위해 회사에서 보통 사용하는 순수 생산 BOM에 HS코드 및 재료의 원산지와 같은 정보를 추가하여 조정한 FTA BOM 이 필요한 것이다.

(3) 원산지(포괄)확인서

만약 구성 원재료에 대해 협력사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령하여 한국산으로 취급한 실적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완제품의 원산지도 부인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우 수입자는 물론이고 국내 원재료 협력사와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 상호간의 관계 정립 및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협력사가 허위

증명이나 사실과 다른 증명을 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

3) 수출자와 생산자의 필수 증빙자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와 생산자가 검증시 필요한 자료 목록이다.

(1)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증빙자료 목록

1.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신청서류 사본
2. 당해물품의 수출신고필증
3.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4.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5. 당해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6. 당해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증빙자료 포함)
7. 당해물품의 운송관련 서류
8. 당해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9. 당해물품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10. 당해 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확인서류
1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
12.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13.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출처 :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2) 생산자 증빙자료 목록

1. 수출자 or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2.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부분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한 경우)
3.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4.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5.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등)
6.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7.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8.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9.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10.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11.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12.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 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13.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4. 재료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해 당해물품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 확인 서류
15.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16.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17.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3) 수출자(생산자)의 필수 증빙자료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생산자)가 검증시 필요한 자료 목록이다.

1. 수출자가 필수로 증빙해야 하는 자료
2.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3.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4.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5.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6. 당해물품의 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7. 당해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8. 당해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9.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10. 당해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 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11.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12.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3. 당해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14. 당해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15.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운송서류

출처 :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3. 수입자의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의 대응

관세청 서류보관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소 수입자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수출국 발행기관 C/O 등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와 수입자 발행 C/O를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검증시의 필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C/O발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1)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생산자 발행 C/O 인 경우

수출국 발행기관에서 발행한 C/O 또는 수출자·생산자가 발행한 C/O를 통해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검증시의 필수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해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2. 당해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3. 당해물품의 지재권 거래관련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4. 당해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5. 당해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아래 서류 포함)
   - **■ 비당사국을 경유한 경우 증빙서류**
   - –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 비당사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6. 당해물품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 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

출처 :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2) 수입자 발행 C/O 인 경우

한-미 FTA 협정 적용에 있어 수입자가 수출자·생산자의 C/O발행 없이 수입자 스스로 C/O를 발행하여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1. 수출국 발행기관, 수출자·생산자 발행 C/O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 신청한 경우 증명해야 할 자료
2. 당해물품이 협정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기록

○ 수출자 및 생산자가 보관해야 할 자료 중에서 당해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자료

출처 :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4. 검증 대비 주요 체크사항 및 유의사항 [3)]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온 경우,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고 소명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준비한다면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다음은 소명서 기재 항목별로 체크사항 및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

1) 품명·규격

① 품명과 규격은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 상업서류(invoice, C/O 등)와 일치해야 한다.

3) 사후검증 대응 '소명자료', 무역협회 FTA 포털사이트 http://fta.kita.net 중 일부 수정

② 품목분류를 위해 완제품에 대한 설명으로써, 그 기능, 용도, 사용법 및 작동원리, 카탈로그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2) HS코드

① 완제품의 HS코드 분류 근거를 문서화 하여 제시한다. 관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6단위는 일치시켜야 하며, 관세평가분류원의 분류검토 의견서가 확보되었다면 이를 주요 참고자료로써 첨부한다.

② 수출 HS코드와 수입 HS코드가 다른 경우, 수입국의 통관 HS코드를 사전에 수취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원재료의 HS코드 또한 완제품과 마찬가지로 원재료 사진, 기능, 용도, 재질, 성분 등의 정보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분류의견, 유권해석 자료 등을 확보하여 작성한다. 수입 원재료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HS코드와도 일치해야 한다.

④ HS코드는 부여 후 지속적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주관적인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발달에 의한 분류 포인트 변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부여된 HS코드를 검토하여 정합성을 계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원재료의 HS코드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같다.

⑤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 할 때도 사내에서 관리하는 HS코드와 확인서상 기재되는 HS코드가 일치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양자간 맞지 않는다면 전문가 분류의견 및 관세평가분

류원에 해당 품목에 대한 HS코드를 의뢰하여 양자가 동일한 HS 코드를 토대로 확인서가 수취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3) 원산지 결정기준

① 완제품의 해당 HS코드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한다.

② 해당 협정문을 체크한다.

4) 물품가격(부가가치비율과 연계된 자료)

① 실제 사용된 Incoterms 거래조건을 협정에서 정한 물품가격 기준(FOB, EXW)으로 변경하고 및 변경하면서 산출된 가격결정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원가구성내역이 종합적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구성을 기재 후 부가가치비율 설명시 세부설명 진행하여도 된다.

③ 특히 EXW 기준인 경우,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내국세 등을 공제항목으로 기재하여 변환해야 한다.

④ DDP, DDU 등의 가격조건에서 FOB, EXW 가격으로 변경시 공제 방법은 개별적으로 구분 관리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개별적 구분관리는 어렵다. 대체 방법으로 회사 내부 회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출품의 월/분기/반기별 매출액에 해당기간 동안 발생된 운송비 및 기타 부대비용의 비율을 산정하여 일괄 적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공제와 비교하여 큰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며, 변동폭이 큰 경우, 추적을 통한 개별 공제로 진행한다. 또한 수출이 간헐적

으로 일어나는 업체의 경우 회사 회계데이터를 통한 평균 공제보다 개별 공제로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합리적이다.

5) 제조공정

① 실제로 제조가 생산자(수출자)로부터 수행 된 것인지,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여부가 설명되어야 한다.

② 각 공정별 순서도 및 공정 사진을 첨부하고 설비목록과 생산능력도 함께 설명한다.

③ 또한 제품수불부를 제시하여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실제 운영자료를 제시한다. 이는 사내에서 관리하는 자료 및 ERP 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④ 특히 '특정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정설비 및 공정순서도를 자세히 기술해야 하며, 공정에 투입 전 원재료 현황과 공정을 거치고 나서 산출된 제품현황에 대한 수불내역을 함께 제시하여 실제 공정을 수출자(생산자)가 수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6) 원재료명세 부분

① 자재명세서(BOM)와 완전 일치해야 한다.

② 자재명세서상의 원재료명은 사내에서 관리하는 item name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거래명세서의 item name과 관리 item name이 다르다면 연계자료 등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설계BOM(표준BOM)과 생산BOM의 내용이 상이한 업체가 대부분이며, 실제 생산 BOM 또한 FTA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적정

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④ 주문제작방식이 아닌 경우, 생산 후 창고에 제품을 보관하였다가 판매 order가 떨어지면 상품을 출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BOM을 적용하여 제조했는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는 스펙 변경, 거래선 변경 등에 따라 투입되는 원재료가 상이해 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게 되는 것임)

⑤ 따라서 특정 매출 시점 품목에 대한 생산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기간(공기), 재고소진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 시점에 사용된 BOM을 특정하고 이를 소명하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7) 원재료의 원산지

① 원재료의 원산지가 역내산인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통해 원산지 확인한다.

② 포괄확인기간, 원산지확인서의 품목명, 규격, HS코드, 공급자, 공급처 정보 등이 상이하지 않은지 여부 확인한다.

③ 주요 원재료의 경우 가능하다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협력 생산자에게도 해당 BOM등을 요청하여 내용을 체크하고 재료 공급자(확인서 작성자)의 경우에도 공급 품목에 대한 역내산 판정 여부에 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8) 원재료 공급자

① 해당 원재료 품목의 공급자와의 거래내역, 구매 발주서, 입고내역,

세금계산서 등 실제 그 원재료를 해당 공급처로부터 구매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소명자료로 보관하고 관리한다.

② 만약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협력사이면 원산지 검증이 최근 하위 협력사까지도 검증범위가 확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협력사가 제공하는 원산지 정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자재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협력사의 내부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기적인 교육과 상호 협의를 통한 점검 작업이 필요하다.

③ 합리적인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협력사의 범위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한다면 거래금액 기준으로 상위 업체를 선별하여 해당 업체만 집중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한다면 세번이 변경되지 않는 품목을 납품하는 협력사만 원산지확인서 등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9) 원산지 결정기준

① 완전생산

완전생산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공정 및 원재료 수급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적기에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② 세번충족 및 최소기준

완제품과 원재료 간에 특정 단위의 HS코드변경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역외산 원재료 중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원재료는, 해당 원재료 가격이 판매가격의 보통 10%(섬유제품 별도 등)이내에 드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부가가치비율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산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품목별 부가가치비율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품목별 부가가치비율보다 최소 5% 이상은 확보하여 가격변동 등에 대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④ 누적기준

재료누적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있는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반드시 해당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⑤ 직접운송

제품이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원산지를 부인 당하게 된다. 다만, 역외국을 거치더라도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서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된다(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상에 적출항이 우리나라의 항구·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체약상대국의 항구·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게 된다).

⑥ 역외가공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협정과 정해놓고 있지 않은 협정이 있으므

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인정하고 있더라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역외가공이 이루어진 경우 역외가공 부분을 제조공정도상에 표현하고, 역외가공 계약서, 수출입 신고서 및 제반 상업서류를 갖추어 증빙 자료로 준비한다.

⑦ 기타

기타 원산지 충족과 관련된 부가 자료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란에 '별도자료 첨부'로 하여 별첨하여 증빙하도록 한다. 특히 '특정공정기준'인 경우 소명서의 '원산지 인정요건'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타'를 이용하여 특정 공정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실제 공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자료(예:월생산 데이터, 제조공정도, 공장등록증, 해당 공정이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임을 증빙하는 내용, 역내에서 해당 공정이 수행된 내용 등)를 첨부하여 증빙한다.

10) 작성자

① 서명카드

사내에서 구비되어 있는 서명카드에 기재된 자만이 서명하도록 한다. 이는 소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적용하며, 등록된 서명권자는 사내 지정된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명권자는 발급한 원산지증명서·확인서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권한 있는 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관발급건, 자율발급건 모두 기재하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 소급발급 및 사후 수정사항 이력 등도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③ 전담자 지정

사내 문서를 통하여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을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5. 주요 원산지 검증 사례[4)]

1) 한-미 FTA 주요 검증 사례

① 수입자 C/O발행

수입자 C/O발행시 원산지 입증책임도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신중한 원산지증명서(C/O) 발행이 필요하다.

② 원산지 입증 관리가 부실한 물품

검역증상 원산지표시가 미국으로 되어있다는 것만으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농수축산물도 일반상품처럼 수확/재배부터 수출까지의 원산지 확인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

③ 병행수입품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인 수출자와 거래하는 경우 사전에 원산

4)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 자료(관세청, 2013. 9)」 일부 발췌·수정

지 입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병행 수입품인 경우, 추후 원산지 검증시 합리적인 입증서류 구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④ 수입자가 C/O 임의 변경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간주되어 벌칙이 부과됨으로 원산지증명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2) 한-EU/한-EFTA FTA 주요 검증 사례

① 원산지 증명 발급 주체 위반(제3국 발행 C/O)

체약당사국 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 권한이 있고, 3자 무역거래 시에는 수출자가 송품장이 아닌 기타 상업서류에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한다.

② B/L 상에 선사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원산지 증명은 송품장, 인도증서,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제3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적용불가하다.

③ 비당사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한-EU FTA에서는 '수출자=인증수출자=원산지신고서 발행자'로 일치해야한다. 비당사자인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의 중개무역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면 국제 간접검증 없이 즉시 특혜

가 배제될 수 있다.

④ EU 인증수출자번호 오류 사례

대상물품이 6천유로를 초과할 경우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기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었더라도 한-EU 발효시점에 맞춰 인증수출자 자격을 갱신해야 함). 수입자 조사결과 비자격 인증수출자, 허위의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로 확인되면 국제 간접검증없이 특혜적용 배제 가능하다.

3) 한-아세안 FTA 주요 검증 사례

C/O의 형식적 요건,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 요청이 많다.

- C/O 상의 서명, 인장 등 형식적 요건을 검증 요청
- C/O의 진위 여부,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 요청
- 원산지기준, HS 의견 상이 등이 있다.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5)]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발급·신청한 수출자·생산자 및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 수입자는 원산지기준별 요건이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필수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 검증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각 결정기준별 증빙서류보

5) 원산지검증 가이드라인,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관 참고리스트다.

1) 완전생산기준

①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②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③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④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공정설명서 및 관련 기록
⑤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2) 세번변경기준

①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②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원산지기재)
③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④ 당해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공정설명서 및 관련 기록
⑤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3) 역내부가가치기준

①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②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기재)

③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증빙자료

④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증, 송품장 등)

⑤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⑥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⑦ 당해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4) 가공공정기준·역내가공원칙·충분가공원칙

(1) 가공공정기준

①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

(2) 역내가공원칙

① 당해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가공 계약서 등)

(3) 충분가공원칙

① 당해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5) 누적기준

①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원산지 증빙자료

②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생산·제조·가공 공정 및 지역 증빙자료

6) 최소허용기준

①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사전심사서,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②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기재)

③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④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명세서

7) 중간재 기준

① 자가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②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 결정시 고려된 경우 필수 기재)

③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④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⑤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 증빙자료

8) 대체가능물품

① 대체가능물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 등으로 구분·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자료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종·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가능물품의 관리에 적용된 재고관리기법 및 동 기법에 따른 계산 근거 자료

9) 세트물품

① 당해물품이 세트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자료

② 당해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③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 및 요소별 품목분류 근거자료

④ 당해 세트물품 및 구성요소별 가격 증빙자료

⑤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별 원산지 증빙자료

10) 간접재료

① 당해물품에 사용된 간접재료 목록 및 간접재료의 용도·기능·성분 등 포함

② 당해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11) 부속품·예비부품·공구, 소매용 포장·용기

① 품목분류 근거 및 가격 증빙자료

② 원산지 증빙자료

12) 직접운송원칙

①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된 경우 상품의 모든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지

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② 양 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비당사국의 세관 등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

㉰ 비당사국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하는데 필요한 공정 이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비당사국에서 발행하는 하역 관련 서류(당해물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표시 등)

7. 벌칙규정 및 수정통보

1) 벌칙규정

FTA 관세특례법에서는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의무,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행정제재에는 처벌의 내용에 따라 관세질서벌인 과태료와 관세형벌인 벌금·징역으로 구분한다.

(1) 과태료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 원산지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보정·수정신고·경정 청구 불이행자 –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2) 형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비밀유지의무 위반 세관공무원 – 과세자료 용도 외 사용 세관공무원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 증빙서류 미보관자 – 허위자료 제출자 –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 특정물품 용도외 사용자 등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작성·교부한 자 (30일 내 수정통보한 자 제외)

2)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통보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나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자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는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3) 수정통보 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① 수출자·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②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③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
④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⑤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양식(국문)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수출자		생산자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신고번호	
수출신고일자		원산지증명서 번호	
원산지증명서 서명일자		품명	

수 정 사 항

수정 전	수정 후

FTA관세특례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증명서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 ○ 세 관 장 귀하

●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양식(영문)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Exporter		Producer	
Importer in Importing Party		No. of Export Declaration	
Date of Export Declaration		No. of Certificate of Origin	
Date of Signature		Description of Goods	
Contents of the Correction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I inform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 . .

Exporter (Singnature)

To ○ ○ Customs Collector

CHAPTER

5 FTA 원산지 정보편

제1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정보

1. FTA를 활용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1) 한국 내 수출자의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HS코드 문제

Q 독일로 수출하는 제품의 한국 내 HS코드는 제1902.30호다. 이에 제1902.30호에 대하여 품목별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독일 바이어는 해당 제품의 HS코드가 제2104.10호라고 한다. 이 때 한국 내 HS코드에 대해 인증받은 것만으로도 원산지 증명에 문제가 없는지.

A 우리나라의 품목번호와 상대수입국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상대수입국(독일)에서 인정받은 HS코드인 제2104.10호에 대하여 별도의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EU 내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를 때 원산지 증명 문제

Q 프랑스 수출자가 독일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프랑스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는지.

A EU 역내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면 원산지 증명을 할 수 있다.

2) 직접운송원칙 관련

(1) BWT 거래에서 직접운송원칙 문제

Q EU와 한국 외의 제3국에 있는 보세창고를 활용하여 BWT 거래를 할 때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A BWT 거래에서 제3국(홍콩·싱가포르 등)에 있는 보세창고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어렵다. 그러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단순 환적이나 일시 장치만 했을 뿐 추가가공이 없을 때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예외가 있을 수 있다.

(2) 한-EU FTA와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원칙 구분

Q 프랑스 수출자가 같은 EU 내의 독일 항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와 태국의 수출자가 같은 아세안 내의 베트남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 동일하게 직접운송원칙에 충족되는지.

A 한-EU FTA에서는 EU 자체도 당사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프랑스 수

출자가 독일을 선적국으로 하여 물품을 보내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아세안 FTA에서는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회원국 하나 하나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해당 수출자가 자신의 국가에서 수출·선적해야 한다(BACK TO BACK C/O는 별개의 사안임).

3) 원산지증명서 발행 관련

(1) 한-미 FTA 수입자 C/O발행

Q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에는 수입자도 해당하는데 한국 내 수입자가 C/O를 발행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A 수입자가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C/O를 발행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을 때는 원산지 증명인으로서 관련 입증서류를 모두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한국 내 수입자는 수입제품이 어떤 재료들로 구성되고, 미국에서 어떻게 제조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관련 서류를 갖추고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수입자 발행 C/O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2) 한-미 FTA 포괄증명시 수량이나 단위 기재

Q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포괄증명서를 발행할 때 수량이나 단위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와 적지 않아도 되는지.

A 포괄증명을 할 때 수량이나 단위를 적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수증명일 때는 수량과 단위를 적어야 한다.

(3) 한-아세안 FTA 원산지를 증명할 때 FOB 금액 기재

Q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FOB 금액을 적는 것은 필수다. 그러나 중계무역이나 특정한 거래에서는 FOB 금액을 적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적지 않아도 되는지.

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서 9번 항목의 FOB 가격과 10번 항목의 송장번호와 날짜는 수출국에서 최초로 발행한 송장을 기초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AK FORM 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므로 내년부터는 적지 않아도 될 것이다(실제 개정 추후 확인 필요).

(4) 제3국 송장발행(중계무역시) C/O발행

Q 물품을 태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바로 선적·발송하는데 아시아 총판이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한국 내 수입자는 싱가포르 중계무역상에게만 오더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최초 수출자와 중계무역상이 다른 나라에 있을 때 한국 내 수입자는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최초 수출자는 태국 내 수출자이므로 AK FORM(한-아세안 FTA C/O)은 태국에서 발행해야 하고, 해당 AK FORM의 13번 '제3국 송장' 항목에 체크하고 7번 항목에 싱가포르 회사의 상호와 국가 이름을 적으면 적용할 수 있다. 기타 다른 C/O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5) 한-EU FTA에서 EUR1 서류의 적용 가능성

Q EU수출자가 별도로 EUR1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한다는데 이를 근거로 한-EU FTA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A 한-EU FTA 협정에 따른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원산지 신고 문안 기재) 대신 EUR1 서류를 제공해주면 해당 수입제품은 관세특혜를 받을 수 없다.

(6) BACK TO BACK C/O발행

Q 태국에서 선적·수출한 제품이 싱가포르에서 내수통관되어 다시 한국으로 왔을 때 FTA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한-아세안 FTA에서는 최초 수출국(태국)에서 선적한 제품이 제3의 아세안 국가(싱가포르) 내에서 내수통관되었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그 해당 국가의 발급기관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이 전문화, 다양화됨에 따라 국가·전문분야·품목별 수출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1) 지원 대상·항목·내용(2013년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컨설팅은 전년도 직수출 실적 500만불 이하인 기업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 2에 의한 중견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진단에 속하지 않을 것
지원항목	중소기업	FTA 수출컨설팅
	중견기업	FTA 컨설팅
FTA 수출컨설팅 지원내용	자문내용	수출 애로상담, 맞춤형 수출전략수립과 수출능력배양, 환위험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리 등을 포함한 FTA 대응전략과 FTA 유망시장 진출전략 등. *중소기업은 FTA과 수출 연계 컨설팅
	참여전문가	대기업·금융기관·종합상사·공공기관 근무경험 등 수출전문가, 관세사·회계사·세무사 등 FTA 전문가
	지원한도	5일 이내 2백만 원 한도, 소요비용 70%(수혜업체 30% 부담) *수출컨설팅은 3일 이내 1백만 원 한도

3) 신청절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02-769-6957)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3. 중소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 체결국 간의 상호이익을 목표로 하는 FTA 특성상 원산지 증명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사후 원산지 검증이 있다.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검증에 대비하려면 기업 내에 원재료 조달과 재고관리, 원산지 관리 증명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본과 인력 부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과 무역협회(KT-NET)는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FTA-PASS와 FTA-KOREA라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원재료부터 중간재와 완제품까지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신청과 발급, 인증수출자 신청업무도 볼 수 있다. 또 수출입 통관 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판정이력 관리와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고, 이 시스템에 담긴 기업정보를 오래 보관할 수 있다.

1) FTA-PASS

	PC용	웹 용
사용방법	기업회원에 가입(www.ftapass.or.kr)	
	개인 PC에 설치	인터넷 접속
버전	2.5X	–
자료저장	개인 PC	운영서버
사용자	1인	다수
지원협정	한–아세안, 한–인도 CEPA, 한–EU, 한–페루,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포르, APTA, 한–미국, 한–터키	

출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2) FTA-KOREA

FTA-KOREA는 국가 전자무역 인프라 서비스인 uTradehub에서 제공하는 FTA 원산지 관리 서비스(FTA 원산지 판정·유통·보관)다.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웹상에서 원산지 판정과 입증서류를 관리할 수 있다. 여러 수출회사와 거래하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원산지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전자문서로 된 원산지 판정 자료를 교환할 수도 있다(출처 : KTNET http://www.ftakorea.co.kr).

제2장≫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용어 정리

1. 용어 목록

-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 간접재료·중립요소(indirect material or neutral element)
- 공장인도가격(ex-works price)
- 공제법(Build-down Method)
- 관세가격(customs value)
-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 계절관세(Seasonal Duties)
- 기관발급제(authority issuing)
- 단일실질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 대체가능 물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 미소기준(De minimis)
- 보세구역(bonded area)
-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 본선인도가격(FOB)
-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불인정공정·최소가공공정(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minimal process)
- 비원산지 상품·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good or non-originating material)
- 선적용 포장재와 용기(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s)
-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 세계무역기구 통일원산지 규정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소호(subheading)
- 송품장(invoice)
- 순원가법(Net Cost Method)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 실행관세(Applied Tariff)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 양허 카테고리(Concession Category)
-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 HS 4단위 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HS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goods)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 cost, insurance, freight)
- 원사기준(Yarn Forward)
- 원산지(country of origin)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 원산지 검증방식(origin verification method)
-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ruling)
-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인장(seal)

-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ttee)
-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자율발급제(voluntary issuing)
- 재단·봉제 공정기준(Cut & Sew Criteria)
- 재료(material)
-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 조정가격(adjusted value)
- 종량세(Specific Duties)
- 중간재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
-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 직접법(build-up method)
-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HS, 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
- 할당관세제도·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 호(heading)
- 환적(Transshipment)

2. 용어 설명

● **간이정액관세환급**(Simplified Fixed Duty Drawback)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 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 **간접재료나 중립요소**(indirect material or neutral element)

상품의 생산·시험·검사에 사용하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물품이나 상품생산과 관련있는 건물의 유지나 설비에 사용하는 물품. 통상 원산지를 결정하는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는 고려하지 않는다(예 : 연료·에너지, 물품생산, 설비·건물 가동에 사용하는 윤활유, 장갑, 안경, 신발, 물품의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설비·장치, 촉매제와 용해제).

● 공장인도가격(ex-works price)

원산지 규정에서 부가가치기준 유형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물품을 생산한 현지공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매도인이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 거래 조건의 가격.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화물을 운송수단에 적재할 필요가 없으며 수출 통관의 책임도 없으나, 매수인은 수출입 허가와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 등 화물을 인수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 공제법(Build-down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 방법의 하나로 역외산(비원산지)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text{역내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조정가격(AV)}-\text{비원산지 재료가치(VNM)}}{\text{조정가격(AV)}} \times 100\%$$

※AV(Adjusted Value)

※VNM(value of non-orginting materials)

※NAFTA에서는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이라 한다.

● 관세가격(customs value)

관세평가협정 1조와 8조에 따라 조정된 상품 판매자의 거래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상품이나 재료의 가격 또는 그러한 가격이 없거나 그러한 상품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평가협정 2조 내지 7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이다.

● **관세평가협정**(Customs Valuation Agreement)

WTO의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그 주해. 상품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관세평가를 배제하고, 공정하며 통일된 중립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정한 수입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통관 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 **계절관세**(Seasonal Duties)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기본관세보다 높거나 또는 낮게 부과하는 관세. 가령, 농산물의 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는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가격의 상승을 막게 된다(예 : 한-칠레 FTA에서 포도는 11월~4월까지만 협정세율 적용)

● **기관발급제**(authority issuing)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 이를 심사하여 발급하는 방식. 현재 ASEAN, 인도 등의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 **단일실질변형기준**(Single Substantive Transformation Criteria)

실질적 변형은 특정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당초의 원

료의 성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명칭, 특성 또는 용도의 물품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섬유류의 제품의 경우 단일실질변형이라 함은 결국 아래 그림 가운데 방적, 제직·편직 및 재단·봉제의 각 공정을 일컫게 된다.



● **대체가능 물품**(fungible goods or materials)

물품의 특성, 기능,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 또는 재료. 곡물, 과일, 석탄 등의 산물과 볼트, 너트, 베어링, 타이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분하지 않고 자사의 재고관리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한다.

●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일반적으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세금 외에 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주로 미국이 수입품을 통관할 때 부과하는 물품 취급수수료를 의미한다. 동 수수료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NAFTA 회원국, 이스라엘, 최빈국, 캐리비안 경제개발국 등은 제외) 예외국이 아닌 경우 비관세 장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수료는 송장금액의 0.3464%로 송장 건당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를 부과한다.

● 미소기준(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 또는 '의무면제'라는 뜻이 있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예 : 수입산 밍크컬러(HS430310)와 국산 밍크반제품(HS430310)으로 밍크코트(HS430310)를 만든 경우 밍크코트 가격에서 수입산 밍크컬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이면 국내산으로 인정).

● 보세구역(bonded area)

보세창고·보세공장 등이 포함되며, 보세제도상에서 외국으로 간주되어 외국화물의 적재·보관·가공 등에 대한 모든 수입관련 세금이 면세된다.

● 보세창고거래(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수출업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수출화물을 반입해두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해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 본선인도가격(FOB)

운송수단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품을 수출할 때 경감·면제·환급된 내국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할 가격. FOB에서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FOB 조건은 화물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

입업자가 부담하게 하는 반면 CIF는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은 물론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하주가 부담한다.

●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제품의 생산과정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역내가치를 부가(추가)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물품의 생산이 1개의 국가만이 아니라 2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되었어도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역내산으로 인정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 변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국내 가치함량기준, 역내 가치함량기준, 수입산 함량기준, 부품가액기준 등이 있다.

● **불인정공정·최소가공공정**(insufficient operations/non-qualifying operation/minimal process)

원산지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간주되는 공정. 비록 세번변경이나 다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역내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지 운송 또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거나 판매를 위한 포장, 전시를 위한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 도축(소→쇠고기), 냉동(활어→냉동어류), 제분(밀→밀가루), 분쇄, 포장, 혼합(물+설탕→음료수), 절단, 조립.

●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non-originating good or non-

originating material)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품이나 재료를 말한다.

● **선적용 포장재 및 용기**(packing materials and containers for shipments)

개별적 판매를 위해 사용되는 용기나 재료와는 구별되고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을 말한다.

●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화물을 본선에 적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가능한 유가증권. 선주가 화주에게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받은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운송하여 수입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것이다.

● **섬유원료기준**(Fiber Forward)

최종 제품이 원사·직물·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원사를 방적하여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 **세계무역기구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WTO Harmonization Work Programme)

WTO 원산지 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 따라 모든 교역품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판정기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며, FTA 외에 무역구제조치, 검역제도, 수출통계 및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을 논의한다.

●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HS(통합품목분표)로 사용한 원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보통 HS 4단위(CTH)나 6단위(CTSH) 기준을 사용하나 농·수·축산업 생산물 등에는 2단위(CC)도 사용한다. 다만, HS 구조상 제품의 생산·가공단계별로 HS코드가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번 변경되지 않았어도 일정한 조건에서 실질적이라고 인정되는 제조·가공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한다.

● **소호**(subheading)

6단위 수준의 통일 상품명과 부호체계의 관세 분류번호를 말한다.

● **송품장**(invoice)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선적안내서·내용증명서 및 선적화물의 계산서로 수출업자에게는 상품대금이나 비용의 청구서 역할을 하며, 화환결제를 할 때 필요한 서류이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계산서 역할을 하며, 수입지에서 통관할 때 필요한 서류다.

● **순원가법**(Net Cost Method)

미국 등의 국가가 엔진, 자동차부품 등 특정 자동차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부가가치 계산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물품의 순원가에서 비원

산지 재료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제법(Build-down)에서는 FOB기준의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계산하나, 순원가법에서는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RVC = \frac{NC - VNM}{NC} \times 100$$

※ RVC(역내 부가가치), NC(순원가), VNM(비원산지 재료비용)

※ 순원가=총비용(total cost)-마케팅(marketing)-사후서비스(after sales service costs)-로열티(royalty)-운송·포장비용(shipping and packing costs)-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비용(non-allowable interest)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 실질적 변형기준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불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세계 주요 FTA에서는(i) 그러한 변형이 HS코드에 기초한 세번의 변경을 초래했는지의 여부,(ii) 그 변형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iii) 그 변형이 특정 제조공정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사용한다.

● **실행관세**(Applied Tariff)

통관 당국이 국경에서 실제 부과하는 관세. 일반적으로 무역협상의 결과로 국가별 양허표(tariff schedules)의 관세인 양허관세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1967년 아시아 지역 발전을 위한 아세안 선언으로 결성. 동남아 지역 협력·안보 유지, 경제 사회 협력 등이 목적. 현재 10개 회원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으로 구성하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있다.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

구 방콕협정(ESCAP, 개발동상 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중국이 가입('02)하고 협정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공통원산지 규정을 도입한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간 체결된 무역 특혜 협정. 협정의 범위를 관세·비관세조치에서 서비스 교역, 무역원활화 등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부가가치 45%기준, 누적기준 60%로 각국간 공통된 원산지 규정을 도입했다.

● **양허관세**(tariff concession)

국가 간의 협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 수준 이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 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협정. 관세를 올려야 할 때는 원교섭국 및 주요 관계국과 해당 품목 수출국의 양해가 필수이며, 관세를 상향 조정하는 만큼 보상해야 한다.

● **양허 카테고리**(Concession Category)

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기속력을 가진 약

속. 일반적인 의미의 양허는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협의의 개념으로서 양허는 단지 관세품목에 대한 기속(binding)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양허를 말한다.

●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 조건에 따른 자유화 계획 일정표. 일반적으로 관세율 인하 조건과 일정 등을 정해 놓은 관세양허표를 말한다.

● HS **2단위 변경**(CC, change of chapter)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2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 HS **4단위 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4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열연강판(HS 7208)으로 냉연강판(HS 7209)을 만든 경우 CTH가 작용되면 원산지가 인정되나 CC가 적용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불가).

● HS **6단위 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비원산지 원료의 HS부호와 완제품의 HS부호를 비교하여 앞의 6단위가 변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s)

물품의 실질변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완제품의 전체 가치 중에서 협정 당사국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이다(NAFTA에서는 RVC 50%나 60%를 사용).

●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제품생산의 최종 공정 또는 중간의 일부공정이 역외에서 수행되는 것. 역외가공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외가공에 사용한 역내재료의 부가가치를 최종 생산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누적함으로써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완화. 그러나 불인정시에는 제품생산이 전 과정이 역내에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역내 가공 촉진. 한-싱, 한-EFTA에서는 일부 품목의 역외가공을 인정한다.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어떤 물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한 국가에서 '전적으로 획득된 상품'은 당해 국가가 원산지로 간주한다.

●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goods)

모든 생산과정이 협정의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물품.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현 시대에는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제조품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한다.

※ 완전생산품 및 완전생산 간주물품

① 완전생산품은 협정 당사국 영역 내에서

㉠ 채굴한 광물성 생산물

㉡ 재배하여 수확한 식물성 생산물

㉢ 태어나 사육한 동물

㉣ 수렵·어로 등으로 얻은 물품

② 완전생산 간주물품은

㉠ 협정당사국의 선박이 영역 밖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협정 당사국의 선박 내에서 가공하여 생산한 물품

㉡ 협정당사국이 영역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협정 당사국 또는 협정 당사국가의 기업이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해저 층에서 채취한 물품

㉢ 협정 당사국 또는 협정 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채취한 물품

㉣ 협정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행해진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부산물

㉤ 협정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회수되고, 재활용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 물품

㉥ 전적으로 사기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협정 당사국의 영역 또는 협정 당사국의 선박에서 생산한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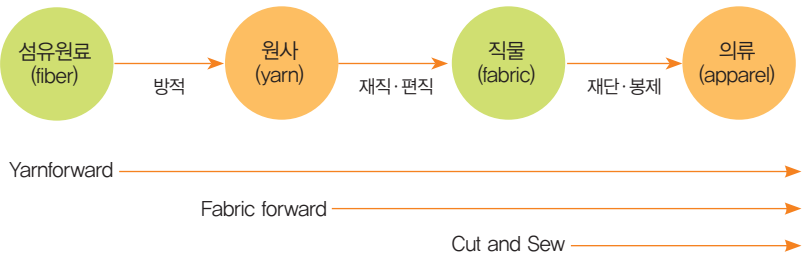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가격**(CIF, cost, insurance, freight)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이 화물이 목적지 인도될 때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가격. FOB 조건은 화물의 수송에 필요한 선복수배와

해상운임, 보험료를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CIF는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하주가 부담한다.

● 원사기준(Yarn Forward)

최종 제품이 직물이나 의류인 경우 FTA 체결국 내에서 생산한 원사로 직물을 짜고(제직·편직), 의류를 재단·봉제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말한다(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 원산지(country of origin)

물품을 생산한 지역을 의미하며,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지역을, 제조품의 경우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지닌 한 국가의 영역을 의미하지만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특정지역이나 국경선 밖에 있는 식민지, 속령, 보호령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및 광물과 같은 천연상품 위주의 완전생산품(wholly obtained or produced products)은 원산지 결정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공산품 등 2차 산품은 생산, 제조, 가공 과정이 두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판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이는 다시 ①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데 적용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② 특혜원산지 규정 이외의 모든 원산지 관련 규정으로서 i)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무역구제조치의 원산지 규정, ii)검역제도상 원산지별 수입제한제도상의 원산지 규정, iii)수출통계, 정부조달을 위한 원산지 규정 등의 비특혜적인 통상 정책 수단에 이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별된다.

● 원산지 검증(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요건을 충족했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원산지 요건에는 ①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요건(원산지증명서 자체의 중요성과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②원산지 결정기준(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에 관한 요건이 있다.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산지 표기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 역시 중요성이 커진다.

● 원산지 검증방식(origin verification method)

일반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행하느냐에 따라 직접검증방식, 간접검증방식 및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으로 구분. 직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입국의 수

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간접검증방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한적 간접검증방식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조사과정에 수입국 세관직원이 입회 또는 참관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 **원산지 결정기준**(criteria of the determination of origin)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나뉘며, 실질적변형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이 있다.

● **원산지 사전심사**(advance ruling)

국내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전에 관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협정 관세 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 이때, 사전심사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그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원산지 상품(originating good)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완전하게 얻거나 생산한 경우, 상품을 원산지 재료만으로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전적으로 생산한 경우, 일방이나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진 생산의 결과로, 상품 생산에 사용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협정문의 부속서에 규정한 적용 가능한 세번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상품이 세번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그 부속서상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등의 상품을 말한다.

●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 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롬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진다. 현재 회원국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다.

● 인장(seal)

나무·돌·고무·수정·금·뿔·상아 등의 인재(印材)에 글자·무늬·기장(記章)·그림 등을 조각하여 인주 등을 발라 개인·관직·단체·장서(藏

書) 등의 표지로 문서·서화에 찍어 증명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 **일반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수익·지출·비용·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재무제표의 준비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은 세부 기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이다.

● **자유무역위원회**(Free Trade Committee)

한·칠레 FTA 및 GATT의 공동 해당 사안의 경우 양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협정 이행상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당사국의 각료급으로 구성된 위원회. 칠레의 외교부 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들, 그리고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들로 구성한다.

●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회원국간 관세철폐와 수입량 제한 제거 등 무역장애 요소를 없애는 단계로서 무역특혜협정보다 발전된 경제협력단계. 특정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한 제반 법률이나 규정, 행정절차 등을 총칭하는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적용되며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원산지 판정에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요건으로 적용함으로써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재수출되는 제품은 규제한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한 형태로 당사국 간의 상품·서비스 교육에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WTO 협정에서 FTA로 인정받으려면 ① 역내국 간의 역내국산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서 관세 및 기타 제한적 무역조치들을 제거, 역내국산 서비스에 대해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② 역외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전보다 관세나 기타 무역 규정이 더 높거나 제한하면 안 되고, 서비스도 협정체결 전보다 장벽의 일반적 수준을 인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FTA를 형성하는 전 단계인 잠정협정은 FTA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부여되므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 자율발급제(voluntary issuing)

수출자가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요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고, 수입국 세관이 사후에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 재단·봉제 공정기준(Cut & Sew Criteria)

섬유류의 원산지 결정에 있어 재단·봉제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기준이다(단일실질변형기준 참조).

● 재료(material)

부품이나 원료와 같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상품.

●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문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신원과 당해 전자문서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전자적 형태의 서명.

● **조정가격**(adjusted value)

역내가치포함 비율 공식 및 최소허용기준의 적용 목적상 관세평가협정 제1조나 8조, 15조 및 이들 조항의 주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하며, 필요시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미 제외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을 고려대상인 상품의 관세가격으로부터 제외하여 조정된 가격. 이러한 비용, 부과금 및 지출금은 모든 수출국으로부터 수입지까지 제품을 국제적으로 수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포함한다.

● **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수입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제도(보통 원/Kg로 표시) 수입가격이 1,000원/Kg인 농산물 수입시 관세가 100%일 때 관세는 1,000원임 그러나 농산물 가격은 시기, 품질에 따라 가격진폭이 심하므로 국제가격이 500원으로 하락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가 100%라 하여도 500원의 관세만 부과되므로 보호효과가 미약하나 종량세는 Kg당 1,000원이 부과된다면 가격의 하락에 상관없이 1,000원이 부과되어 높은 보호의 효과를 갖게된다. UR 농산물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등 63개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여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율(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 **중간재흡수원칙**(absorption/takeover principle/roll up)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한 가공요건을 갖추어 원산지 지위를 얻은 경우 당해 재료가 최종 제품에 체화되면 100% 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원칙. Roll-up이 인정되면 비원산지 재료로 생산한 중간부품가격 전체를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할 수 있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타인에게 중간부품을 공급받아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와 자신이 중간부품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대우가 동등하며,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 가공을 촉진한다.

● **중간재**(intermediate material)

상품의 생산자가 최종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체 생산한 재료를 말한다. 역내가치 함유비율 산정의 목적상 상품 생산에 사용한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지역간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골격을 이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등이 있다.

● **직접운송원칙**(direct consignment)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원칙. 제3국에서

선적되었거나, 추가가공이 되었거나, 제3국으로 수출된 후 수입된 물품 등은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직접법**(build-up method)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의 하나로 역내산(원산지) 재료비가 물품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역내 부가가치를 계산한다.

$$\text{역내 부가가치 비율} = \frac{\text{원산지 재료 가치(VOM)}}{\text{조정가격(AV)}} \times 100\%$$

※ VOM : value of orginating materials

●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관세,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제 3국에 부여하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일단 두 나라간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키로 하면 이중 한 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 효력은 별도의 합의 없이도 최혜국 대우 국가에 적용된다.

● **최혜국대우 실행세율**(MFN Applied Rate)

최혜국 대우를 받는 나라들에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 **탄력관세**(Flexible Tariff)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실행관세율을 변경하는 제도. 이

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채택하는 관세임. 탄력관세는 그 운용목적에 따라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긴급관세(Emergency duties),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할당관세(Autonomous tariff quotas) 등이 있다.

●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HS, Harmonized System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WCO가 주관하여 체결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HS코드란 국제적으로 합의된 상품분류체계로 WTO 등의 국제협상에서도 수입개방 여부, 관세양허 등 협상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국제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이를 관장한다. HS 분류는 통상 6단위(Sub-heading)까지를 공통으로 하고 있으며, 6단위 이하의 세 분류는 가입국들이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우리나라는 10단위까지 세분한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용한다.

●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각 제품에 대해 주요한 제조 가공·공정을 제시하고 당해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식. 이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음. 여기에는 ①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가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받는 Positive 방식과 ②특정한 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Negative 방식이 있다.

●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특정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 관세보다 저율의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 **특혜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이나 쌍방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하는 원산지 규정이다. ①개도국의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②남북한 내부거래 인정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관세 면제 ③ FTA나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 규정 ④개도국 상호간 관세·비관세 장벽완화를 위한 개도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상품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 원활화와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는 협정으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 2002년 11월 프놈펜에서 체결한 일본-ASEAN CEPA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일본과 ASEAN 10개국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비롯해 금융·정보·커뮤니케이션기술·과학기술·인력개발·관광·에너지·식량 문제 등에 관한 협의를 포함한다. 인도-ASEAN CEPA도 무역장벽의 최소화나 제거, 역내무역과 투자증진, 경제효율성 제고, 국가

간 발전격차 해소 등에 대한 합의다. 2002년 일본은 첫 지역경제협력 협상인 일본-싱가폴 CEPA는 농산물과 석유화학품을 제외한 투자·경쟁·상호인정·금융 분야에 걸쳐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인도 CEPA도 이에 해당한다. .

●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

각 품목별(HS코드별)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 **할당관세제도(관세율할당)**(TRQ, Tariff rate quota)

특정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시에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업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즉 수량 및 가격의 양면에서 규제하는 이중과율제도. 우리나라는 UR협상결과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 관세할당 물량과 저율관세를 양허표에 명기하여 시행한다.

● **호**(heading)

4단위 수준의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의 관세분류번호를 말한다.

● **환적**(Transshipment)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사이트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모든 것」, 부산세관, http://fta.customs.go.kr, 2013. 6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권혁재 외, 2013.5.15. 제895호

〈원산지검증 사례 설명회 자료〉, 관세청, 2013. 9

『수출입기업 실무자를 위한 한-미 FTA 활용 매뉴얼북』, 서울본부세관, 2011

『FTA 활용 및 검증 매뉴얼_석유제품편』, 관세청, 2010

『FTA 활용 및 검증 매뉴얼_화학제품편』, 관세청, 2010

『FTA 활용 및 검증 매뉴얼_CCTV편』, 관세청, 2010

『사례를 통해 배우는 FTA 원산지길라잡이』, 한국무역협회, 201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무역협회 FTA 포털사이트 http://fta.kita.net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KTNET http://www.ftakorea.co.kr

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

발행일 2013년 10월 17일
발행인 한정화
발행처 중소기업청

저 자 김현철 관세사(패스윈합동관세사무소)
최대규 관세사(신한관세법인)
최영훈 사무관(관세청 조사감시국 조사총괄과)

자 문 허정훈 전략기획실장((주)매트릭스투비)
양홍석 실장/관세사(국제원산지정보원 인증지원팀)
조성대 연구위원(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최재순 전문선임연구원/관세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
김학민 교수(경희대학교 정경대학 학과장)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TEL. 02-769-6957

이 책의 저작권은 중소기업청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